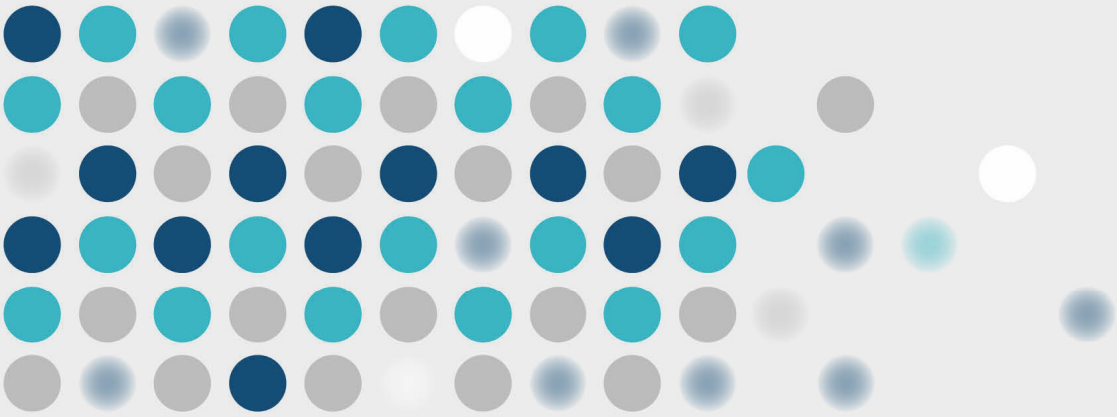
연구총서 16-AB-02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Critical Review of Criminal Justice Bills 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김한균 | 임정호 | 김정연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발간사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2012-2016년)의 임기가 끝나고, 2016년 6월 제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형사사법분야 입법정책에 있어서 지난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정책 방안을 전망해 보기 위해 본 연구원의 수시과제로서 기획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는 임기 기간중 역대 가장 많은 의원입법안을 발의하고, 특히 형사사법 분야에서 형법, 형사소송법과 형사특별법 관련 다수의 주요법안을 심의하고 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입법분석과 평가 등 전문적인 입법지원 체계가 갖추어질 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형사소송법, 성폭력 분야 형사특별법, 행정형벌관련 주요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의원입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20대 국회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활동의 효과적 수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김한균 연구위원, 임정호 부연구위원, 김정연 전문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진 환

목 차

국문요약 ····· 1

| 제1장 | 서 론 (김한균) ····· 1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7
1. 연구의 배경 ····· 17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 19
제2절 연구의 얼개와 방법 ····· 20
1. 연구의 구성체계 ····· 20
2. 연구의 방법과 대상 ····· 21
제3절 선행연구 성과분석 ····· 22
1.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 ····· 22
가. 기본권제한 입법과 형사입법의 제한 ····· 23
나. 형사입법제한 기준으로서 법익개념 ····· 23
다.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24
라. 형사입법의 합리적 개선전략 ····· 25
마. 본 연구와의 관련 의미 ····· 26
2.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 27
가. 형법개정관련 입법동향 ····· 27
나. 형사소송법 분야 입법정책동향 ····· 28
다. 형사특별법 분야 입법정책동향 ····· 29
라. 형사입법정책의 개선방안 ····· 29
마. 본 연구와의 관련 의미 ····· 30
3.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 ····· 31

가. 형사입법 이론과 실천적 입법지침 ····· 31
나. 현행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 32
다. 한국 형사입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형사입법평가의 기준틀 모색 ····· 33
라. 본 연구와의 관련 의미 ····· 34

| 제2장 |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현황 분석 (김정연) ····· 37

제1절 의원입법 현황 개관 ····· 39
1. 의원입법안 발의현황 ····· 40
가. 의원발의 법률안 개관 ····· 40
나. 형사법 분야 의원입법안 현황 ····· 41
2. 연도별·월별 추이 ····· 44
가. 연도별 추이 ····· 44
나. 월별 추이 ····· 45
제2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처리현황 ····· 45
1. 처리현황 ····· 45
2. 가결율 ····· 47
3. 폐기율 ····· 49
제3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형사제재 경중 ····· 50
1. 형사제재의 경중 개관 ····· 50
2. 처벌의 강화 ····· 52
3. 처벌의 완화 ····· 53
제4절 소 결 ····· 54

| 제3장 | 한국과 미국의 의회입법 지원제도 (임정호) ····· 55

제1절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 57
1. 서 론 ····· 57
2. 임무와 역할 ····· 58
가. 임무 ····· 58
나. 입법과정에서의 역할: 법률안 제출전 단계 ····· 58
3. 서비스 유형 및 내용 ····· 58
가. 수동적 서비스로서 입법조사회답 ····· 58
나. 적극적 서비스로서 보고서 배포·제공 ····· 59
다.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 임무수행 ····· 60
4. 처장의 위법 및 개선사항 보고의무를 통한 적극적 임무수행 ····· 60
5. 소 결 ····· 61
제2절 미국연방의회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 61
1. 서 론 ····· 61
가. 의회조사국의 성립과정: 수동적 역할에서 적극적·선도적 역할
수행 기구로 ····· 61
나. 유의점: 서비스 대상의 한정과 기밀성으로 인한 문제 ····· 62
2. 적극적 업무수행의 전제: 조직 및 예산 ····· 63
3. 임무와 역할 ····· 64
가. 임무 ····· 64
나. 입법 과정에서의 역할 ····· 65
4. 업무수행 원칙 ····· 67
5. 의회조사국의 의회 제공 서비스 ····· 69
가. 서비스 대상 ····· 69
나. 서비스 유형 및 내용 ····· 69
다. 지속적인 적극적 서비스 제공: 최신성 확보를 위한 업데이트 ····· 72
라.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주도적 임무수행 ····· 74
6. 2015년 의회조사국의 연방형사입법 지원 ····· 74
7. 소 결 ····· 75

| 제4장 |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분석 (임정호) …… 77

제1절 형법·형사소송법 분야 의원입법안의 전반적 경향 개관 …… 79
제2절 의원입법안을 통한 형법·형사소송법의 개정 태양 …… 81
1. 단순한 형식적 개정 …… 81
가. 헌법재판소결정의 반영 …… 81
나. 타법 개정 반영 …… 84
다. 법정형 단순 가감 …… 84
라. 언어순화 …… 85
2. 실질적 개정: 범죄요건의 창설 또는 폐지 …… 87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활용의 문제: 공감대 형성의 지향과 효율성 강조로 인한 통일적·체계적 심사의 결여 가능성 …… 90
가. 유사 사항에 대한 중복적 발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활용 …… 90
나. 이질적 사항의 통합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활용 …… 94
제3절 중점분야: 발의된 형법·형사소송법 의원입법안의 주된 내용 …… 98
1. 형법 분야: 처벌 강화와 재산형의 실효성 확보 …… 98
가. 형법 분야에 있어서의 처벌 강화 강조 경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예외 …… 98
나. 재산형의 실효성 확보 …… 102
2. 형사소송법 분야에 있어서의 기본권 보장 강조 입장과 실체 진실 발견 강조 입장의 대립 …… 102
제4절 발의된 형법·형사소송법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 104
1. 통과된 의원입법안에 있어서의 성과와 한계: 적극적 입법권 행사 여부 …… 104
2. 통과되지 못한 의원입법안에 있어서의 부분적 성과 …… 106
가. 형법 …… 106
나. 형사소송법 …… 107
제5절 소 결 …… 108

| 제5장 | 형사특별법 제·개정 법안 분석 (김한균) ····· 111

제1절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법안 분석 ····· 113
1. 범죄화 – 가벌규정 신설 ····· 114
가. 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 114
나. 유사강간죄 처벌범위 확대 ····· 115
2. 처벌강화 – 구금형 및 벌금형 가중 ····· 115
가. 가중사유 – 관련범죄 및 재범 증가 ····· 115
나. 가중사유 – 중대한 피해 및 피해회복의 어려움 ····· 117
3. 처벌강화 – 처벌 대상 확대 및 불처벌 대상 축소 ····· 117
가. 가중처벌 연령기준의 상향 ····· 117
나. 19대 국회 이전의 법개정 경과 ····· 118
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 119
4. 감독강화 – 처분대상 확대 및 처분요건 강화 ····· 120
5. 형벌체계 균형 조정 ····· 121
가. 관련법률 규정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 ····· 121
나.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응 ····· 121
6. 판결례 반영 ····· 121
가. 신상정보등록 관리 ····· 122
나. 성적목적 공중장소 침입의 대상 ····· 122
다.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 122
라. 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123
제2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안 분석 ····· 123
1. 처벌강화 – 구금형 및 벌금형 가중 ····· 124
가. 구금형의 가중과 벌금형의 삭제 ····· 124
나. 구금형의 신설 ····· 125
2. 처벌강화 - 처벌대상확대 ····· 125
3. 감독강화 – 처분대상 확대 및 처분요건 강화 ····· 126
가.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의 확대 ····· 126
나. 신상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대상 확대 ····· 127
4. 처벌의 배제 ····· 127
가. 성매매 청소년의 불벌 필요성 ····· 128

나. 처벌필요성의 검토 ····· 129
제3절 소 결 ····· 129
1. 성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형사특별법안의 평가 ····· 129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안의 평가 ····· 130

| 제6장 |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분석 (김정연) ····· 133

제1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경향 개관 ····· 135
제2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개정 태양 ····· 137
1. 단순한 형식적 개정 ····· 137
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영 ····· 137
나. 단순 벌금형 상향 ····· 139
다. 언어순화 ····· 141
2. 실질적 범죄요건의 개정 ····· 143
가. 새로운 의무부과 및 행정형벌 규정의 신설 ····· 143
나. 행정형벌 관련 처벌완화 ····· 144
3. 유사사항에 대한 중복적 입법안 ····· 145
제3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주요 내용 ····· 148
1. 재난안전 관련 의원입법안 ····· 148
2. 부정부패 관련 의원입법안 ····· 149
3. 식품안전·보건 관련 의원입법안 ····· 151
제4절 소 결 ····· 153

| 제7장 | 결론 :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성과와 개선방안 (김한균) ····· 155

제1절 논의의 정리: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 157
1. 제19대 국회 형사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현황 ····· 157
2. 의회입법 지원제도의 현황 ····· 158

3. 형법 및 형사소송법관련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 158
4. 성폭력분야 형사특별법관련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 159
5.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 160
제2절 효과적·전문적 의원입법을 위한 개선방안 ····· 160
1. 형사입법 규범적 원칙의 구체적 정립 ····· 160
2. 입법절차상 개선방안 ····· 162
가. 입법지원과 연구기반의 제도적 정립 ····· 162
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내실화 ····· 163
다. 형사입법평가 제도화 ····· 164

참고문헌 ····· 165

Abstract ····· 171

[부록]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분석자료 ··· 173

표 차례

〈표 1-1〉 제19대(2012~2016) 국회 발의주체별 법률안통계 ····· 18
〈표 2-1〉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분류 ····· 42
〈표 2-2〉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처리현황(2012.5.30.-2016.3.31.) ····· 46
〈표 6-1〉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분류 ····· 135

그림 차례

[그림 2-1] 제19대 전체법률안 중 의원입법비율 ····· 40
[그림 2-2] 제19대 전체법률안 중 의원입법비율 ····· 40
[그림 2-3] 의원입법안 중 형사법 관련 법률안 비율 ····· 41
[그림 2-4] 의원입법안 중 형사법 관련 법률안 비율 ····· 42
[그림 2-5]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분류 ····· 42
[그림 2-6]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분류 ····· 43
[그림 2-7]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연도별 추이(2012.5.30.-2016.3.31.) ····· 44
[그림 2-8]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월별 추이(2012.5.30.-2016.3.31.) ····· 45
[그림 2-9]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처리현황(2012.5.30.-2016.3.31.) ····· 46
[그림 2-10] 전체입법의 가결률, 의원입법의 가결률, 형사법 가결률 비교 ····· 47
[그림 2-11] 발의주체별 법률안 가결률 비교 ····· 48
[그림 2-12] 전체입법의 폐기율, 의원입법의 폐기율, 형사법 폐기율 비교 ····· 49
[그림 2-13] 처벌규정 중에서 처벌강화 및 처벌완화의 비중 ····· 51
[그림 2-14] 의원입법안의 처벌강화 내용 ····· 52
[그림 2-15] 의원입법안의 처벌완화 내용 ····· 53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본 연구는 2016년 4월 총선을 전후하여 제19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제20대 국회의 과제를 전망해 보는 시점에서 기획되었다.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제20대 국회의 입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입법정책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2. 제19대 국회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836건에 달하는 의원입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가결된 법률안의 비율이 전체 법률안의 가결률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처벌강화의 취지인 법률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형사입법의 전문화,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4.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현황과 관련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형사법과 관련된 의원입법안 836건을 선별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률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형사특별법 내지 형사 관련 법률은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안 전수조사시 범죄통계를 참고하여 선별하였다.

5.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현행 형법 법익질서 체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법정형의 가중문제, 형사특별법 규정의 양산으로 인한 기본법과 특별법의 체계정합 문제, 행정법상 형벌법규의 과잉 문제를 살펴본다.

6. 형사법의 체계적 정합성, 엄벌주의적 대응, 형사특별법의 과잉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노력의 대상이다. 본 연구 역시 같은 문제의식과 관점에서 제19대 국회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형사입법의 합리화를 위한 형사입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활동을 위해서는 입법지원기관의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사전적·사후적 입법평가의 체계와 절차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관점에 입각한다.

제2장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현황 분석

8.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현황과 관련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발의된 법률안 중에서 형사법과 관련된 의원입법안 836건을 선별하여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

9. 형사법 관련 법률안의 선별기준은 우선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뿐만 아니라 형사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률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형사특별법 내지 형사 관련 법률은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안 전수조사시 범죄통계를 참고하여 선별하였다.

10.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법률안 건수는 17,822건에 달하는데, 그 중 의원발의된 법률안이 15,444건에 이르러 전체 입법안 중에 87%에 해당한다.

11. 제19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15,444건 중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기타 형사 관련 법률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836건에 달한다. 제19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중 형사법 관련 법률안의 비율은 5%에 해당한다.

12.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전체 836건 중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법률안은 165건으로 20%에 해당한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의원입법안은 160건으로 19%에 해당한다. 기타 형사특별법, 행정형벌 관련 법률의 법률안은 511건으로 전체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중에 61%를 차지하고 있다.

13.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 법률안의 처리결과 중 미처리(계류)된 법률안이 총 836건의 법률안 중 50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안반영으로 인한 폐기가 267건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원안가결된 법률안 17건과 수정가결된 19건을 합하여 총 36건으로 형사법분야 의원입법 법률안 중 4%를 차지한다.

14. 제19대 전체 입법안 중에서 위원장 제안 법률안의 가결률은 1,285건 중 1,280건으로 99.6%이고,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1,093건 중 379건으로 34.7%에 해당한다. 위원장 제안 가결률은 차치하고라도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과 비교하면,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가결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836건 중에서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이 458건에 이르는데, 처벌관련 법률안의 상당부분이 처벌강화를 위한 법률안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의 상당부분이 처벌강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분야에 있어서의 처벌강화 강조경향 내지 엄벌주의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처벌규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 처벌강화를 위하여 발의된 법률안이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 중에서 88%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형사입법에 있어서 엄벌주의 경향은 법정형 상향, 새로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장 한국과 미국의 의회입법 지원제도

17.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장 직속 독립기관으로 조사회답, 이슈와 논점, 현안보고서, 정책보고서, 현장보고서, 조사와 정보 등 연구 및 조사 결과물을 생산하여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8.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지원 서비스를 행함에 있어서, 법률안 제출전 단계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업무를 행하고, 의원 비서진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안 내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법률안 제출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19. 미국 연방의회조사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입법과정 등에서의 구체적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위원이나 위원회 요청 사항에 따른 조사·분석 및 회답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제1호) 등을 행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 입법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20. 미국연방의회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부서로는 미국법부(American Law Division), 국내사회정책부 (Domestic Social Policy Division), 외교·국방 및 통상부(Foreign Affairs, Defense and Trade), 정부 및 재정부(Government and Finance Division), 자원·과학 및 산업부(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Division)가 있다. 지식 서비스 그룹 (Knowledge Service Group)의 경우 의회조사국내 입법지원 전문가 및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정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1. 의회조사국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법안의 분석·평가 및 기타 위원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회기 시작시 먼저 “한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목록”과 그 외 위원회 처리 안건과 심층 분석이 필요한 주제의 목록을 제공하고, 입법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의원 또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 입법기능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연구·참고자료를 제공하며, 직원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정보 및 연구역량의 개발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22. 의회조사국은 법안의 발의와 심사 및 표결에 이르기까지 입법 관련 전단계에 있어서 의원 개인과 의회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적시성의 유지를 위하여 CRS Report로 대표되는 보고서 등 발간물의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4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분석

23. 형법일부개정안의 경우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주문하는 여론이 반영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체 진실 발견을 강조한 의원입법안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 의원입법안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헌법재판소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정한 조문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입법안의 발의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헌법재판소결정의 '직접적 반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25. 의원입법안들 중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한 구성요건에 대한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을 상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특정 구성요건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은 많지 않았다.

26. 의원입법안에 있어서 언어순화가 다수 반영된 것을 가지고 단순히 의원입법에 있어서의 한계로만 볼 수는 없다고 평가된다. 의원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법령에 있어서의 언어적 표현을 차근차근 순화하는 것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은 물론이고 일반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27. 일부 의원입법안들은, 처벌규정의 신설을 통한 상징효과를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부분 기존의 처벌규정들을 통해 포섭이 가능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의도한 것이라 입법의 필요성 내지 절박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중한 처벌의 강조로 인하여 자칫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의원입법안들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28.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은 형법의 경우 총 4건, 형사소송법의 경우 총 4건에 이른다. 이러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활발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만큼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입법에 있어서 의원입법안이 같은 논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입증한다. 비록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대안발의라는 수단을 통하여 입법이 실현이 되었다는 점 자체의 평가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적지 않은 의원입법안이 중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현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유사한 중복적 의원입법안이 발의되는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역시 각각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원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나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각각의 개별적인 의원입법안을 반영하는 절차를 통하여, 중복적인 의원입법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가장 적절한 입법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을 모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별 입법기관으로서의 의원간 공감대 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0.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안들 중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고 기존 구성요건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데 주력한 측면이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31. 특히 표현의 자유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위와 달리 처벌 완화적 입법안들이 상당수 발의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당해 기본권의 보장의 목적에서 적극적인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형법상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거나, 법정형을 하향조정하거나, 또는 불처벌의 예외를 명문화하는 방식의 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32.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을 강조한 의원입법안들과 실체 진실 발견 측면을 강조한 의원입법안들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한편에서는 증거능력 요건이나 영장주의를 강화하거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입법안들이 발의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속사유를 확대하거나 현행범의 구속 사유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입법안들도 적지 않게 발의되었다.

33.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을 반영한 의원입법안의 통과라는 측면을 볼 때, 입법의 공백을 메우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절차 효율도 증대시키는 등 실질적 성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 혹은 의원입법으로 통한 다양한 민의의 반영보다는, 판례의 반영을 통한 개별규정의 '보완'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5장 형사특별법 제·개정 법안 분석

34. 제19대 국회의 의원입법의 특징을 살펴봄에 있어서 형사특별법은 그 종류와 범위, 법안건수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수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형사특별법 분야중에서도 제19대 국회 관련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폭력 관련 형사특별법을 택하였다.

35.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2012년 6월 14일 제안법안(1900130호)부터 2015년 12월 18일 제안법안(1918223호)에 이르기까지 모두 54건이다. 이 중에서 원안 또는 수정가결이 3건, 대안반영폐기는 16건, 폐기 2건, 그리고 임기만료로 33건이 폐기되었다.

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행위의 특정유형을 신설 범죄화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형사특별법이다. 또한 처벌강화 관련 의원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벌강화의 근거를 관련범죄 및 재범증가에서 찾는 경우가 다수다.

37. 성폭력 관련범죄의 증가현상에 관하여 국민여론과 사회현안을 주시하고 입법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다만 단순히 구금형이나 벌금형의 상향조정을 거듭하는 입법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의원입법안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고려도 포함되어야 바람직한 개정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38. 성폭력범죄 사안의 경우 죄질의 중함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의원입법안으로 도촬범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불법 동영상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유포될 경우에는 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는 내용이 있다.

39. 최근 성폭력대상 형사입법은 구금형의 가중을 통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내 감독처분 역시 처분대상을 확대하거나 처분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벌적 처분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40.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으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012년 6월 21일 제안법안(1900229호)부터 2015년 11월 3일 제안법안(1917574호)에 이르기까지 모두 63건이다. 이 중에서 대안반영폐기는 24건, 폐기 3건, 그리고 임기만료로 35건이 폐기되었다.

41. 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9월 당시 잇따르고 있는 흉악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2년 12월 까지 국회차원에서 성폭력 방지와 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성폭력 방지 및 처벌 등 관련 58건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중 성폭력,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형사특별법안은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 평가할 수 있다.

4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관련 의원입법안의 주요쟁점은 처벌범위의 확대와 처벌정도의 강화로 나뉜다. 그리고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조정하거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축소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3. 특히 제19대 국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취지의 법제화를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적극 수행한 점을 평가받을 만하다. 단순히 형사처벌 강화의 방향이 아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내 감독관리 강화, 피해보호 기관 및 시설의 확충의 방향을 잡고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문화, 합리화가 필요한 문제영역이라 할 수 있다.

44.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며,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를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하여 형사입법정책상 처벌의 확대와 강화만큼 중요한 것은 체계적 입법이다.

제6장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분석

45. 형사사법 분야 19대 국회 의원입법안에서도 형법, 형사소송법, 성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을 제외한 기타 형사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로서 행정법규에 규정된 벌칙규정에 관한 법률안의 비중이 가장 크다.

46. 행정형벌과 관련한 법률안은 입법 당시의 사정 및 실정에 따라 결정되고, 특히 사회적 이슈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모습으로 발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및 공공안전에 관한 형사입법의 경우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등 일련의 재난안전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다. 전반적으로 재난사고 발생의 예방과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는 여론이 반영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47. 행정법규 관련 규정은 행정현상의 변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무부과 규정 및 처벌규정의 신설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영역이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사건 이후에 행정법규 관련 행정형벌 규정들이 신설된 경우가 많은데, 단편적 개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행정법규 관련 새로운 의무부과 규정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규정의 신설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라 하더라도 자칫 과잉금지원칙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8. 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정벌을 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을 선택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상 바람직하다. 특히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불필요하게 형사범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법률과 실태에 따라 실효적 제재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9.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벌금형의 일괄 상향 법률안은 양적인 입법실적 및 성과를 위한 입법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한편, 단순한 언어순화 의원입법발의안의 경우 형식적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의원입법의 한계로 인식될 여지가 있지만,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일반국민의 법령 이해도 고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50. 행정형벌과 관련한 법률안은 입법 당시의 사정 및 사회환경에 따라 결정되고,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형태로 발의될 수밖에 없다.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회환경의 변화 및 시대상황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제7장 결론 :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성과와 개선방안

51.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제·개정 내용은 형사제재, 형사절차, 행형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체법적으로는 단순용어변경부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요건의 개정이 내용일 것이며, 형사제재에 있어서는 구금형기의 변경, 벌금액수의 변경, 공무원 의제규정의 조정에 따른 변경, 구금형의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개정이 내용일 것이다. 절차법적으로는 공소시효, 압수수색 절차, 친고죄 규정과 특히 피해자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내용일 것이다. 행형법적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 일부집행유예, 형의 실효, 교정행정 관련 내용을 살필 수 있다.

52. 정책적 의미를 성찰해 본다면, 형사제재의 신설이나 법정형 상향가중, 벌금형의 구금형으로의 대체, 법관의 감경재량 축소 경향은 당해 범죄사안에 관한 사회적 평가의 엄중화와 방지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형사제재 중에서 비범죄화, 법정형의 하향감경, 구금형 이외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의 추가, 법관의 양형재량 확대 경향은 당해 행위사안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와 인권증진을 향한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것이다.

53. 형사입법에서 엄벌주의 일반의 경향은 인권침해 소지가 확대되고 형사사법자원의 부담이 커지며, 오히려 형벌효과의 저하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성이 엄연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현안으로서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학대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엄벌의사가 형사입법적으로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신종범죄의 등장이나 기본법이 적절히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관하여는 기본법-특별법 체계의 정합성에 앞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개별

특별법 입법도 마땅히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거나 대안을 찾거나 또는 유보할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지점은 마땅히 국회다.

54.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단순반영을 넘어 형사입법에 있어서 헌법적 제한원리인 책임원칙, 비례성원칙의 구체적 내용이 정립될 유용한 기회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삼아 당해 법안의 개정에 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연구와 실무의 기여, 국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면서, 그 성과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55. 형법 고유의 제한원리인 법익보호원칙이나, 형벌의 최후수단성 내지 최소투입성은 엄벌주의 경향, 과잉형벌의 우려, 행정형벌 확대 여부에 관하여 현실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하고 예측곤란한 변화양상 속에 형법과 형사특별법 체계정비 작업은 전통적으로 법무부가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 정비의 방향과 내용에 관하여 사회 각 분야 국민의 의견과 성찰이 반영될 통로가 더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다름아닌 국회의원의 적극적 입법활동으로서 실현될 수 있다.

56. 형사입법의 근거 및 제한 원칙이 국회 입법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의 전문성 보완, 연구와 자료 지원, 평가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안의 발의와 심사 및 표결에 이르기까지 입법 관련 전단계에 있어서 개별 의원과 의회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57.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안 평가와 정책대안 조사·연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연간 100-200건에 달하는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 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입법연구회의 전문적 연구기능과 협업의 제도적 기반구축도 검토필요성이 있다.

58. 법안심사소위의 복수화, 상설화를 포함하여 상임위 내실화 방안으로는 상임위원회 배정에서의 전문화 보장과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 활성화가 제시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처벌과 성폭력피해자 보호관련 법개정을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상설 소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9. 법정형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형사정책 합리화를 위한 입법이 실적 쌓기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법안 발의단계부터 입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고 보완가능한 방향으로 지원하는 형사입법평가 제도 내지 입법영향 평가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 론

김 한 균

제1장

서 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목적, 얼개와 방법을 제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이어서 제2장은 제4장부터 제6장까지 형사사법분야 개별 의원입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현황을 개관한다.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기획 배경, 연구 수행의 목적,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2016년 4월 총선을 전후하여 제19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제20대 국회의 과제를 전망해 보는 시점에서 기획되었다. 제19대 국회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임기기간중 모두 17,822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

〈표 1-1〉 제19대(2012~2016) 국회 발의주체별 법률안통계[1)]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계류
			계	법률반영[2)]			계	법률미반영					
				가결		대안반영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기타	
				원안	수정								
의원	15,444	15,444	5,346	371	763	4,212	10,098	1	9,899	172		26	
위원장	1,285	1,284	1,280	1,275	5		4	1	3				1
정부	1,093	1,093	803	129	250	424	290	1	288			1	
총계	17,822	17,821	7,429	1,775	1,018	4,636	10,392	3	10,190	172		27	1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건수다.[3)] 제19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안이 16,729건으로 전체 법안의 94%에 달한다. 다만 정부안은 1,093건이 접수되어 803건이 반영되어 법률반영율이 높은데 비해, 의원입법안은 16,729건이 발의되어 10,074건이 폐기 또는 철회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만을 보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든가 '일하지 않는 국회' 라고 비판에 그친다면, 헌법이 명한 입법권한을 가진 입법부의 입법기능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제20대 국회의 입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입법정책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통계자료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FinishBillSearch.do. 2016. 5. 30. 최종검색)

2) '법률반영'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 등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을 뜻한다. '원안가결'은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률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 경우다. '수정가결'은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경우 등 당초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를 뜻한다. '대안반영'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는 경우다. '법률미반영'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대안반영 제외), 발의 후 철회된 법률안 등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을 뜻한다. '폐기'는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 후 휴회·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어 폐기되는 법률안,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을 뜻한다. '철회'는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한 법률안 법률안의 경우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 2016. 5. 30. 최종검색)

3) 탁희성 외,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4면.

기획의도와 연구내용 또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있다.

특히 제19대 국회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836건에 달하는 의원입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가결된 법률안의 비율이 전체 법률안의 가결률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상당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내용적 완성도나 현실 성과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 것이다. 특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처벌강화의 취지인 법률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살피건대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이 다수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율이 낮다는 것은 법안준비절차의 부실 내지 의원입법활동 지원체계의 부실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상당 부분이 형벌가중의 취지라 한다면, 형사입법뿐만 아니라 형사정책 전반에 걸쳐 엄벌주의와 특별법 양산으로 인한 형사사법자원의 낭비와 범죄방지 효과의 부실, 형사법 체계의 왜곡이라는 문제의 원인으로서 의원입법안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 또한 상당하다 할 것이다.[5)] 따라서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형사입법의 전문화,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4)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이하 제2장 제1절 참조.

5) "최근 국회 법안 발의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법양산이다. 19대 국회의 특별법 발의 건수(대안반영 폐기 포함)는 832건이다. 16대 국회 92건에서 17대 국회는 325건, 18대 국회는 7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별법 발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간편하고 실효성이 크기 때문이다. .... 특정 사건에 대해 만들어진 '특별법'은 기존 법과의 부조화가 더 심각하다. 국회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난 민심'에 편승해 무리한 특별법을 추진해서다. 국회는 지난 2010년 성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을 내세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나란히 제정했다. 또 '조두순 특별법'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체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다. 이러한 특별법으로 인해 한국은 성범죄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독특한 체계를 갖게 됐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이면 형법, 13~18세이면 청소년성보호법,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각각 처벌하는 식이다.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만들어진 특별법은 위헌 판결로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의 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범죄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4월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성범죄자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2016년 5월 31일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0/2016053002472.html 2016. 6. 7. 최종검색)

첫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안의 경향과 주요내용을 평가한다. 기본법률의 형식적, 실질적 개정의 내용과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형사사법의 근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확인한다.

둘째, 성폭력대책 관련 형사특별법 의원입법안의 경향과 주요내용을 평가한다. 특히 형벌가중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의 양산에 있어서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셋째,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경향과 주요내용을 평가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형사제재의 투입에 있어서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즉, 본 연구는 특별법 양산과 형사제재 확대 및 강화 경향을 중심으로 제19대 국회의 형사법 및 형사정책 관련 입법정책을 평가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의원입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19대 국회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한 입법정책적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 내용과 형식을 헌법합치적이고 정책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의 얼개와 방법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구성과 연구대상 및 방법을 설명한다.

1. 연구의 구성체계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구성을 개관하고, 이어서 제2장에서는 제19대 의원입법안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그 처리현황 및 형사제재 경중 관련 경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하 제4장부터 제6장까지 각각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형사제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개정 법률안의 구체적 분석에 앞서 제19대 형사사법 의원입법안의 경향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제19대 국회 기간중 의원입법안 처리현황을 연도별, 월별추이, 가결 및 폐기율, 형사제재의 강화 및 완화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의 구체적 검토의 선행작업으로,

한국과 미국의 의회입법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역할, 의원입법 지원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 미국 연방의회 의회조사국의 구성, 그 임무와 역할, 입법지원 업무수행의 원칙과 서비스 내용, 2015년도 연방형사입법 지원실적을 개관한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본 연구의 본론부분으로서, 각각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형사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법률 제·개정 의원입법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의원입법안의 전반적 경향을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그 개정 태양을 단순한 형식적 개정과 실질적 개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발의된 관련 주요법안의 내용을 살펴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형사특별법 의원입법안을 분석한다. 다만 형사특별법의 종류와 범위, 법안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효과적 분석을 위해서 제19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현안인 성폭력 분야 의원입법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성폭력처벌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을 대상으로 그 경향을 먼저 개관하고, 단순한 형식적 개정, 실질적 범죄요건 개정, 유사사항에 관한 중복적 입법안을 살펴본다. 주요 관련법안으로는 재난안전, 부정부패, 식품안전 및 보건 분야의 법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제19대국회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분석내용에 터잡아 체계적 의원입법의 원칙방향, 그리고 효과적·전문적 의원입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대상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현황과 관련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형사법과 관련된 의원입법안 836건을 선별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6]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률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형사특별법 내지 형사 관련 법률은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안 전수조사시 범죄통계를 참고하여 선별하였다. 개별 의원입법안 분석을 위해서는 소관상임위 회의록,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률안검토의견서 등의 자료를 각각 참고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성과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입법 분야 연구성과를 본 연구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이자 목적인 형사입법정책의 합리화와 전문화를 위한 논의 윤곽과 방향을 잡고자 한다.

1.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

200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6) 이하 제4장부터 제6장에 인용된 분석대상 개별 의원입법안의 출처는 모두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Simple.do)이다.



관한 연구」는 형벌법규 입법단계에서 내용적으로 불충분하거나 입법절차상 부실한 입법을 제한하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3년 연구는 형사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첫째, 행위규범의 경우 법익보호원칙, 둘째, 제재규범의 경우 비례원칙, 셋째, 행위규범과 제재규범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명확성 원칙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형사입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가. 기본권제한 입법과 형사입법의 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40조, 제37조 제2항) 하지만 부정적 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그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적 지침이 없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입법행위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민사 또는 행정법 영역들과는 달리 형사입법 영역에서는 규범위반에 대한 법효과가 형벌이라는 점에서 입법재량의 내용은 더 많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량 형사입법 현실을 보면, 기본권 보장보다는 효율성의 고려가 더 앞서 있다. 형사입법의 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형법적으로 대처한다면 임시방편의 대책이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형사입법자의 비합리적인 형벌법규 제정을 통제할 한계규범의 논의는 대단히 중요하다.[7]

나. 형사입법제한 기준으로서 법익개념

형법학에서 법익개념은 형사입법 영역에서 범죄화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형법제한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법익개념은 오늘날 그 비판적 기능 상실을 비판 받고 있다. 근대 법익보호 사상에 따르면 형법은 공동생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투입되어야 한다. 이는 형법투입의 최후수단성을 뜻한다. 그런데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익개념은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라 가치 내지 규범과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재구성된다. 추상적 법익개념은 형사입법에 대한 비판기능을

---

7)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27면.

수행하지 못한다. 법익개념의 체계비판적 기능 부재 현상은 20세기 후반 위험사회 현상에서 더 분명히 나타난다. 즉 형사입법은 침해에 대한 대응수단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변화된다. 범죄화의 근거도 사회유해성이 아니라 사회위험성이 된다. 이는 오늘날 형사입법 현실에서 추상적 위험범과 보편적 법익의 지속적인 증대, 특히 상징적 형사입법의 경향에서 두드러진다.[8)]

하지만 법익개념은 여전히 특정 행위의 당벌성에 관한 형사정책적 심사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기준을 제공해주는 논증수단이다. 다만 법익개념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입법 정당성 판단의 완결된 기준이 못된다. 형법적 제재의 대상으로서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익보호원칙 외에도 개별적 범죄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법익보호원칙과 범죄유형의 관계를 고려하면 특히 추상적 위험범의 입법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개별사건에서 법관이 입법자의 입법당시의 위험성 예견을 수정하는 것이 배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의 입법이 정당화되려면 보호될 법익의 질이 매우 높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입법당시에 위험성 존재의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입법 현실에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형사입법자는 추상적 위험범이나 보편적 법익의 범죄 입법을 통하여 중요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9)]

다.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형사입법의 헌법적 제한원칙은 평등원칙(헌법 제10조), 비례원칙(제37조 제2항), 명확성원칙(제12조 제1항)이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이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 내지 자의금지의 포괄적인 개념내용은 형사입법자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 못한다. 입법자가 당해 형사입법을 더 목적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거나 더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등원칙의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10)]

---

8)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32-36면
9)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69-78면
10)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80-88면.

비례원칙은 목적설정의 정당성,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및 균형성원칙을 부분원칙으로 포함하고 있다. 형사입법자의 목적은 현행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정당화된다. 적합성원칙은 형사정책적 목적을 위해 입법자가 투입한 수단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선택된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완전히 또는 객관적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만 위헌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형벌을 투입하여 입법 목적달성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필요성원칙은 입법자로 하여금 적합한 수단 가운데 최소의 침해 효과를 가지는 수단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사입법자는 벌금형, 다이버전, 원상회복 등과 같이 가장 피해를 적게 주는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균형성원칙은 입법자가 촉진하려는 목적의 가치가 기본권을 통해 보호된 법익에 대한 제한의 강도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는 법정형 하한의 과도한 상향조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특별법에서 빈번히 나타난다.[11)]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명확성원칙은 형사입법에 있어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효과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위험원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일반조항적인 법률개념, 백지형법이나 위임입법의 요구가 점증되고 있다. 형벌규범의 구성요건 명확성여부에 관한 보다 엄격한 사법적 통제는 입법자에게 효과적인 제한으로 작용할 것이다.[12)]

라. 형사입법의 합리적 개선전략

법익개념, 평등원칙, 비례원칙 및 명확성원칙은 형사입법의 규범적 제한원리이지만, 현실적으로 통제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입법단계에서는 정당의 이해 대립, 이익단체의 로비, 언론매체의 보도경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안에 관한 상세한 검토 없이 입법적 결단만 강조하는 입법자의 행태는 합리적 입법을 어렵게 한다. 사법소극주의로 인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후통제도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입법을 위해서는 헌법과 형법적 차원 뿐만 아니라 절차적

11)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89-92면.
12)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120-138면.

관점에서의 개선전략도 검토해야 한다.[13]

형법적 차원에서는 법익 가치질서에 상응한 법정형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신체적 법익보다 재산적 법익을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법정형을 가중하는 형사특별법은 형법의 통일적 체계라는 관점에서 일반형법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형벌법규의 과잉현상을 초래하는데, 이는 준법정신을 약화시킨다.[14]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해서는 형사입법 사전단계에서 학문과 실무의 공동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자는 결단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므로 국민의 규범의식과 전문적인 형법체계를 경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학의 과학적 정책자문기능은 제도적으로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15]

마. 본 연구와의 관련 의미

2003년 연구는 형사입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형법적 차원에서 법익 가치질서에 상응한 법정형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 법정형 가중 위주의 형사특별법은 형법의 통일적 체계라는 관점에서 일반형법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 형벌을 행정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삼는 형벌법규의 과잉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입법자의 정치적 결단과 사법부의 사후적, 소극적 통제의 한계를 고려할 때, 형사입법과정에서 형법학과 실무의 체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 또한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현행 형법 법익질서 체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법정형의 가중문제, 형사특별법 규정의 양산으로 인한 기본법과 특별법의 체계정합 문제, 행정법상 형벌법규의 과잉 문제를 살펴본다. 특히 형사입법 과정에서 학문과 실무의 공동협력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의원입법 단계에서 법안검토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점과 합리화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13)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139-140면
14)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144-151면
15)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161-180면

2.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201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은 수년 간에 걸친 준비 끝에 형법총칙 개정안이 발의되고 형법각칙 개정을 위한 법정형 정비작업이 본격화된 2011년도 발의되었던 형사사법분야 법률안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11년 연구는 장애인·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문제가 사회적 주요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정부부처와 국회의원의 형사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단편적 내용들을 체계없이 중복적으로 제시하는 등 형사법 체계내 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엄벌주의적 대응만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의 입법적 문제가 부각되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16]

가. 형법개정관련 입법동향

형법총칙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법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형법이론의 발전, 범죄현상의 글로벌화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의 변화와 그에 수반하는 범죄양상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07년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총칙개정의 기본방향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 형법이론발전에 따른 범죄론의 재정비, 사회변화로 인한 범죄화와 비범죄화 현상 반영,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형벌제도의 재정비에 있었다. 2011년 개정안은 누범가중규정을 삭제하고,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을 전부산입으로 개정하였으며,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보안처분의 규제원리로서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양형의 합리화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다만 보호수용 도입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었다.[17]

---

16) 형사입법연구회,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22면.

17) 형사입법연구회,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

2011년 형법각칙분야의 입법동향에서는 장애인·아동대상 성폭력 현안이 가장 관심사였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의 피해자연령 상향과 미성년자의제 강간·강제추행죄의 객체확대,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친고죄 대상 제외, 형종으로서 물리적 거세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까지 발의되었다.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진술 처벌,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죄 신설 등과 같은 규정들이 제안되었다. 형법각칙의 규정은 현실부합성이 중요하므로 사회적 쟁점 현안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단편적인 형법규정의 제·개정은 형사특별법 양산에 의한 형사법체계의 왜곡과 마찬가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의 전면 정비를 통해 형사특별법 규정의 편입을 포함하여, 각칙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18]

나. 형사소송법 분야 입법정책동향

2011년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전반적으로 피고인 등의 절차적인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 사법기관(법원 및 검찰)의 재량통제의 방향이다. 특히 장기간 논의되어 왔던 검경수사권 조정현안이 정리되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요건을 법원의 압수수색의 요건보다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 여지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을 명문화하여, 법규정과 현실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시 행해지는 영상녹화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신청에 의한 영상녹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참고인 조사시변호인 참여권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의 개정안도 논의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법원의 양형재량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측 참가인이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방안, 27-147면.

18) 형사입법연구회,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148-199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확대하고 있는 등의 점에서 적극적인 입법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19]

다. 형사특별법 분야 입법정책동향

2011년도 역시 형사법 제·개정안의 대부분이 형사특별법이다. 기존 형법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적절한 범죄대응수단이 되지 못함에 따라 입법자들은 제·개정이 용이한 형사특별법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개정하는 입법정책을 취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특별법의 양산은 사회적인 불안요소와 위험요소에 즉시 대응하는 효과는 있지만, 과잉형벌, 중형주의의 폐단이 우려된다. 오히려 형벌의 위하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도에는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사회적 관심 현안이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들은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교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조정하거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축소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이 제시되었다. 다만 수년간 단편적인 법개정과 개정안이 누적되면서,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에 일련의 개정결과 산재해 있는 관련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정형과 형벌수단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

라. 형사입법정책의 개선방안

형사입법에 있어서 상당수 입법안이 만들어지고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법률전문가들이 검토하지 못하고 관련 실무담당자선에서 사실상 결정되거나, 이익단체의 압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법의 기본원칙과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지

---

19) 형사입법연구회,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203-260면.
20) 형사입법연구회,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263-310면.

못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국회는 상당한 분량의 형사법 관련 입법안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 만큼의 법률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령체제나 법령문구 등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사회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입법안이 형식 혹은 자구만 약간 바꾸어서 중복 발의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일정한 형사법 제·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면 체계적 검토를 거쳐 통일된 제·개정 입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형사입법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형벌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보다 더 신중하게 입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입법자들은 입법의 필요성·중복성·형평성·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안에 대한 학문적 검증과 합의과정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형사특별법의 입법정책은 형벌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 없이 엄벌주의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 형사법체계 전반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형법전면개정과 형사특별법의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 형사법의 전체적인 정합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21]

마. 본 연구와의 관련 의미

2011년 연구는 사회적 주요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다수 입법제안된 형사사법 법률안들이, 단편적 내용들을 체계없이 중복적으로 제시하는 등 형사법 체계정합성이 부족하거나, 엄벌주의적 대응만을 강조하는 등의 형사입법 문제현실을 배경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법률안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연구검토한 실천적 노력이다.

본 연구 또한 2011년 연구의 문제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사입법현실을 인식하고 기획되었다. 형사법의 체계적 정합성, 엄벌주의적 대응, 형사특별법의 과잉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노력의 대상이다. 본 연구 역시 같은 문제의식과 관점에서 제19대 국회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형사입법의 합리화를 위한 형사입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1) 형사입법연구회,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424-426면.

3.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

2014년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연구는 형사입법의 현실이 입법절차 전반에 걸친 정치와 언론의 영향으로 입법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정치적 도구화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즉 형사입법의 동향을 살펴볼 때, 실체적인 합리성 요건 및 절차적인 합리성 심사, 사후적인 입법효과에 대한 평가 등 일련의 입법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부실하다. 따라서 형사입법의 방법과 절차적인 문제를 분석해 봄으로써 형사입법의 구체적 지침과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모색하고자 하였다.[22)]

가. 형사입법 이론과 실천적 입법지침

일반적으로 형사입법자의 무제한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뿐만 아니라 제11조의 평등원칙,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 등을 통해 입법자의 재량을 통제한다. 이같은 입법의 일반원칙은 형사입법에서 특히 엄격하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형법의 최후수단성처럼 일반입법의 원칙은 아니지만, 형사입법의 고유한 한계원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 관점에서 형사입법의 주체는 의회지만, 현대사회의 전문화된 분야에 대한 입법수요 때문에 사실상 정부입법이 활발해지고 있다. 법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형사입법기능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사입법 주체중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국회를 통한 형사입법이 원칙적인 형태이고, 또한 국회의 형사입법은 다른 주체에 의한 형사입법의 한계 내지는 근거로서 역할한다. 이러한 형사입법의 특성에 따라 형사입법의 필요성과 고유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23)]

한편 실체형법 입법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인 가벌적 행위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익론을 통해 전개되어왔다. 하지만 불확정적이고 통일되지 못한 법익

---

22) 탁희성 외,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45-47면.
23) 탁희성 외,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55-81면.

개념이 형사입법자의 지침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사회유해적인 행위에 대한 예방지향적 또는 효과지향적 형사정책을 구현하려는 입법자의 입법 의도내지 입법 형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속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의 형사입법실무에서는 법익 개념이 형법 제한적 기능을 못했다. 오히려 형법의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요건으로 보기도 한다. 헌법합치적 형사입법의 측면에서 볼 때 비례성원칙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은 형벌법규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이 된다. 반면 기본권제한의 사유인 법익이 형벌법규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은 형벌법규의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이자 형사입법의 실질적 지침으로 위상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24]

나. 현행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1998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형사법안 5,541건을 선별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여 형사입법의 경향성과 그 추이를 살펴본 결과 특기할 만한 점은 2000년대 후반부터 형사법 관련 법률안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범죄 발생건수를 보더라도 2000년대 후반 이후에만 특별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형사소송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평가지표로서 법률안의 입안실적을 포함시키면서 법률안 발의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안전, 부정부패 그리고 성범죄이다. 그러나 법률안 발의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폐기율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25] 현행 형사입법의 절차를 분석해 보건대, 정부제출 법률안이 거쳐야 하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 이러한 우회입법에 의하는 경우 정부 각 부처 간의 조정과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들 간의 체계정합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유사・중복규정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서 법적용에서의 혼란을 가중할 위험이 있다는 점, 정부제출

24) 탁희성 외,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95-126면.
25) 탁희성 외,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209-296면.

법률안의 경우와 달리 의원발의 법률안은 각종 사전입법평가와 관계 부처 간의 협의 및 조정절차 그리고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 및 여타 법령과의 혹은 당해 법률 내에서의 충돌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시행의 효과를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점,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지원기관의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사전적 위헌성 심사를 거칠 수 있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6]

다. 한국 형사입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형사입법평가의 기준틀 모색

입법평가제도는 입법의 과학성·객관성과 함께 법률의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전적 입법관련 영향평가제도로는 규제영향평가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법안비용추계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있다. 사후적 입법관련 평가제도로는 법령정비사업과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있다. 형사입법은 입법과정에서 헌법합치 여부와 법치국가적 요청, 민주주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지의 여부가 법률의 정당성 확보의 근거인 동시에 입법평가의 주요기준이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를 위한 분석도구로 원용하고 있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명확성 원칙은 입법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위헌성 및 정책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된다.[27]

형사입법평가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평가에 있어서는 정부입법안과 같이 일반 법률에 그 근거를 두기보다는 국회법 내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입법평가를 위한 조직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유지한 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이 각종 이익단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입법평가의 방식에 있어서도 입법자가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입법평가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평가과정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

26) 탁희성 외,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311-342면.

27) 탁희성 외,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345-360면

할 뿐만 아니라 입법평가의 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형사입법에 대한 평가방식으로서 사전적 입법평가는 형사입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 판단에 중점이 있는 반면에 사후적 입법평가는 시행 형사법률의 효과성 판단에 중점이 있다. 따라서 사전적 입법평가의 기준은 문제분석, 내용분석, 체계분석으로, 사후적 입법평가기준은 효과분석과 비용분석, 피드백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28)]

사전적 형사입법 평가구성요소로서 규범적 평가요소는 형사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목표, 실체적 내용의 체계정합성이며, 효과성 평가요소는 형사입법안의 실효성, 재정적 효과다. 그리고 사후적 형사입법 평가요소로서 규범적 평가요소는 입법목표의 실현정도, 체계정합성 준수 여부 이며, 효과성 평가요소는 법률의 집행현황, 위법행위의 발생현황, 법에 대한 수용정도, 법집행기관의 법적용 상의 문제점이고, 경제성 평가요소는 법집행비용 및 사회적 비용부담의 변화다.[29)]

라. 본 연구와의 관련 의미

2014년 연구에서 파악한 한국 형사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연구에서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데 기본적 관점이 된다.

첫째, 정부제출 법률안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법안으로 우회입법하는 경우 조정과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간 체계정합성이 훼손될 수 있다.

둘째, 조정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사・중복규정이 양산되어 법적용에서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셋째, 의원법안은 사전입법평가, 부처간 협의 및 조정절차,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 및 법령, 당해 법률 내 충돌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 법시행의 효과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평가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째,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지원기관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

28) 탁희성 외,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380-415면

29) 탁희성 외,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483-508면

야 하며, 둘째, 사전적·사후적 입법평가의 체계와 절차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점을 같이 한다.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현황 분석

김 정 연

제2장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현황 분석

제2장에서는 제19대 의원입법안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그 처리현황 및 형사제재 경중 관련 경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하 제4장부터 제6장까지 각각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형사제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개정 법률안의 구체적 분석에 앞서 제19대 형사사법 의원입법안의 경향과 특징을 개관하는데 본 장의 목적이 있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의원입법 일반에 있어서 그 전문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입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법제도적으로 분석한다.

제1절 의원입법 현황 개관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현황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30]에 게재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3월 31일[31]까지 발의된 법률안 중에서 형사법과 관련된 의원입법안 836건을 선별하여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

형사법 관련 법률안의 선별기준은 우선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그 밖에 형사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률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형사특별법 내지 형사 관련 법률은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안 전수조사시 범죄통계[32]를 참고하여 선별하였음을 밝힌다.

---

3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16. 6. 7.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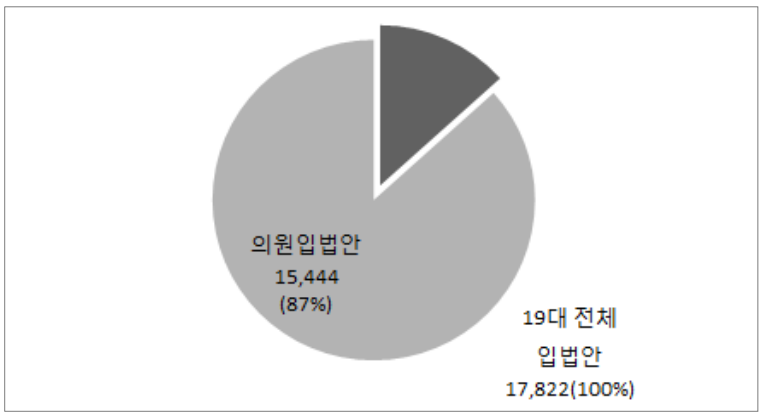
31) 제19대 국회 임기기간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이다.

32) 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범죄통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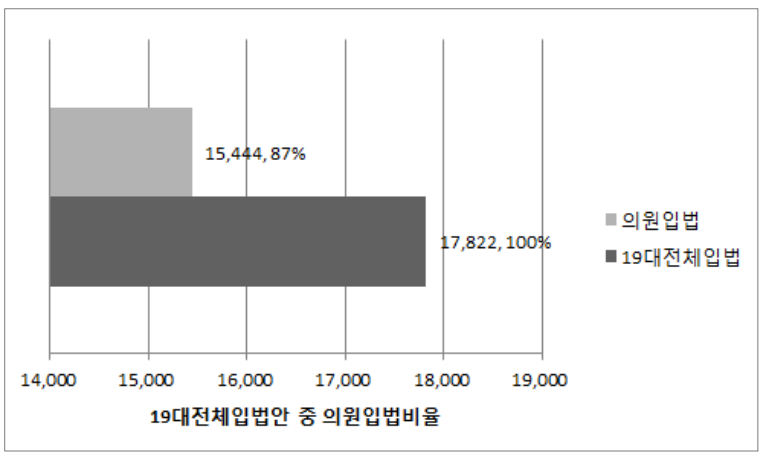
1. 의원입법안 발의현황

가. 의원발의 법률안 개관

[그림 2-1]과 [그림 2-2]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법률안에 대한 의원입법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그림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법률안 건수는 17,822건에 달하는데, 그 중 의원 발의된 법률안이 15,444건에 이르러 전체 입법안 중에 87%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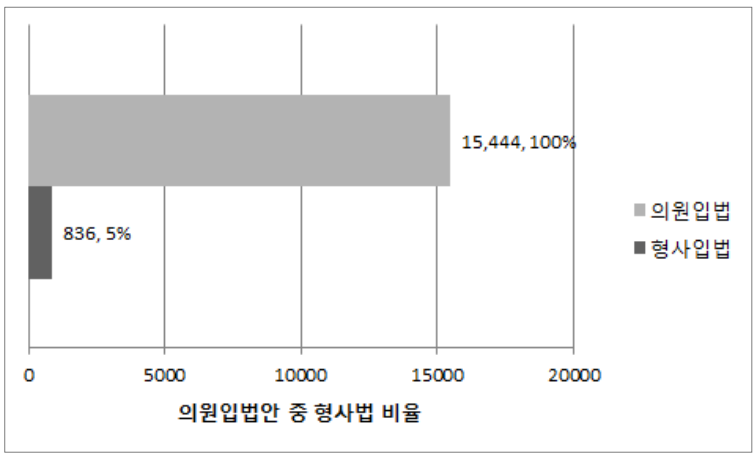
[그림 2-1] 제19대 전체법률안 중 의원입법비율



[그림 2-2] 제19대 전체법률안 중 의원입법비율

구체적으로 제19대 국회의 발의주체별 법률안[33]을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원입법안이 15,444건에 해당하고, 이밖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발의안이 1,285건, 정부제출 법률안이 1,093건에 달한다. 전체 법률안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비중은 87%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발의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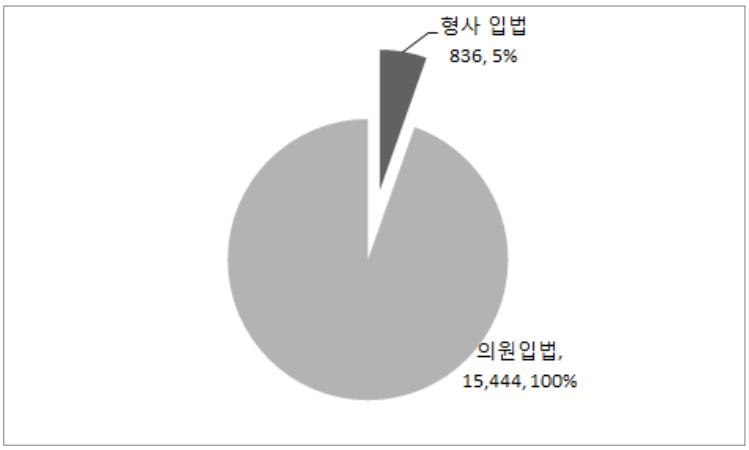
나. 형사법 분야 의원입법안 현황



[그림 2-3] 의원입법안 중 형사법 관련 법률안 비율

[그림 2-3]과 [그림 2-4]는 제19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중에서 형사법 관련 법률안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률안 15,444건 중에서 제19대 국회 조사기간(2012년 5월 30일~2016년 3월 31일) 중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기타 형사 관련 법률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836건에 달한다. 제19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중 형사법 관련 법률안의 비율은 5%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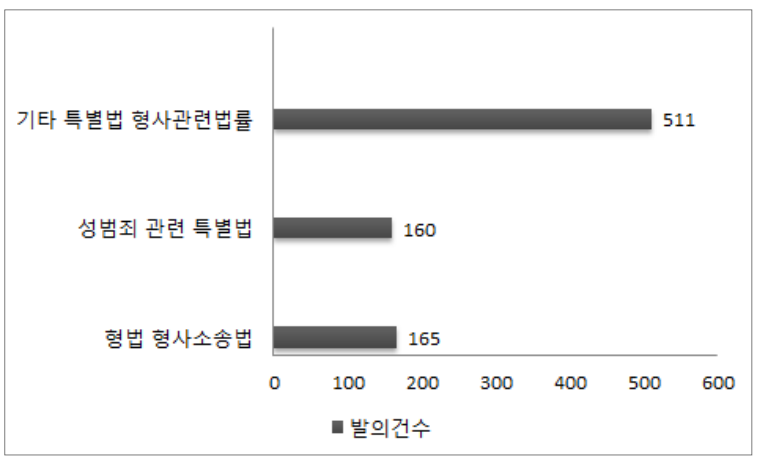
33) 제19대 발의주체별 법률안 통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FinishBillSearch.do, 2016. 6. 7.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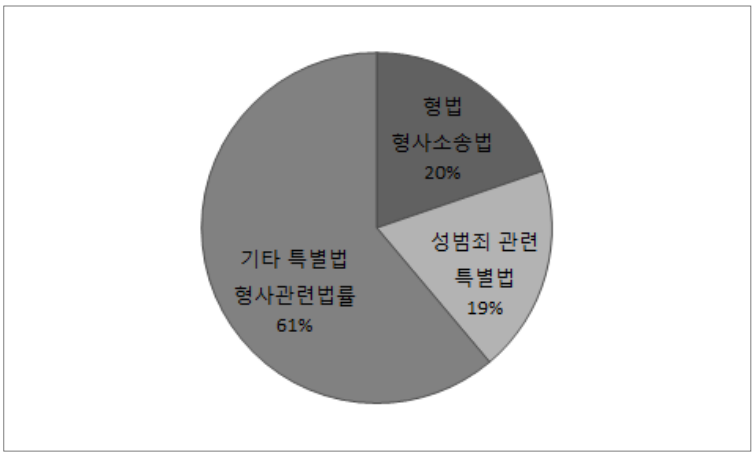
[그림 2-4] 의원입법안 중 형사법 관련 법률안 비율

〈표 2-1〉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분류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형법·형사소송법	성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기타 형사특별법·행정형벌 관련 법률	합계
발의건수(건)	165	160	511	836
비율(%)	19.74	19.14	61.12	100



[그림 2-5]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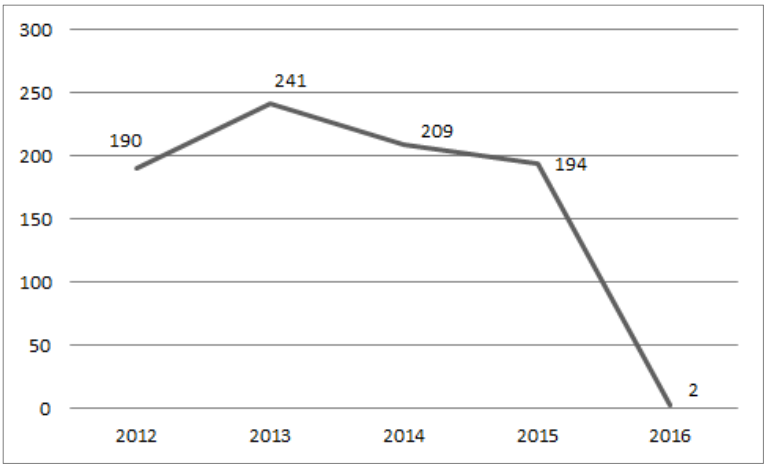
[그림 2-6]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분류

한편, 〈표 2-1〉과 [그림 2-5], [그림 2-6]은 제19대 형사법 관련 의원발의 입법안을 관련 법률명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위 표와 그림들에 의하면,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전체 836건 중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법률안은 165건으로 20%에 해당한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의원입법안은 160건으로 19%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형사특별법, 행정형벌 관련 법률의 법률안은 511건으로 전체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중에 61%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영역은 형사법 관련 법률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행정법규에 규정된 벌칙규정들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형사법 관련 의원발의 입법안은 기본 형사법 내지 주요 형사특별법 보다도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형벌 관련 법률안의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도별·월별 추이

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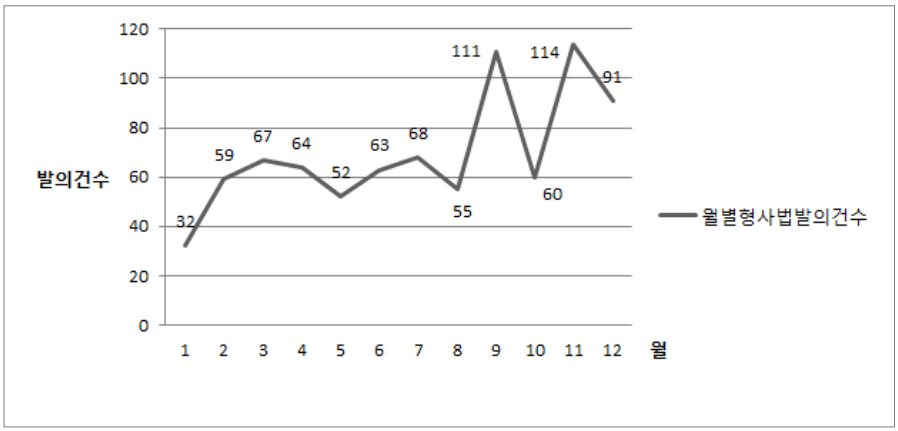


[그림 2-7]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연도별 추이(2012.5.30.-2016.3.31.)

[그림 2-7]은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발의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2년의 경우는 5월 30일 이후 7개월 동안 190건이 발의되었는데, 수치상으로는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325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후 2013년, 2014년, 2015년의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건수는 241건, 209건, 19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발의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6년의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건수는 2건에 불과한데, 이러한 원인은 상대적으로 해당년도 조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시점과 맞물려 의원발의 법률안의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데에서 찾을 수 있다.

나. 월별 추이



[그림 2-8]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월별 추이(2012.5.30.-2016.3.31.)

[그림 2-8]은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발의건수의 월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1월부터 8월까지는 30건에서 60건 안팎으로 법률안이 발의되다가 9월을 기점으로 법률안의 발의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9월과 11월에는 111건, 114건으로 상반기 각 월별 발의건수의 2배 가까운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와 같이 의원입법 법률안의 발의가 월별로 편차가 생기는 것은 국회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의원입법 법률안의 발의가 하반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입법실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일정부분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제2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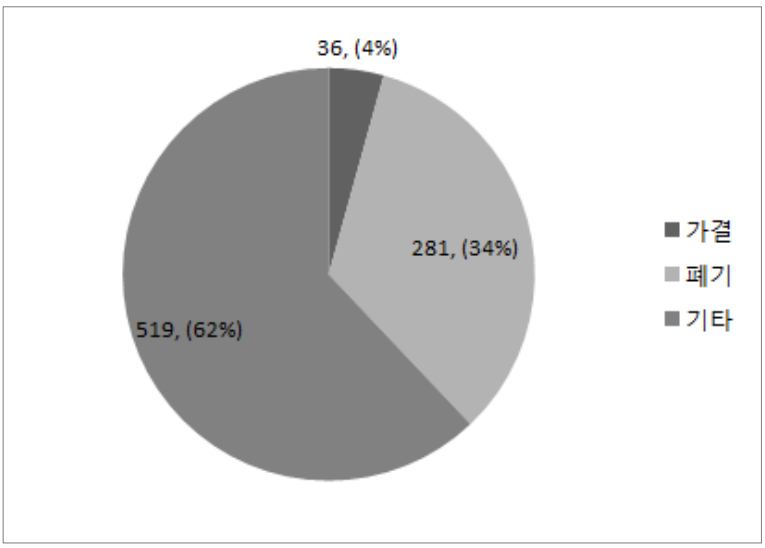
1. 처리현황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처리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처리현황(2012.5.30.-2016.3.31.)

형사입법 처리현황	가결		부결	폐기			기타	
	원안	수정		대안 반영	임기 만료	폐기	철회	미처리 (계류)
처리(수)	17	19	-	267	-	14	10	509
합계 (836건)	36		0	281			519	

[그림 2-9]는 〈표 2-2〉를 바탕으로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처리현황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9]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처리현황(2012.5.30.-2016.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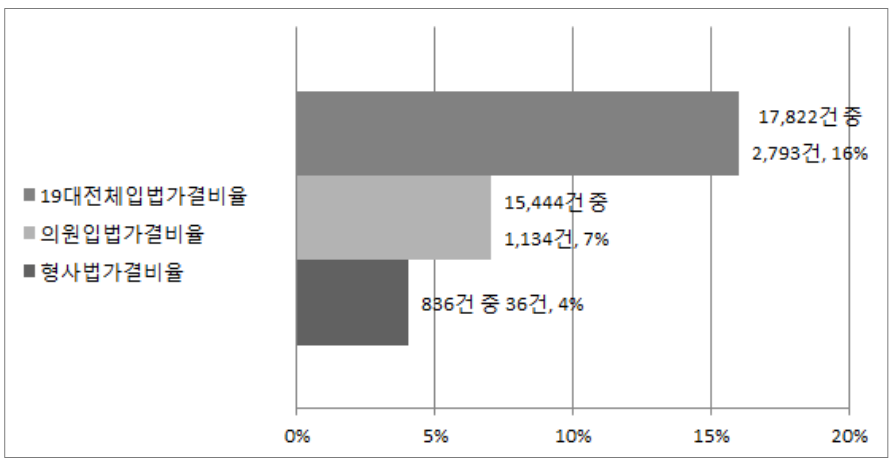
〈표 2-2〉와 [그림 2-9]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 법률안의 처리결과 중 미처리(계류)된 법률안이 총 836건의 법률안 중 50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미처리(계류)된 법률안 중 상당 부분이 조사기간 이후 임기만료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처리(계류)된 법률안 509건과 철회된 법률안 10건을 합한 519건의 기타 영역의 비율이 전체 형사법분야 의원입법 법률안 중 62%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안반영으로 인한 폐기가 267건을 차지한다. 여기에 폐기된 법률안 14건을 합하여 형사법 분야 의원입법 법률안 중 폐기된 법률안은 281건으로서 34%에 해당한다.

나머지 가결된 법률안은 원안가결된 법률안 17건과 수정가결된 19건을 합하여 총 36건으로 형사법분야 의원입법 법률안 중 4%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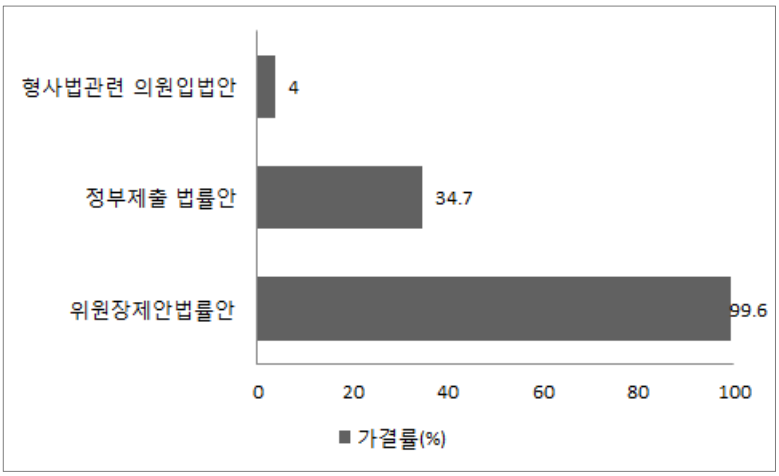
2. 가결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에서 가결된 법률안의 비율은 4%에 불과하다. [그림 2-10]은 제19대 전체 입법안 중 가결된 법률안의 비율과 의원입법안 중 가결된 법률안의 비율,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가결된 법률안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10] 전체입법의 가결률, 의원입법의 가결률, 형사법 가결률 비교

[그림 2-10]에 의하면, 제19대 전체 입법안의 가결률은 17,822건 중에 2,793건으로 16%에 해당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은 15,444건 중 1,134건으로 7%에 해당하며,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가결률은 836건 중 36건으로 4%에 해당한다.



[그림 2-11] 발의주체별 법률안 가결률 비교

한편, [그림 2-11]은 발의주체별 법률안의 가결률을 비교한 것이다. 제19대 전체 입법안 중에서 위원장 제안 법률안의 가결률은 1,285건 중 1,280건으로 99.6%이고,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1,093건 중 379건으로 34.7%에 해당한다.[34]

이처럼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가결률은 전체 입법안의 가결률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의원발의 법률안 가결률 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위원장 제안 법률안의 가결률은 차치하고라도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과 비교하면, 의원발의 법률안과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가결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해 법률안의 질적인 완성도가 높을수록 법률안의 가결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안의 가결률은 법률안의 질적인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원입법안의 경우 15,444건이 발의되어 1,093건 제출된 정부 법률안에 비해 양적으로는 15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원입법안이 양적으로는 많이 발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질이 낮은 법률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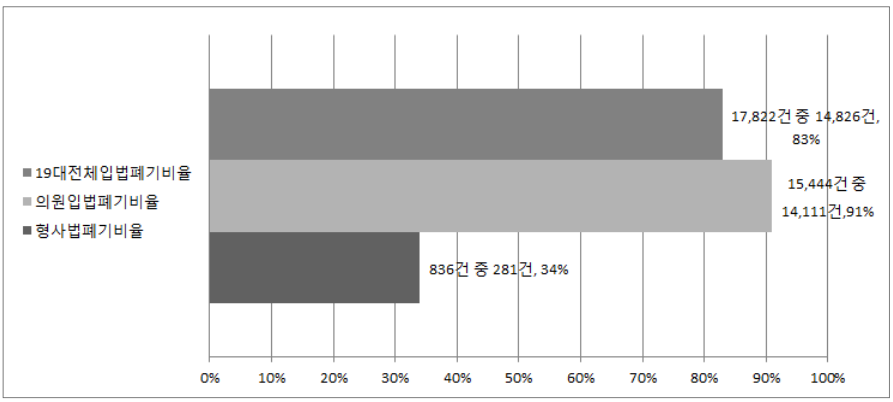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가결률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법제처에서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34) 위원장 제안 법률안 가결률과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FinishBillSearch.do, 2016. 6. 7. 최종검색)

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심사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의원입법안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있지만 정부 제출 법률안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의원입법안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안에 대한 심사 기능 강화, 국회의원의 전문성 함양, 입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폐기율

[그림 2-12]는 제19대 전체 입법안 중 폐기된 법률안의 비율과 의원입법안 중 폐기된 법률안의 비율,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폐기된 법률안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폐기된 법률안은 임기만료 폐기와 대안반영 폐기를 합산하여 폐기율을 집계하였다.



[그림 2-12] 전체입법의 폐기율, 의원입법의 폐기율, 형사법 폐기율 비교

[그림 2-12]에 의하면, 제19대 전체 입법안의 폐기율은 17,822건 중에 14,826건으로 83%에 해당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폐기율은 15,444건 중 14,111건으로 91%에 해당한다.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폐기율은 836건 중 281건으로 34%에 해당한다. 참고로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폐기율이 전체 입법안 폐기율과 의원발의 법률안의 폐기율에 비해 낮은 이유는 조사기간의 시점이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으로 미처리된 다수의 법률안이 임기만료 폐기로 집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은 형식적으로는 폐기되는 법률안이지만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그 내용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본래 입법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달성된 것이므로 내용적으로 가결된 법률안과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35] 이에 국회사무처는 대부분의 입법이 위원회 대안 가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을 법률반영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안 반영 폐기 법률안은 법안명이 같거나, 법안명이 달라도 내용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 별도의 대안 하나를 마련해 각각의 내용을 반영한 뒤 나머지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로 통합된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전과 달리 대안 반영 폐기도 법률반영 항목에 포함되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비슷하게 중복발의하여 대안 반영이 되도록 하거나, 중대 현안에 대한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용만 비슷하게 법안을 여러 개 내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실적을 높이는 것이다.[36] 유사사항에 대한 중복적 발의현상은 당해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자칫 국회의원들의 입법실적 쌓기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

제3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형사제재 경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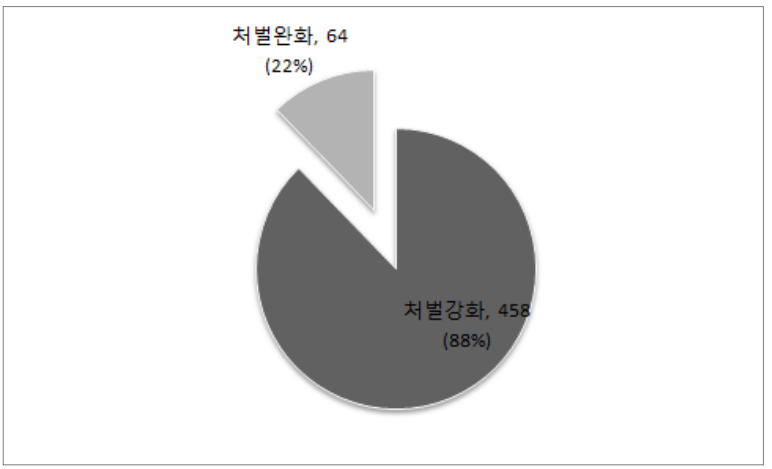
1. 형사제재의 경중 개관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안 중 형사법 관련 법률안을 대상으로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을 처벌의 강화와 처벌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우선 처벌강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① 구금형 상향, ② 벌금형 상향(벌금형 배제 포함), ③ 보안처분 확대(보안처분 대상, 기간 등의 확대), ④ 기타 가벌성 확대로 분류하였다. 처벌완화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 구금형 하향, ② 벌금형 하향(벌금형 추가 포함), ③ 보안처분 축소(보안

35)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의 입법실적이 낮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2015년 6월 24일자 (http://nas.na.go.kr/site?siteId=site-20111206-000001000&pageId=page-20111207-000001102&is_mode=default&is_pageNumber=28, 2016. 6. 7. 최종검색)

36) 조선일보 2016년 6월 1일자 기사(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1/2016053102339.html, 2016. 6. 7. 최종검색)

처분 대상, 기간 등의 축소), ④ 기타 가벌성 축소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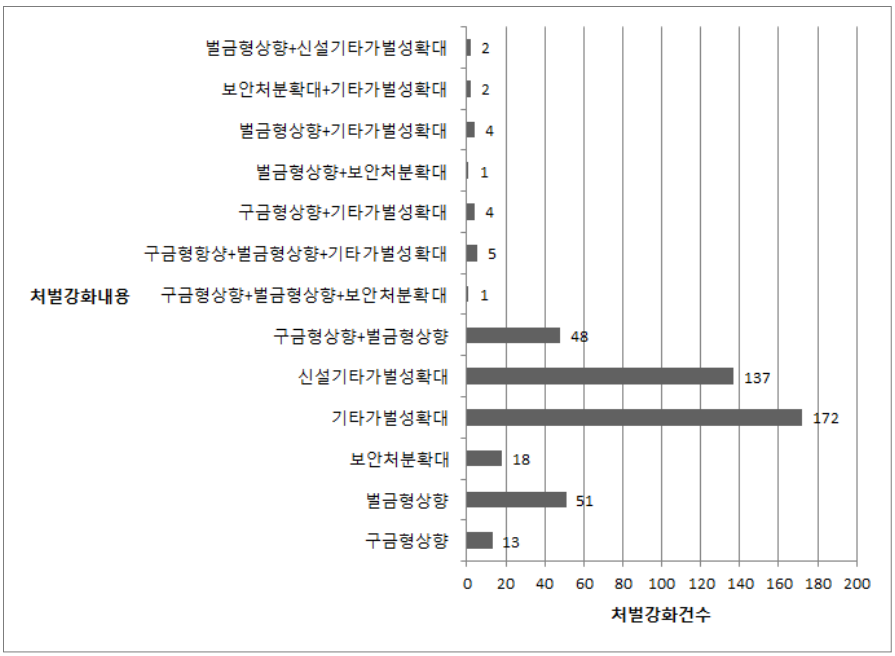


[그림 2-13] 처벌규정 중에서 처벌강화 및 처벌완화의 비중

[그림 2-13]은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처벌규정 중에서 처벌강화 및 처벌완화의 비중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처벌강화를 위하여 발의된 법률안은 458건으로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 중에서 88%를 차지한다. 반면 처벌완화를 위하여 발의된 법률안은 64건으로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 중에서 12% 비중을 차지한다.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836건 중에서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이 458건에 이르는데, 처벌관련 법률안의 상당부분이 처벌강화를 위한 법률안으로 확인되었다.

2. 처벌의 강화



[그림 2-14] 의원입법안의 처벌강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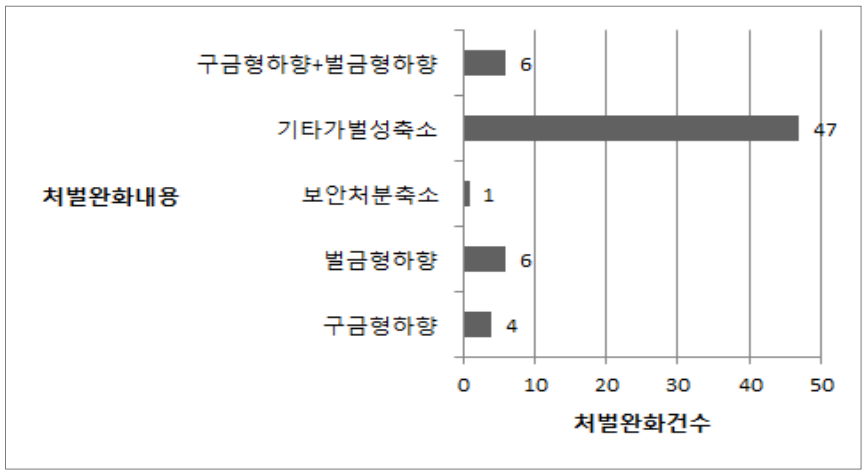
[그림 2-14]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분류한 것이다.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이 다수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적 형태의 처벌강화 방식을 취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처벌강화의 방식 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구금형을 상향한 경우는 13건이고, 구금형 상향과 벌금형 상향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는 48건, 구금형 상향과 기타 가벌성확대의 경우가 4건, 구금형 상향과 벌금형 상향 그리고 기타 가벌성확대의 경우가 5건에 해당한다.

벌금형 상향의 경우도 단순히 벌금형을 상향한 경우는 51건이고, 구금형 상향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방식으로 벌금형 상향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특히 벌금형 상향의 경우에는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는 형태의 법률안이 형사제재 관련 법률안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타 가벌성 확대'로 확인되는데, 여기에는 구성요건 등 처벌요건의 강화, 공무원 의제조항의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타 가벌성 확대 중에서는 행정형벌 관련 법률안에서 새로운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형태의 처벌강화 방식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3. 처벌의 완화



[그림 2-15] 의원입법안의 처벌완화 내용

[그림 2-15]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완화를 위한 법률안을 분류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 중에서 처벌강화를 위하여 발의된 법률안은 458건인 반면, 처벌완화를 위하여 발의된 법률안은 64건을 차지한다. 이처럼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의 상당부분이 처벌강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분야에 있어서의 처벌강화 강조경향 내지 엄벌주의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5]에서 처벌완화의 방식 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가벌성 축소'의 형태의 법률안이 47건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처벌완화 내지 비범죄화된 경우, 구성요건의 명확화로 범죄요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금형 하향과 벌금형 하향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는 행정형벌 관련 법률안에서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벌칙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구금형 하향의 경우 대부분이 행정법규 처벌규정에 해당한다.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하는데,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구금형 하향 법률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벌금형 하향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제4절 소 결

제19대 국회의 의원입법안의 현황을 보면, 전체 입법안 중 87%에 해당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경우도 조사기간까지 발의된 법률안의 수가 836건에 이른다. 이처럼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안 내지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에 있어서 양적인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가결된 법률안의 비율이 전체 법률안의 가결률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원입법안 내지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이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비하여 법률안의 질적 완성도나 성과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처벌규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 처벌강화를 위하여 발의된 법률안이 처벌규정 관련 법률안 중에서 88%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형사입법에 있어서 엄벌주의 경향은 법정형 상향, 새로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과 미국의 의회입법 지원제도

임 정 호

제3장

한국과 미국의 의회입법 지원제도

제3장에서는 의원입법의 전문화와 합리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의회입법 지원제도 사례를 살펴본다. 이어서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제19대 국회가 처리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각종 법률의 형사제재 규정 의원입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1절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의회내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자주 변경된다는 내재적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 의회 구성원인 의원의 전문성 함양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37] 따라서 의원의 입법에 있어서 전문성과 독립성 있는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장 직속 독립기관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07년 출범하였다.[38] "조사회답, 이슈와 논점, 현안보고서, 정책보고서, 현장보고서, 조사와 정보"[39] 등 연구 및 조사 결과물을 생산하여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37) 함성득/임동욱, "미국의 입법지원 전문화 경험과 현안-미의회조사국(CRS)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년, 60면.

38)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따름 (http://www.nars.go.kr/contentView.do?cmsCd=CM0062 2016. 6. 8. 최종검색)

39) 이승현,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와 정보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년 1월, 180면.

2. 임무와 역할

가. 임무

국회법 제22조의3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가 되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는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제1호),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제2호) 그리고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수집·관리 및 보급(제3호),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제4호) 및 외국 입법동향분석 및 정보제공(제5호)을 그 임무로 한다.

동법규정과 같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및 회답에 있어서 분야와 관련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 다른 입법지원기관들과의 구별지점이라고 한다.[40]

나. 입법과정에서의 역할: 법률안 제출전 단계

기본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지원 서비스는 법률안 제출전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입법지원 서비스를 행함에 있어서, 법률안 제출전 단계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업무를 행하고, 의원 비서진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안 내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법률안 제출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41]

3. 서비스 유형 및 내용

가. 수동적 서비스로서 입법조사회답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제1호)에 상응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전제된다는 면으로 인하여 수동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다.

---

40) 정극원,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방안", 공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년 2월, 117면.
41) 정극원,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방안", 120면.

이러한 입법조사회답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적시성,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및 기밀성"[42]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의 특성상, 질의와 회답에 있어서 질의자의 의도·주제·내용 등을 비밀에 붙여야 하며, 이는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 다른 입법지원기관들과 대표적으로 대조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43]

그러나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와 관련, 201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특히 적시성에 대하여 낮은 평가가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44] 또한 2013년의 경우 응답자 중 총 24.8%의 보좌진이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자체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45] 그 이유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나. 적극적 서비스로서 보고서 배포·제공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 유형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우선 '이슈와 논점'은 최신의 현안 주제 관련 입법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46], 의원은 물론 -이메일 서비스[47]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현안보고서는 입법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등을"[48]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안보고서의 경우 정책현안 분석 및 장단기적 전망과 정책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의 포괄적인 연구조사결과를 제공하는 정책보고서, 현장을 반영하기 위한 현장조사보고서, 사실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의원은 물론이고 국회 직원들에게도 제공되어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사와 정보', 그 외 예상되는 현안을 연초에 제공하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제', 국정 주요 분야별 지표를 제공하는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이 보고서 형태의 서비스에 해당한다.[49]

---

42) 이승현,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 199면.
43) 정극원,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방안", 117~118면.
44) 홍종호/윤춘식/이호연/고은영, "201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3년 12월, 50면.
45) 홍종호/윤춘식/이호연/고은영, "201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53면.
46)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최신발간물 항목을 따름 (http://www.nars.go.kr/brdLatest.do?cmsCd=CM0042 2016. 6. 8. 최종검색)
47)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필자의 경우도 지난 수년간 무료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을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고 있다.
48) 이승현,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 200면.
49) 이승현,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 201면.

이상의 보고서를 의회 구성원 또는 일반국민에게 배포·제공하는 것은, 전술한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의 수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현안과제 혹은 중장기적 과제를 입법조사처가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연구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슈와 논점' 등 일부 보고서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국민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도 제공되는 등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 임무수행

논문 등을 싣고 있는 학술연구지로 '입법과 정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계의 다양한 담론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는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50] 그 외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제4호에 근거하여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원을 행하고 있다.[51]

이 역시 전술한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의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처장의 위법 및 개선사항 보고의무를 통한 적극적 임무수행

국회입법조사처법 제8조 제2항은 처장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 필요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후술할 미국연방의회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이를 아예 규정하지 않은 점을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처장의 의무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보다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52]

---

50) 이승현,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 202면.
51) 이승현,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 203면.
52) 김형성, "입법지원기구의 비교법적 검토-국회입법조사처와 CRS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09년 2월, 60면.

5. 소 결

후술할 미국 연방의회조사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입법과정 등에서의 구체적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53] 즉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위원이나 위원회 요청 사항에 따른 조사·분석 및 회답(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제1호) 등을 행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 입법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54]

따라서 후술할 미국 연방의회조사국이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55]과 비교된다. 즉 입법평가의 수행 역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연구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56]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지원 서비스가 법률안 제출전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 이하에서 살펴볼 미국연방의회 의회조사국의 경우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아 의원입법지원에 있어서의 강점을 조감하여 보도록 한다.

제2절 미국연방의회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1. 서 론

가. 의회조사국의 성립과정: 수동적 역할에서 적극적·선도적 역할 수행 기구로

의회조사국은 입법참고국과 입법참고처를 거쳐 오늘의 지위에 안착하게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연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1914년 입법참고국(Legislative Reference Bureau)이 출범하였는데, 이는

53) 김형성, "입법지원기구의 비교법적 검토-국회입법조사처와 CRS를 중심으로-", 59면.
54) 김형성, "입법지원기구의 비교법적 검토-국회입법조사처와 CRS를 중심으로-", 59면.
55)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조사와 정보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년 1월, 114면; 안국찬,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정책평가 기능의 활성화 방안",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6년 6월, 120면; 김형성, "입법지원기구의 비교법적 검토-국회입법조사처와 CRS를 중심으로-", 59면.
56) 김형성, "입법지원기구의 비교법적 검토-국회입법조사처와 CRS를 중심으로-", 54면.

의회 요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외부 연구결과의 단순한 전달[57]이라는 점에서 선제적이거나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에 따라 결국 의회도서관 내 별도부서로 독립성을 갖춘 입법참고처(Legislative Reference Service)로 1946년 재편되었다.[58] 그 후로도 연구 및 조사 역량 강화 등 조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0년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고 연구와 행정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59]

의회조사국으로의 개편은, 의회의 입법절차에 있어서의 직접적 지원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수행을 위한 자원 등 역량강화[60]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후술할 바와 같이, 수동적 역할에서 시작하여 독립성을 전제로 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유의점: 서비스 대상의 한정과 기밀성으로 인한 문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간략한 비교가 되도록 미국 연방의회조사국에 대한 개괄적·총괄적인 검토를 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조사국이 후술할 바와 같이 그 서비스 대상을 오로지 연방 양원의회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61] 이에 따라 의회내 의원[62]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회 지도부, 의회조사국 외 입법지원조직 등 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의회조사국의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만,[63] 그 외 일반국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에

57) 함성득/임동욱, "미국의 입법지원 전문화 경험과 현안-미의회조사국(CRS)을 중심으로-", 65면;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2009년 1월, 10면.
58)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11면.
59) 함성득/임동욱, "미국의 입법지원 전문화 경험과 현안-미의회조사국(CRS)을 중심으로-", 66면;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12면.
60)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4. 12. 1면. (https://fas.org/sgp/crs/misc/RL33471.pdf 2016. 4. 11. 최종검색)
61)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2면.
62)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5면.
63)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53면.

있어서 핵심적 가치로 '기밀성', 즉 내부 기밀 유지를 중시한다는 점이다.[64] 그렇기 때문에 후술할 바와 같이 CRS 홈페이지 등 근원적인 1차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미국 의회도서관을 통해 공개되는 의회조사국의 지난 1년간의 통계자료, 열람이 가능한 일부 CRS Report, 2차 문헌, 그리고 국내에서 생성된 2차 문헌을 중심으로 개괄적이고 제한적인 조망만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수행이 되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2. 적극적 업무수행의 전제: 조직 및 예산

의회조사국의 수장인 국장을 의회도서관장이 양원합동도서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도록 한다.[65] 2015년 현재 총 6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66] 여기에는 변호사와 경제학자, 과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67]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부서로는 5개 부서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삼권분립 등 헌법적 문제는 물론 연방법과 주법, 그리고 국제법 문제를 총괄하는 미국법부(American Law Division)[68], 교육·노동·이민·복지 등을 다루는 국내사회정책부(Domestic Social Policy Division), 정치·경제·안보 및 번역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외교·국방 및 통상부(Foreign Affairs, Defense and Trade), 정부 및 재정부(Government and Finance Division), 자원·환경·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자원·과학 및 산업부(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Division)가 포함된다.[69] 그 외

64) 미연방의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따름. (https://www.loc.gov/crsinfo/about/values.html 2016. 4. 8. 최종검색)
65) 미연방법전 Title 2-The Congress Chapter 5-LIBRARY OF CONGRESS (§§131-185) Section 166-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 (1) 참조. (http://law.justia.com/codes/us/2013/title-2/chapter-5/section-166/ 2016. 4. 8. 최종검색)
66) 미연방의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따름. (https://www.loc.gov/crsinfo/about/structure.html 2016. 4. 8. 최종검색)
67)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2면.
68) 미국법부를 법률전문가 집단으로 평가하는 견해로는 김대현, "미국의회조사처(CRS)의 조직과 운영-국회입법조사처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보 창간호, 대한민국국회, 2008년, 54면.
69) 미연방의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따름. (https://www.loc.gov/crsinfo/research/div-rsi.html 2016. 4. 8. 최종검색)

지식 서비스 그룹(Knowledge Service Group)의 경우 의회조사국내 입법지원 전문가 및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정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70]

행정부보다 높은 급여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며, 구성원들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인 것으로 보인다.[71] 입법지원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전문성 및 비당파성 확보를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예산 및 입법과정 등을 포함하는 의회 현안 주제를 활용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72]

한편 의회조사국의 예산은 2010년의 경우 1억 1,25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73] 예산 충원을 위하여 민간재단의 기금을 유치하기도 한다는 점[74]이 특이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재정에 있어서의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탈피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비당파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재정에 있어서도 수동적 역할에 그치지 아니하고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3. 임무와 역할

가. 임무

미연방의회를 보좌하는 것을 그 임무로 의회조사국법이 명문화하고 있다.[75] 즉 정책의 개발보다는 대안에 대한 분석과 정보제공이 본연의 임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의회조사국은 의회에 대하여 입법 또는 기타 정책적 조언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양원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최적의 정보와 자료분석을 얻도록 보장하는 것[76]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다.

---

70) 미연방의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따름. (https://www.loc.gov/crsinfo/research/div-ksg.html 2016. 4. 8. 최종검색)
71)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44면.
72)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49면.
73)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2면.
74)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51면.
75) 미연방법전 Title 2-The Congress Chapter 5-LIBRARY OF CONGRESS (§§131-185) Section 166-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참조. (http://law.justia.com/codes/us/2013/title-2/chapter-5/section-166/ 2016. 4. 8. 최종검색)
76)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따라서 첫째, 위원회가 요청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법안의 분석·평가[77] 및 기타 위원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둘째, 회기 시작시 먼저 "한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목록"[78]과 그 외 위원회 처리 안건과 심층 분석이 필요한 주제의 목록을 제공하고, 셋째, 입법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79] 이 때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동적으로 입법 관련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의회조사국 스스로 적극적·자발적으로 입법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80] 넷째, 법안과 결의안의 요약문 작성 역시 그 임무에 속한다.[81] 다섯째, 의원 또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 입법기능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연구·참고자료를 제공하며, 입법청문회[82] 개최 예정인 법안에 관한 간략한 메모를 제공한다.[83] 여섯째, 직원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정보 및 연구역량의 개발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84] 이상과 같이 의회조사국은 의원 개인이나 위원회의 요청 여부에 따라 수동적·소극적 임무수행 및 자발적·적극적 임무수행을 병행한다.

나. 입법 과정에서의 역할

법안의 발의 이전에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단계부터 대통령에게 이송되기 직전의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입법 전과정에 걸쳐[85] 그 역할이 존재한다고 평가된다. 이를 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Process", 2면.

77) 김형성, "입법지원기구의 비교법적 검토-국회입법조사처와 CRS를 중심으로-", 54면; 안국찬,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정책평가 기능의 활성화 방안", 120면.

78)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4면.

79)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16면.

80)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4면.

81)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17면.

82) Hearing을 청문회 혹은 공청회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Hearing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입법청문회로 번역함을 밝힌다. 즉 입법기관이 입법활동의 일부로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는 것으로, 공청회의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田中英夫, 英美法辞典, 東京大學出版会, 2000年, 404. 또한 이와 같이 입법청문회라는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 기사로는 김청환 기자, "미, 청문회 연중수시로 개최...국정 마비된 적 없어", 한국일보 2016. 5. 24. (http://www.hankookilbo.com/v/e933428dda1042eb9f28d788e67e24f1 2016. 5. 24. 최종검색)

83)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4면.

84)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5면.

85)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6면.

(1) 법안 발의 과정

의원들은 상황 인식을 더 잘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조치가 요구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의회조사국에 입법과 관련된 배경정보와 자료분석 및 사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86]. 즉 특정한 사안에 관한 배경지식을 분석하여 제공하며 관심 사안의 전문가를 소개하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발의 후 예상되는 이익과 불이익은 물론 비판을 예측하여 제시하며, 양원의 법제실(Office of the Legislative Counsel)의 법제 업무를 지원한다.[87]

이러한 단계에서의 지원업무에는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요약과 설명이나 또는 신문·잡지 등에서의 하나의 사안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의 논의 혹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어 온 다양한 설명의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다.[88] 이를 통해 법안 발의 이전 단계에서 심도있는 사전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의원이 특정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면, 의회조사국 전문가는 당해 법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은 물론이고, 대안이나 대안의 장단점 그리고 법안에 대한 예상 가능한 비판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89] 더 나아가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당해 법안과 비교 가능한 -다른 의원이 제출하거나 행정부 또는 일반시민이 작성한- 다른 법안들을 평가하고 비교할 것을 의회조사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90]

(2) 위원회 심사과정

사실 절대 다수의 법안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폐기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하나의 법안 또는 관련된 복수의 법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결정하게

---

86)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7면.
87)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18면.
88)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7면.
89)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7면.
90)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7면.

되면 행정부와 의회 의원들 및 시민 단체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91] 이때 의회조사국은 입법청문회 관련 배경지식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하고 사전 브리핑을 행하며, 입법청문회 증인을 물색하거나 증인에게 질문할 내용을 직접 제시하기도 하고, 또한 위원회에서의 법안에 대한 표결시, 요청에 따라서는 직접 참가하여 비당파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도 한다.[92] 그리고 법률안 통과시 예상되는 법적효과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 여부 결정에 참여하여[93]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3) 본회의 심의과정

의사절차를 설명하고 의사절차의 활용방법을 자문해주기도 한다.[94]

(4) 양원협의위원회 심의과정

양원협의위원회 심의과정은 입법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이송되기 전 의회가 밟을 수 있는 최종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95] 양원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이슈의 확인을 위한 조력을 제공하고, 양원의 입장 차이를 대조하고, 나아가 대안을 확인하여 주기도 한다.[96]

4. 업무수행 원칙

조직의 핵심적 가치로 '객관성'이 표방되어 왔으며 이는 후술할 '비당파성'과 함께 편견의 배제를 핵심적 요소로 하며, 다층적 검토를 통한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97]

---

91)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7면.
92)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19면.
93)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20면.
94)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20면.
95)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8면.
96)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21면.
97) 미연방의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따름. (https://www.loc.gov/crsinfo/about/values.html 2016. 4. 8. 최종검색)

또한 '권위'[98] 내지 '전문성'의 경우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99]에 특색이 있다. 즉 기존의 문헌을 활용하고 인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특정 사안에 관한 배경지식 등을 가급적 날 것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의회조사국의 입법지원에 있어서 효율성 또한 중시되고 있는데,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이미 알려진 내외부 결과물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100] 이 점에 있어서 가공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활용이 중시되는 전문성과 부분적으로는 충돌이 가능하다. 2015년 기준으로 신간 CRS Report 및 기타 보고서 배포를 총 1,264건 행하였는데 반하여, CRS Report 등 출간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는 총 2,481건이 행해졌다.[101] 비록 최신성 확보를 위한 업데이트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이에 따른 실적 역시 상당하지만, 수정·보완이 미처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존 문헌의 활용은 전문성은 물론 신빙성과 신뢰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회조사국의 핵심적 가치로 '기밀성', 즉 내부 기밀 유지가 중시된다.[102] 일례로 현재 의회조사국의 주요 자료 중 온라인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극히 적은 편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의회조사국의 자료는 일반 국민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03] 그나마 CRS Report 정도가 비교적 용이하게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 역시 상당히 제한된 경로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미연방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의회조사국의 웹사이트(www.crs.gov)와 의회조사국내 입법정보서비스(CRS's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LIS)의 웹사이트(www.congress.gov)에 당연히 접속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의 접속은 불가능하다. 현재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의회조사국 관련 도메인은 예를

98) 미연방의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따름. (https://www.loc.gov/crsinfo/about/values.html 2016. 4. 8. 최종검색)
99)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22면.
100) 이종선, "의회도서관의 입법지원기능: 한국과 미국, 그 유사점과 차이점", 국회도서관보 Vol. 321, 2006년 1월/2월, 47면.
10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January 2016, 2면. (https://www.loc.gov/crsinfo/about/crs15_annrpt.pdf 2016. 4. 22. 최종검색)
102) 미연방의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따름. (https://www.loc.gov/crsinfo/about/values.html 2016. 4. 8. 최종검색)
103) Stephen Young, "Guide to CRS Reports on the Web", 2006. 9. 17. Law and Technology Resources for Legal Professionals 홈페이지를 따름. (http://www.llrx.com/features/crsreports.htm 2016. 4. 8. 최종검색)

들어 미국연방의회도서관의 웹사이트(www.loc.gov/crsinfo) 및 토마스(THOMAS) 웹사이트(thomas.loc.gov)의 법안 검색 정도라고 요약 가능하다.

다음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는 '적시성'[104]을 의회조사국의 중요 가치로 내세운다. 입법에 있어서 배경이 될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면 너무도 당연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비당파성'[105]의 확보는 의회조사국 본연의 임무인 입법자료 제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당파성의 확보 없이는 객관성 확보 역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당파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입법지원업무가 수행된다면, 이는 특정 정당 내 인력의 지원업무와 아무런 차별성이 확보되지 아니할 것임은 명백하다.

5. 의회조사국의 의회 제공 서비스

가. 서비스 대상

의회조사국 서비스의 대상은 오로지 연방 양원의회이다.[106] 결국 정파에 관계없이 의회내 모든 의원[107]은 물론이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회 지도부, 의회조사국 외 입법지원조직 등 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비스의 대상에 해당한다.[108]

나. 서비스 유형 및 내용

(1) 소극적 서비스로서 요청에 의한 회답 (Custom Products and Services)

이는 전반적으로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기밀성이 크게 요구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즉 각 개별 의회내 의원이나 위원회의 조사 분석 "요청에 따라 작성되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109] 내지는 조사회답 서비스로 불리며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104)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22면.
105) 미연방의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따름. (https://www.loc.gov/crsinfo/about/values.html 2016. 4. 8. 최종검색)
106)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2면.
107)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5면.
108)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53면.

주문 생산형 서비스[110]로 칭하기도 한다. 요청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기[111] 때문에 기밀성이 핵심적 요소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밀 메모, 대면 보고와 전화 응답, 그리고 그 밖의 요청에 의한 보고서 등 구체적인 서비스들이 해당된다.

먼저 기밀 메모(Confidential Memorandum)는 당연히 요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112] 특히 기밀 메모 중에서도 특히 입법 및 정책 관련 질의로 의뢰자의 관점을 전제로 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Directed Writing)이 가능하다.[113] 일반 로펌이 개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와 유사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의회 구성원에게 제공된 전체 기밀 메모 건수는 3,166건이다.[114] 단 이 경우 의회조사국의 "공식 보고서로 인용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115] 제공된다. 기밀성을 전제로 한 서비스이므로 이는 당연한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후술할 보고서의 배포·제공 서비스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대면 보고와 전화 응답이 있는데, 전체 대면 보고·자문·증언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15년 기준 5,296건이다.[116] 또한 전화 응답의 경우도 2015년 기준 25,437건이 제공되어 의회에 제공된 서비스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117] 대면보고의 경우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118]

마지막으로 그 밖의 요청에 의한 보고서의 경우, 관련 배경지식이나 국제회의의 의제나 회의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론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해외 출장시 개괄적 수준의 안내서도 제공된다.[119] 한편 의회조사국은 기타 배경지식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2015년 기준 총 2,892건 행하였다고 밝혔다.[120]

---

109)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54면.
110)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5면.
111)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6면.
112)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6면.
113)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54면.
11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면.
115)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54면.
11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면.
11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면.
118) 이종선, "의회도서관의 입법지원기능: 한국과 미국, 그 유사점과 차이점", 48면.
119)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56면.
1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면.

(2) 적극적 서비스로서 보고서 배포·제공

보고서 배포·제공 서비스는 전술한 요청에 의한 서비스와 달리 '요청을 예상한 자발적인' 서비스[121]로 볼 수 있다. 의회조사국이 배포·제공하는 보고서로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가 바로 CRS Report라고 할 수 있다. CRS Report의 경우 의회조사국의 다른 대부분의 서비스와 달리 일부 보고서의 경우, 일반 국민도 제한적으로는 열람이 가능하다.[122] 그러나 이와 같이 열람이 가능하게 하려면, 의회조사국의 각 부서 차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123]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CRS Report의 일반 국민에 대한 배포에 있어서는 재량[124]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보고서 형식 중에는 CRS Report 외에도 의회배포메모(Congressional Distribution Memoranda)가 존재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수 의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거나 일시적 이슈를 다룬다.[125] 다만 이러한 의회배포메모의 주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시에는 CRS Report 형태로 전환되기도 한다.[126]

전반적으로, 이러한 보고서의 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질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 가능한 현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준비[127]가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작성 형태의 입법지원에 있어서는, 특히 사전적이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주문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고서의 질적 수준의 제고 및 유지를 위하여,

---

121) 김대현, "미국의회조사처(CRS)의 조직과 운영-국회입법조사처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57면.

122) 단적인 예로 의회조사국 자체에 대한 CRS Report를 온라인으로 검색하여 찾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다.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4. 12. (https://fas.org/sgp/crs/misc/RL33471.pdf 2016. 4. 11. 최종검색) 또한 일례로 우편사기죄(Mail Fraud)에 대한 의회조사국의 CRS Report를 온라인으로 검색하여 찾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다. Charles Doyle, "Mail and Wire Fraud: A Brief Overview of Federal Criminal Law",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7. 21. (https://www.fas.org/sgp/crs/misc/R41930.pdf 2016. 4. 5. 최종검색)

123)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61면.

124)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2면.

125)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6면;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57면.

126)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6면.

127)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58면.

특히 CRS Report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인 업데이트[128]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적극적 서비스로서 전자적 정보 제공 (온라인 서비스)

CRS 웹사이트의 경우 2015년 기준 총 2,274,272건 열람되어 전체 CRS 이용 중 9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129] 다만 웹사이트 기반이기는 하여도 의회 종사자를 상대로만 하므로[130] 기밀성이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의회 구성원에 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 2015년 기준 전화 응답과 필적할 만큼인 25,255건의 서비스 제공이 행해졌다.[131]

또한 법령정보시스템(Legislative Information System)은 광범위하게 최신의 입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 구축은 상하원 사무처와 의회조사국 등 입법지원조직 간 협력적 프로젝트로서 의회조사국이 동 시스템의 전반적 조정을 책임지고 있고, 상하원 및 입법지원조직에서만 동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132]

그리고 의회도서관 차원에서 GLIN(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이 제공하는 각국 법령의 데이터베이스로 우리나라 국회도서관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133]

다. 지속적인 적극적 서비스 제공: 최신성 확보를 위한 업데이트

의회조사국은 2015년 기준으로 기밀 메모 총 3,166건, 대면 보고·자문·증언 총 5,296건, 전화 응답 총 25,437건, 이메일 응답 총 25,255건, 기타 배경사실 등 총 2,892건을 제공하여, 총 62,046건의 요청에 의한 회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134]

---

128) 일례로 의회조사국은 2015년 신간 CRS Report 및 기타 보고서 배포를 총 1,264건, CRS Report 등의 기출간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총 2,481건 행하였다고 밝혔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면.
12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3면.
130)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7면.
13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면.
132)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65면.
133) 최영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년 6월, 61면.

또한 의회조사국은 2015년 기준으로 신간 CRS Report 및 기타 보고서 배포를 총 1,264건, CRS Report 등의 기출간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총 2,481건, 그리고 입법정보시스템 내 법안요약 등을 총 8,210건 제공하여, 총 11,955건의 보고서 배포 서비스를 행하였다고 밝혔다.[135]

특이한 점으로, 이미 발간하거나 배포한 보고서의 경우에도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136]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례로 전술한 바와 같이 2015년 기준으로 기출간 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 등 업데이트 형태의 서비스 제공 건수가 신간 보고서 배포 건수의 2배에 가깝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후 업데이트 작업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미 발간 및 배포된 하나의 보고서를 가지고도 입법지원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적시성은 물론이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 작성시 당해 연구원의 연락처도 보고서에 기재하여 보고서를 일독한 의원들이 필요한 질문을 직접 제기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의원입법에 있어서

---

13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면.

13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면.

136) 본 연구에 있어서 실제 CRS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이러한 경우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CRS 홈페이지는 미연방의회 의원 등 의회구성원만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온라인상에서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CRS Report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추정'을 해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규모의 테러리즘 관련 John Rollins/Liana Sun Wyler, "Terrorism and Transnational Crime: Foreign Policy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6. 11. p27 (http://www.fas.org/sgp/crs/terror/R41004.pdf 2016. 4. 22. 최종검색); John Rollins/Liana Sun Wyler/Seth Rose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ransnational Crime: Security Threats, U.S. Policy, and Consideration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1. 5. p50 (http://www.fas.org/sgp/crs/terror/R41004-2010.pdf 2016. 4. 22. 최종검색) 등의 경우. 이와 같이 국제적인 규모의 테러리즘 관련 John Rollins/Liana Sun Wyler, "Terrorism and Transnational Crime: Foreign Policy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6. 11. p1~39 (http://www.fas.org/sgp/crs/terror/R41004.pdf 2016. 4. 22. 최종검색)을 보면, John Rollins/Liana Sun Wyler/Seth Rose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ransnational Crime: Security Threats, U.S. Policy, and Consideration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1. 5. p.1~52 (http://www.fas.org/sgp/crs/terror/R41004-2010.pdf 2016. 4. 22. 최종검색)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문헌은 2010년 보고서의 저자 3명 중 2명이 2013년 보고서의 저자 2명과 일치하며, 같은 일련번호(R41004)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있어서 CRS의 홈페이지 등을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점으로 인하여 실제 CRS 홈페이지가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소개하고 배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밝힌다.

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보인다.[137]

라.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주도적 임무수행

세미나, 워크숍, 그 외 교육과정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하원행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초선 의원 및 보좌진 대상으로 입법적 이슈와 절차를, 인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도 의회조사국의 서비스와 보고서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행한다.[138] 예를 들어 2015년의 경우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서 하원과 함께 초선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입법에 있어서의 이슈들과 절차에 관한 세미나를 지원했으며, 여기에서는 국내 및 국제 정책 관련 의회내 현안 이슈들을 다루었다.[139] 그리고 교육강좌 프로그램으로 입법과정 강좌, 예산과정 강좌, 법률 강좌, 입법연혁과 법령조사 과정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140] 특히 입법과정 강좌는 상하원내 입법과정과 보좌진의 역할, 입법 관련 정보의 활용방법 등을 수준별로 강의하는데,[141] 이를 통하여 의회조사국은 입법에 있어서 의회조사국 본연의 업무인 '지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 내지는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6. 2015년 의회조사국의 연방형사입법 지원

기밀성으로 인하여 연방의회조사국의 통계를 영역별로 세세히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연방형사입법지원을 구체적으로 한 해 동안 몇 건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2015년 기준으로 의회조사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방형사입법을 지원

137) 임종훈·원시연·박정용, "일본·미국·캐나다 출장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09. 12. 13. 30면.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9139&cmsCd=CM0012 2016. 6. 7. 최종검색)
138)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74면;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7면.
13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6면.
140)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9면.
141) 함성득·임동욱, "미국의 입법지원 전문화 경험과 현안-미의회조사국(CRS)을 중심으로-", 72면.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납치피해자보호법(the 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 of 2015)[142] 제정안 검토를 수행했으며, 전자통신 사생활 보호법(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143]과 증오범죄(hate crimes) 정의 규정, 연방형사법에 있어서의 인권 관련 규정의 개정 관련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144]

또한 소년범보호법(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145]상 연방정부에 의한 권고사항의 각 개별 주에 의한 계속적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 재부여(reauthorization)[146][147] 이슈에 대하여도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148] 그 외에도 수정헌법 제2조 관련 시민의 총기소지 자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밝혔다.[149]

7. 소 결

의회조사국은 법안의 발의와 심사 및 표결에 이르기까지 입법 관련 전단계에 있어서 의원 개인과 의회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150] 특히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적시성

142) 미연방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법은 2015. 5. 29. 공포·시행되고 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78/text/pl 2016. 4. 22. 최종검색)
143) 미연방법전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CRIMES(§§1-2725) Chapter 119-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2510-2522) (http://law.justia.com/codes/us/2013/title-18/part-i/chapter-119/ 2016. 4. 22. 최종검색)
14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3면.
145) 미연방법전 Title 42-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Chapter 72-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5601-5792a) Subchapter I-GENERALLY (§§5601-5603) (http://law.justia.com/codes/us/2013/title-42/chapter-72/subchapter-i/ 2016. 4. 22. 최종검색)
146) 소년범의 보호를 위하여 예를 들어 소년범의 성인수형자로부터의 격리 등 권고된 관련 조치를 개별 주가 이행할 경우 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연방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169 2016. 4. 22. 최종검색)
147)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하여 주로 언급되는 전형적인 예로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Act (ESEA) of 1965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은 미연방법전 Title 20-Education Chapter 70-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6301-8962) (http://law.justia.com/codes/us/2013/title-20/chapter-70/ 2016. 4. 28. 최종검색)
14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3면.
14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3면.
150)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118면.

의 유지를 위하여 CRS Report로 대표되는 보고서 등 발간물의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등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단행본 형식이 아닌, 과거에 이미 발행된 보고서 형식의 문헌에 대하여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 내지 업데이트 작업이 꾸준히 행해진다면, 의회 내 구성원으로서는 일일이 해당 보고서가 법령의 제개정 여부 및 제반 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대조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담이 감경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의회조사국이 전술한 바와 같이 매년 보고서의 수정 내지 업데이트를 행하고 있다는 것[151]은 의회내 구성원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초선 의원과 의원 보좌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의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이 원내에 진입한 의원 및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의 전달과 의사소통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바는 참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151) 전술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2015년에는 신간 CRS Report 및 기타 보고서 배포를 총 1,264건 행하였는데 반하여, CRS Report 등 출간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는 총 2,481건 행해졌다고 한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2면.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분석

임 정 호

제4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분석

앞서 제2장에서는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현황을 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비교법제도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의원입법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부터는 개별 의원입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의원입법안을 통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태양과 그 주요내용을 분석한다. 기본법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 의원입법안 분석에 이어 제5장에서는 형사특별법 (성폭력 분야) 의원입법안을 다루게 된다.

제1절 형법·형사소송법 분야 의원입법안의 전반적 경향 개관

기본적으로 19대 국회의 경우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의원입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양적인 면으로 한정하여 보면 가시적 성과는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일단 전술한 바와 같이 19대 국회에 있어서 형법의 경우 의원입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공포된 건은 한 개도 없다.[152] 다만 같은 기간 형사소송법의 경우 두 개가 통과된 후 시행·공포되었다(의안번호 1909891[153], 의안번호 1909868[154]).

152) 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에 반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원입법안 그 자체는 폐기된다.

153) 수명법관에 의한 사전청문절차 진행 규정을 신설하고(형사소송법 제72조의2 신설), 조문체계상 동법 제80조 요급처분에서 제72조를 삭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91, 발의연월일 2014. 3. 26.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G4S0N3W2X6E1C9I5M3N2G4Q1N2M3 2016. 5. 10. 최종검색)

154) 상고장 제출시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는 직접적 근거규정을 명문화(동법 제380조 제2항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먼저 형법일부개정안의 경우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주문하는 여론이 반영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155]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나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의한 범죄(특히 공무원에 의한 뇌물범죄나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횡령이나 배임행위 등), 주취자 또는 중독자에 의한 범죄[156] 등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체 진실 발견을 강조한 의원입법안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 의원입법안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편에서는 증거능력 요건이나 영장주의를 강화하거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입법안들이 발의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속사유를 확대하거나 현행법의 구속 사유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입법안들도 적지 않게 발의되었다.

이하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내용에 대한 의원입법안들이 주로 발의되었으며, 그러한 입법활동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의원입법안들이 얻은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다.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68, 발의연월일 2014. 3. 25.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K4C0A3N2T5W1N5X2M8D4W7M0B3K0 2016. 5. 10. 최종검색)

155) 예를 들어 응답자의 6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한국갤럽,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70호", 2015년 7월 2주, 12면.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670 2016. 5. 30. 최종검색) 또한 예를 들어 응답자의 95%가 범죄자 처벌을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한국갤럽, "범죄자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Gallup Report 2012. 9 . 11. 2면.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330 2016. 5. 30. 최종검색)

156) 예를 들어 응답자의 77%가 음주 상태에서 행한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한국갤럽, "범죄자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Gallup Report 2012. 9 . 11. 2면.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330 2016. 5. 30. 최종검색)

제2절 의원입법안을 통한 형법·형사소송법의 개정 태양

1. 단순한 형식적 개정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의원입법안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재판소결정의 반영, 타법 개정 반영, 법정형의 단순 가감, 언어순화 등이 단순한 형식적 개정의 사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아래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한다.

가. 헌법재판소결정의 반영

헌법재판소의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반영된 의원입법안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결정의 직접적 반영과 간접적 반영으로 구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1) 헌법재판소결정의 직접적 반영

헌법재판소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정한 조문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입법안의 발의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헌법재판소결정의 '직접적 반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57]을 반영한 의안번호 1915452[158]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59]을 반영한 의안번호 1901874[160] 및 의안번호 1901742[161]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 경중에 대한 고려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및 수형자 전체의 선거권

157)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158)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452, 발의연월일 2015. 6. 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L5B0B6L0C5H1Y4U3D3V0G8P8C6U3 2016. 5. 10. 최종검색)
159)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160)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874, 발의연월일 2012. 9. 19.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E2M0G9N1V9C1P7S2M8J3N8A2O1H2 2016. 5. 10. 최종검색)
161)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742, 발의연월일 2012. 9. 1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P2R0N9A1H2K0P9Q5P5E0W9T3U9G8 2016. 5. 10. 최종검색)

제한을 하는 형법 제43조 등의 선거권 제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162]을 반영한 의안번호 1909658[163]은 자유형 선고시 당연 자격정지에 대한 단서의 신설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의안번호 1915606[164]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2016. 12. 31.까지 입법개정시한이 설정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자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제7조[165]를 형의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로 인하여 특정한 법률조항 자체의 삭제 또는 개정이라는 입법자의 입법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의미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분명 이러한 영역에 대한 의원입법안의 발의는 필수적이며, 입법자로서의 권한행사와 의무이행으로서 의미가 존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특정한 조문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입법안의 발의,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특정한 기한까지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입법안의 발의는, 그러한 결정을 '반영'한다는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반영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비선출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법리적 판단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적극적 민의의 반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함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결국 이러한 의원입법안의 발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법권 행사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결정의 간접적 반영

존속중상해죄의 법정형 정비와 함께 특수상해·특수강요·특수공갈의 신설을 규정한 의안번호 1916917[166]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바 구별하여 서술

---

162)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163)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658, 발의연월일 2014. 3. 7.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G4M0A3N0J7O1H4K2G9Q2J6Z1P7I7 2016. 5. 11. 최종검색)
164)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606, 발의연월일 2015. 6. 16.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Q5A0P6X1Q6C1M6G2Q3Y4J8C1H7S8 2016. 5. 27. 최종검색)
165)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166)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917, 발의연월일 2015. 9. 22.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인다. 즉 헌법재판소가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167]한 취지를 반영하여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므로, 위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특히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성있는 다른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반영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즉 다른 법률에 대한 결정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를 '간접적 반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한편으로는 전술한 '직접적 반영' 사례에 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이다. 단순히 당해 형법규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관련성있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기회에 형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우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구형사보상법 제7조 규정이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68] 이후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69]에서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였다.[170] 이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의 보상청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을 개정하여 비용보상의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 의안번호 1908365[171]이다.

이와 같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G1G5A0P9M2L2V1R7F0N1J3H4X6D4H1 2016. 5. 11. 최종검색)

167)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헌법재판소 2014. 11. 27. 선고 2014헌바224;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168)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4.

16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7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2014. 4.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O3E1O2Q0D5B1O7C0V4O3U4H7W2L7\ 2016. 5. 11. 최종검색)

171)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365, 발의연월일 2013. 12. 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O3E1O2Q0D5B1O7C0V4O3U4H7W2L7 2016. 5. 11. 최종검색)

결정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반영한 의원입법안의 발의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나. 타법 개정 반영

형법은 형사실체법에 있어서,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법에 있어서 각각 가장 일반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특별법이 아닌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본질이 도외시될 수 없다.

이러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본질상, 단순한 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의원입법안의 발의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 법정형 단순 가감

발의된 의원입법안들 중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한 구성요건에 대한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을 상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55조 횡령죄 및 배임죄 등 이른바 경제사범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의안번호 1909800[172],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및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의안번호 1903607[173], 형법 제315조 경매입찰방해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의안번호 1903140[174],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의안번호 1910014[175], 형법 제129조 수뢰죄 등 공무원의 뇌물죄

---

172)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00, 발의연월일 2014. 3. 19.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P4Y0U3K1E9A1O7A0I7Q4I8J2O1C9 2016. 5. 20. 최종검색)

173)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3607, 발의연월일 2013. 2. 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F3Z0J2R0J5U1L0O3W4U2L9L2D5I7 2016. 5. 27. 최종검색)

174)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3140, 발의연월일 2012. 12. 27.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N2T1G2J2A7O1D8J0U2I3F9K2F0N0 2016. 5. 27. 최종검색)

175)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014, 발의연월일 2014. 4. 3.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F4V0R4I0N3M1T4W2L7T3V7C3V8T7 2016. 5. 27. 최종검색)

전반의 법정형과 함께 배임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의안번호 1905835[176]및 제355조 횡령죄와 배임죄 등 형법상 경제사범 관련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의안번호 1909800[177] 등은 모두 해당 구성요건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강력한 처벌위주 방식으로 범죄에 대한 대응을 시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특정 구성요건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은 많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오로지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정형만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78]

라. 언어순화

의원입법안들을 살펴보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개정을 위한 발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대안 의안번호 1912911[179]에 반영이 되어 폐기된 형법 일부 개정안 중 의안번호 1910170[180]의 경우를 보자. 이 법안의 경우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을 '심신장애인'으로 보다 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1912913[181]에 반영되어 원안이 폐기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중 의안번호

176)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835, 발의연월일 2013. 7. 2.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O3P0E7P0M2R1Q5E3J6K0P4G5X9I0 2016. 5. 20. 최종검색)

177)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00, 발의연월일 2014. 3. 19.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P4Y0U3K1E9A1O7A0I7Q4I8J2O1C9 2016. 5. 20. 최종검색)

178)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적용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및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서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으로 통합하면서 벌금형 역시 전면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의안번호 1908698의 경우 단순한 법정형의 하향조정 사례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698, 발의연월일 2013. 12. 20.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Q3V1N2L2H0N2H0N2Z6K0R2B7X4C1 2016. 5. 17. 최종검색)

17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2911, 제안연월일 2014. 12. 8.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Z4K1I2S0Y5E2J1M4S3L1H1L8Z7A5 2016. 5. 27. 최종검색)

18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170, 발의연월일 2014. 4. 14.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B4J0Q4F1I4R1L6W0Y8Z4P1O3T2R5 2016. 5. 27. 최종검색)

1910169[182]의 경우 역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순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안번호 1914278[183] 및 1914286(또한 농아자 표현 외에도 '불구'를 '신체 장애'로 개정하려는 것도 포함한 입법안임)[184]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269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안번호 1912707[185] 및 형법 제124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를 '여성'으로 개정하려는 의안번호 1912701[186]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의안번호 1916552[187]의 경우 형법상 수리방해죄의 행위요건인 "결궤하거나"를 "무너뜨리거나"로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04조 등에서 사용되는 '환부'를 '반환'으로 개정하려는 의안번호 1916551[188], 동법 제103조 등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인- '몰취'를 '몰수'로 개정하려는 의안번호 1916011[189]도 단순한 언어순화에 해당한다.

---

18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2913, 제안연월일 2014. 12. 8.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K4D1G2N0I5I2Z1F4G1Y2S7G3K1H9 2016. 5. 27. 최종검색)

182)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169, 발의연월일 2014. 4. 14.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V4A0S4X1D4R1Z6G0E4S0D6L3G0L4 2016. 5. 27. 최종검색)

183)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278, 발의연월일 2015. 3. 13.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U5O0M3R1Q3R1D6Z0P7G3A0E2F2H3 2016. 5. 27. 최종검색)

184)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286, 발의연월일 2015. 3. 13.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A5J0N3J1P3H1K6M2D4P2K3X0B2F4 2016. 5. 27. 최종검색)

185)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707, 발의연월일 2014. 11. 27.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R4I1H1C2H7B1I3B4G6X1U8P5M7Q0 2016. 5. 27. 최종검색)

186)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701, 발의연월일 2014. 11. 27.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A4V1W1H2E7U1G3U2U6E0I2H0K2P0 2016. 5. 27. 최종검색)

187)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552, 발의연월일 2015. 8. 2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K5S0G8G2S5N1E4W4R1K1Q5H5C9D5 2016. 5. 27. 최종검색)

188)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551, 발의연월일 2015. 8. 2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G5D0Z8F2M5N1U4Z4Q0L1Z7F5D1P8 2016. 5. 27. 최종검색)

189)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011, 발의연월일 2015. 7. 8.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K5H0R7R0I8C1Q0E4Y9Q4R3Z3K1B9 2016. 5. 27. 최종검색)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하여 발의된 의원입법에 비교적 단순한 언어순화적 요소가 다수 반영된 것이 '양적인 입법실적 쌓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형적인 소수자로 오랜 기간 동안 차별의 대상이 되어 온 장애인이나 여성 등에 대한 표현을 순화하여 가는 과정을 우리 사회에서의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안의 발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다른 법령들에 비하여 그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법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요소가 많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표현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순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도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기본권 내지는 법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입법안에 있어서 언어순화가 다수 반영된 것을 가지고 단순히 의원입법에 있어서의 한계로만 볼 수는 없다고 평가된다. 즉 이러한 의원입법 발의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항에 대한 단순한 언어순화로 평가절하될 소지가 없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 내에서 독립된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법령에 있어서의 언어적 표현을 차근차근 순화하는 것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은 물론이고 일반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2. 실질적 개정: 범죄요건의 창설 또는 폐지

대표적으로 구성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려 한 의원입법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안들이 있었다. 우선 위조미술품의 대량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미술품에 관한 죄를 신설하려 한 의안번호 1917848[190], 근래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방위산업비리 문제에 대한 강경한

190)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848, 발의연월일 2015. 11. 20.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T5W1A1N2E0J1A7J3T2H0L9B1F7E5 2016. 5. 27. 최종검색)

대응을 목적으로 방위산업비리행위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 한 의안번호 1913701[191],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규정의 신설을 내용으로 한 의안번호 1914186[192], 보험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려 한 의안번호 1913956[193] 및 의안번호 1904517[194],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강경대응을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려 한 의안번호 1911784[195], 일본의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여론을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예: 욱일승천기) 사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 한 의안번호 1906925[196], 온라인 등에서의 지역이나 인종차별발언의 범람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반영하여 지역·인종대상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한 의안번호 1905550[197],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의 영향으로 불법사찰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려 한 의안번호 1904388[198]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들 의원입법안들은, 처벌규정의 신설을 통한 상징효과를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부분 기존의 처벌규정들을 통해 포섭이 가능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의도한 것이라 입법의 필요성 내지 절박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

191) 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701, 발의연월일 2015. 1. 16.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J5B0Z1V1N6O1C1A0Q7Z1Q0Z0U5B3 2016. 5. 27. 최종검색)

192)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186, 발의연월일 2015. 3. 6.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Y5L0H3S0L6H1T6H0B4Z5P3U1O9J1 2016. 5. 27. 최종검색)

193)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956, 발의연월일 2015. 2. 10.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C5D0F2Q1M0L1Y7X5Q2N0W9F4H4H0 2016. 5. 27. 최종검색)

194)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4517, 발의연월일 2013. 4. 15.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W3Q0S4T1H5U1E3Y2N0Y0B3E6N9S2 2016. 5. 27. 최종검색)

195)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784, 발의연월일 2014. 9. 22.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K4A0Q9B2Z2L1G7H2E4K3W0R1X2O8 2016. 5. 27. 최종검색)

196)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6925, 발의연월일, 2013. 9. 23.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A3G0I9I2U3N1H0N5F3V5H1Y8R6X1 2016. 5. 27. 최종검색)

197)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550, 발의연월일 2013. 6. 20.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P3X0X6Z2S0S1O5J0H7I0Y2F7S0D1 2016. 5. 27. 최종검색)

198)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4388, 발의연월일 2013. 4. 4.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F3W0C4L0K4Z1E7E4D8P2R8F0X8T9 2016. 5. 27. 최종검색)

다.[199] 또한 중한 처벌의 강조로 인하여 자칫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의원입법안들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200]

한편 기존에 형법전에 존재하는 구성요건을 아예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안도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을 반영한 의안번호 1915452[202],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3]을 반영한 의안번호 1901874[204] 및 의안번호 1901742[205]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미 형법전에 존재하는 구성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은 헌법재판소결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형법에 규정된 특정한 범죄구성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의원입법안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의안번호 1908698[206]의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목적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및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서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으로 통합하면서 벌금형 역시 전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존 형법에 존재하는 구성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안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199) 예를 들어 전술한 의안번호 1917848. 미술품에 관한 죄를 신설할 필요성은 차치하고, 기존의 사기죄나 문서에 관한 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200) 예를 들어 전술한 의안번호 1913701. 방산비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형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보인다.

201)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2)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452, 발의연월일 2015. 6. 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L5B0B6L0C5H1Y4U3D3V0G8P8C6U3 2016. 5. 10. 최종검색)

203)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4)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874, 발의연월일 2012. 9. 19.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E2M0G9N1V9C1P7S2M8J3N8A2O1H2 2016. 5. 10. 최종검색)

205)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742, 발의연월일 2012. 9. 1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P2R0N9A1H2K0P9Q5P5E0W9T3U9G8 2016. 5. 10. 최종검색)

206)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698, 발의연월일 2013. 12. 20.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Q3V1N2L2H0N2H0N2Z6K0R2B7X4C1 2016. 5. 17. 최종검색)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활용의 문제: 공감대 형성의 지향과 효율성 강조로 인한 통일적·체계적 심사의 결여 가능성

가. 유사 사항에 대한 중복적 발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활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에 개별 의원입법안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 경우 각각의 의원입법안이 -비록 내용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에 반영이 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대안반영)폐기로 집계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안에 내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원입법안 자체는 폐기된 것이지만, 발의된 사실 자체에 주목하여 보면 대안에 반영이 된 의원입법안 자체와 대안의 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우선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은 형법의 경우 총 4건[207], 형사소송법의 경우 총 4건[208]에 이른다.

이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발의된 의원입법안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활발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만큼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입법에 있어서 의원입법안이 같은 논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입증하는 하나의 예시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영역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에 의원입법안이 다수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원장 대안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안을 추적하여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실제로 적지 않은 의원입법안이 중복적으로 발의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2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8116, 의결일자 2015. 12.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2911, 의결일자 2014. 12.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0351, 의결일자 2014. 4. 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02751, 의결일자 2012. 11. 2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16. 5. 31. 최종검색)

2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8711, 의결일자 2016. 5.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8111, 의결일자 2015. 12.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6224, 의결일자 2015. 7.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2913, 의결일자 2014. 12. 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16. 5. 31. 최종검색)

위원장의 대안발의라는 수단을 통하여 입법이 실현이 되었다는 점 자체의 평가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적지 않은 의원입법안이 중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현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형법개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이 된 의안번호 1902751[209]을 검토하여 보면, 성폭력범죄 전반에 대한 개정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안에 반영된 의원입법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친고죄 규정의 삭제를 다루고 있는 의안번호 1901123[210]과 의안번호 1901056[211],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의안번호 1901590[212]과 의안번호 1901874[213], 그리고 의안번호 1901742[214]와 같이 객체의 확대와 친고죄 규정 삭제는 물론이고 유사강간죄의 신설,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들로 공히 성폭력범죄를 다룬 것들이다.

2000년대 이후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다수의 극단적 형태의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관련 사례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불안 때문에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주문되는 경향이 나타난 결과,[215] 먼저 2010년 형법일부개정을 통하여 유기형

---

2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02751, 제안연월일 2012. 11. 2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W2F1S1B2C2F1A2Q4U8I0D9H4I7B7 2016. 5. 10. 최종검색)

210) 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901123, 발의연월일 2012. 8. 13.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J2Q0I8P1X3W0W9Q3A3C3G9J4D4L2 2016. 5. 27. 최종검색)

211)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056, 발의연월일 2012. 8. 6.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V2K0T8L0Z6R1S1G3H4H2F9J5S5B2 2016. 5. 10. 최종검색)

21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590, 발의연월일 20120. 9. 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M2G0E9X0T5Q1R8O0Y6R3U1K7E8J7 2016. 5. 27. 최종검색)

213) 의안번호 1901874의 경우 강간죄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함과 함께 친고죄의 폐지는 물론이고 유사성행위의 추가,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를 다루고 있다.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874, 발의연월일 2012. 9. 19.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E2M0G9N1V9C1P7S2M8J3N8A2O1H2 2016. 5. 10. 최종검색)

214)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742, 발의연월일 2012. 9. 1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P2R0N9A1H2K0P9Q5P5E0W9T3U9G8 2016. 5. 10. 최종검색)

215) 이인석·임정엽, "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년, 35~36면. 이 문헌이 예를 들고 있는 당시의 성폭력범죄 사건들로는 조OO 사건과 김OO 사건 등이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OO이 8세 여아를 강간상해한 사건, 2010년 2월 부산에서 김OO가 여중생을 납치한 후 강

의 상한을 30년으로, 가중시 50년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바 있었다.[216]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다양한 범죄들 중에서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하고 강경한 대응의 요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 전반에 대한 강경한 대응 내지 중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217] 그리하여 사회변화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양상 다양화(유사강간죄 신설)[218], 객체 범위의 확대(부녀를 사람으로 개정)[219], 친고죄 규정 역시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악용에 대한 대응(친고죄 규정 삭제)[220]과 관련된 문제의식들이 각각의 의원입법안 및 법제사

간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김태훈·정선형 기자, "뒤죽박죽 성범죄 특별법…판사도 헷갈리는 죄명", 세계일보 2016. 4. 25.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599.html?OutUrl=naver 2016. 5. 10. 최종검색))등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16) 이인석·임정엽, "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36면.

217) 예를 들어 응답자의 6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힌 한국갤럽,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70호", 2015년 7월 2주, 12면.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670 2016. 5. 30. 최종검색) 또한 예를 들어 응답자의 95%가 범죄자 처벌을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해야 한다거나 응답자의 77%가 음주 상태에서 행한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한국갤럽, "범죄자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Gallup Report 2012. 9. 11. 2면.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330 2016. 5. 30. 최종검색)

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02751, 제안연월일 2012. 11. 2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W2F1S1B2C2F1A2Q4U8I0D9H4I7B7 2016. 5. 10. 최종검색);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742, 발의연월일 2012. 9. 12.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P2R0N9A1H2K0P9Q5P5E0W9T3U9G8 2016. 5. 10. 최종검색);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874, 발의연월일 2012. 9. 19.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E2M0G9N1V9C1P7S2M8J3N8A2O1H2 2016. 5. 10. 최종검색)

2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02751, 제안연월일 2012. 11. 2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W2F1S1B2C2F1A2Q4U8I0D9H4I7B7 2016. 5. 10. 최종검색);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742, 발의연월일 2012. 9. 1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P2R0N9A1H2K0P9Q5P5E0W9T3U9G8 2016. 5. 10. 최종검색)

2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02751, 제안연월일 2012. 11. 2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W2F1S1B2C2F1A2Q4U8I0D9H4I7B7 2016. 5. 10. 최종검색);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742, 발의연월일 2012. 9. 1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P2R0N9A1H2K0P9Q5P5E0W9T3U9G8 2016. 5. 10. 최종검색);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874, 발의연월일 2012. 9. 19.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E2M0G9N1V9C1P7S2M8J3N8A2O1H2 2016. 5. 10. 최종검색);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056, 발의연월

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에 적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의원마다 친고죄 규정의 삭제와 유사강간죄 신설과 같은 비교적 대동소이한 내용들에 대한 의원입법이 추진되어 종국에는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독립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개별 국회의원에 의한 의원입법안의 발의는, 분명 변화하는 사회상의 적극적 반영을 위하여 보다 다양하게 활용될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원입법안의 발의 자체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즉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이 활용되는 경우를 추적하여 보면, 일정 부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입법안이 중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현상을 조감할 수 있는 것이다.

입법권의 행사로서 국회 구성원인 의원들의 적극적·능동적인 의원입법 활동을 분명히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여 입법을 함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될 여지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유사한 중복적 의원입법안이 발의되는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역시 각각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원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나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즉각적이고 절실한 입법조치가 필요함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각각의 개별적인 의원입법안을 반영하는 절차를 통하여, 중복적인 의원입법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가장 적절한 입법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을 모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별 입법기관으로서의 의원간 공감대 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인 의원입법안이 발의됨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의 효율성 강조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활용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일 2012. 8. 6.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V2K0T8L0Z6R1S1G3H4H2F9J5S5B2 2016. 5. 10. 최종검색)

나. 이질적 사항의 통합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의 활용

이와 같이 중복적으로 발의된 다수의 의원입법안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심사와 의사결정을 행한다는 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을 통한 형사입법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통합을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서로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다수의 의원입법안들이 하나의 위원장 대안에 반영이 되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전술한 경우와 같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하는 차원이 아닌 경우임에도,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을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이 된 의안번호 1918116[221]의 경우를 보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적어도 형식상 이 안에 반영이 된 의원입법안은 의안번호 1900890[222], 의안번호 1906404[223], 의안번호 1905935[224], 의안번호 1907911[225], 의안번호 1910524[226], 의안번호 1909658[227], 의안번호 1911042[228], 의안번호 1915498[229], 의안번호

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8116, 제안연월일 2015. 12. 9. 4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S5F1O1A2P7T2V0U2I5L1Z3Y8K2Z0 2016. 5. 27. 최종검색)

222)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0890, 발의연월일 2012. 7. 20.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S2B0U7F2X6G1G6H4B9M0Y0Y5J2C9 2016. 5. 20. 최종검색)

223)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6404, 발의연월일 2013. 8. 16. 2~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N3L0Q8T1J6L1F7I0B3G2J8W8P0Q8 2016. 5. 27. 최종검색)

224)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935, 발의연월일 2013. 7. 10.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J3Q0E7V1W0U1Q6F0M3L4W9P4X7X3 2016. 5. 20. 최종검색)

225)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7911, 발의연월일 2013. 11. 20.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J3N1H1G2F0M1P5J1M3S4G8A0U1Q0 2016. 5. 20. 최종검색)

226)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524, 발의연월일 2014. 5. 8. 1~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R4Y0X5S0G8M1E5A0C1J0R5O3O2H8 2016. 5. 27. 최종검색)

227)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658, 발의연월일 2014. 3. 7.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G4M0A3N0J7O1H4K2G9Q2J6Z1P7I7 2016. 5. 11. 최종검색)

22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042, 발의연월일 2014. 6. 30.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M4J0Q6L3N0Z1F7T0J3V3M5S2N6I1 2016. 5. 27. 최종검색)

229)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498, 2015. 6. 8. 3면.

1915452[230], 의안번호 1916917[231], 의안번호 1916069[232], 심지어 일수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을 담은 의안번호 1904978[233] 등 무려 12개의 의원입법안이 하나의 대안에 반영된 것이다.

각각의 의원입법안의 핵심적 내용만을 간추려 보면, 벌금형의 집행유예(의안번호 1900890), 수형자의 선거권 보장 문제(의안번호 1911042),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34]을 그대로 반영한 형법상 간통죄의 삭제(의안번호 1915452), 형법상 존속중상해죄의 법정형 정비 및 특수상해·특수강요·특수공갈죄의 신설(의안번호 1916917) 등이 한꺼번에 하나의 대안에 반영이 되어 통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일반법으로서 형법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일부 존재하겠지만, 각각의 논점 자체가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즉 위 의안들 중, 예를 들어 형벌로서의 재산형 중 벌금형의 집행유예 문제와 간통죄의 삭제 문제가 하나의 의안으로 다루어져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의 공통분모는 그저 형법 규정을 개정한다는 부분만이 남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이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의 대안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상실한 점도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안의 형성에 있어서 상호 이질적인 다수의 법안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된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23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Z5Q0F6Q0G8A1A7H4Y2G1V2K4R2Q2 2016. 5. 27. 최종검색)

230)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452, 발의연월일 2015. 6. 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L5B0B6L0C5H1Y4U3D3V0G8P8C6U3 2016. 5. 10. 최종검색)

231)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917, 발의연월일 2015. 9. 22.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G1G5A0P9M2L2V1R7F0N1J3H4X6D4H1 2016. 5. 11. 최종검색)

232)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069, 발의연월일 2015. 7. 14.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F5C0X7F1M4U1R6O1Y8B0Z1P4Q7U8 2016. 5. 27. 최종검색)

233)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일수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904978, 발의연월일 2013. 5. 15.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Q3K0Y5G1J5Y1Y4P0A9A2B8M0Z3Z9 2016. 5. 27. 최종검색)

234)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35) 국회사무처,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호, 2015. 11. 25. 19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Q3K0Y5G1J5Y1Y4P0A9A2B8M0Z3Z9 2016. 5. 30. 최종검색); 국회사무처,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2015. 12. 8. 81면 (http://likms.assembly.

이는 형사소송법 분야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중 의안번호 1916224[236]를 보면, 의원입법안으로 의안번호 1900395[237], 의안번호 1902145[238], 의안번호 1905365[239], 의안번호 1908066[240], 의안번호 1911609[241], 의안번호 1914098[242], 의안번호 1914437[243], 그리고 심지어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담은 의안번호 1901402[244],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911202[245], 정부안인 의안번호 1901982[246] 등 10건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

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S5F1O1A2P7T2V0U2I5L1Z3Y8K2Z0 2016. 5. 30. 최종검색)

23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6224, 제안연월일 2015. 7. 24. 3~4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X5V0L7B2Z4D1Q3S0M0S3Z0A3O1N5 2016. 5. 27. 최종검색)

237)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900395, 발의연월일 2012. 6. 29. 1~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Y2G0L6S2U9C1Y0W3O3E2T2U7C0T5 2016. 5. 27. 최종검색)

238)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902145, 발의연월일 2012. 10. 5.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Z2X1D0J0L5U1R7G1T4H2W3K1G3B3 2016. 5. 27. 최종검색)

239)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365, 발의연월일 2013. 6. 7. 3~4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Q3W0M6G0P7M1G4W3C3E0Z6G7S7C4 2016. 5. 27. 최종검색)

240)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066, 발의연월일 2013. 11. 26.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A3R1A1W2A6I1N6P0N1S2P4T8G5D2 2016. 5. 27. 최종검색)

241)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609, 발의연월일 2014. 9. 4.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S4J0C9A0Y4X1Y1P3W7L4O9E6Y5C7 2016. 5. 27. 최종검색)

24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098, 발의연월일 2015. 3. 2. 1~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R5P0P3P0U2I1S8C1D9Z2E2U4A7S3 2016. 5. 27. 최종검색)

243)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437, 발의연월일 2015. 3. 25.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B5W0V3C2U5D1Q6N0D9W2S5G4I5Y6 2016. 5. 27. 최종검색)

24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1901402, 발의연월일 2012. 8. 29.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U2L0Y8K2L9J1E7K5B7M3T9I2C7Y5 2016. 5. 27. 최종검색)

245)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1911202, 발의연월일 2014. 7. 17.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I4C0H7B1E7E1F1B2O6K2Z5S0Q2E6 2016. 5. 27. 최종검색)

246) 정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982, 제출연월일 2012. 9. 26.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A1N2B0N9L2J6N1V4P5T0M0J0T0Y4K5 2016. 5. 27. 최종검색)

있다.

각각의 의원입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살인죄 등 공소시효 적용배제 신설(의안번호 1900395, 의안번호 1901982 등), 보조인 범위의 확장 규정 신설 및 구속집행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규정의 삭제(의안번호 1902145),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의 신설(의안번호 1905365, 의안번호 1908066 등) 등 상이한 성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이와 같은 대안의 형성에 있어서 상호 이질적인 다수의 법안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된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렵다.[247]

또한 그 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영된 의원입법안과 함께 갑자기 전혀 이질적인 요소들이 반영되는 현상들도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인 의안번호 1918111[248]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의원입법안들을 반영한 것이다. 즉 벌과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내용으로 한 의안번호 1900889[249], 벌과금 납부시 기일연장과 분할납부를 내용으로 한 의안번호 1912583[250], 벌과금의 신용카드 납부 및 기일연기와 분할납부를 모두 반영한 의안번호 1916073[251]이 위 대안에 반영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에 관한 의원입법안들이다.

이에 따라 위 대안은 벌과금 및 기타 비용의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문제와 재정결정 확정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문제를 함께 개정하고 있다. 재정신청에 대한 위 두 가지 사항은 본질상

---

247) 국회사무처, 제33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2015. 7. 21. 19~20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B5W0V3C2U5D1Q6N0D9W2S5G4I5Y6 2016. 5. 30. 최종검색); 국회사무처, 제33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5호, 2015. 7. 24.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X5V0L7B2Z4D1Q3S0M0S3Z0A3O1N5 2016. 5. 30. 최종검색)

2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8111, 제안연월일 2015. 12. 8. 5~6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M5X1O1Z2B7B2Q0V1A5R3W2M0X2F4 2016. 5. 27. 최종검색)

249)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0889, 발의연월일 2012. 7. 26.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R2S0U7I2K6P1S6N4H7C2D3A2L1C5 2016. 5. 27. 최종검색)

250)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583, 발의연월일 2014. 11. 20. 1~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D4M1V1G2D0T1B5X2B6F2U0D9K2D2 2016. 5. 27. 최종검색)

251)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073, 발의연월일 2015. 7. 14.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K5Z0T7Y1M4A1A7Q5L0J5V1S1R9D9 2016. 5. 27. 최종검색)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동의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본래 위 대안에 반영이 되어 폐기된 의원입법안들이 재산형의 선고 이후 벌금의 납부에 있어서의 편익도모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인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부개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재정신청의 개정문제와는 별다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대안의 형성에 있어서 이와 같이 상호 이질적인 다수의 법안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된 이유를 찾아보기는 곤란하다.[252]

이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분명 입법부로서 국회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있어서 입법부 기능을 강화하는 면이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히 상이한 각각의 의안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형성한 후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 과연 체계적 심사와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3절 중점분야: 발의된 형법·형사소송법 의원입법안의 주된 내용

1. 형법 분야: 처벌 강화와 재산형의 실효성 확보

가. 형법 분야에 있어서의 처벌 강화 강조 경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예외

(1) 처벌 강화의 전체적 흐름

1) 형법총칙

우선 심신장애상태에서의 범죄행위 관련 형법 제10조에 대한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형법총칙상 주취 상태나 중독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반영한 의원입법안[253]의 경우 일반 국민의 법감정

252) 국회사무처,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2015. 11. 10. 9~10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K5Z0T7Y1M4A1A7Q5L0J5V1S1R9D9 2016. 5. 30. 최종검색); 국회사무처,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2015. 12. 8. 8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S5F1O1A2P7T2V0U2I5L1Z3Y8K2Z0 2016. 5. 30. 최종검색)

253)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635, 발의연월일 2013. 6. 26.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P3E0P6B2B6R0D

을 반영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가능하다.

그간 적지 않은 사례에서 범죄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행한 행위임을 이유로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범죄 등[254]에 있어서 형의 감경 등 시혜적 조치를 받아온 점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을 적극 반영한 의원입법안들로 여겨진다.

2) 형법각칙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안들 중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고 기존 구성요건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데 주력한 측면이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구성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려는 형태의 의원입법안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 삭제와 같은 의원입법안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존의 구성요건을 폐지하려는 의원입법안들에 비하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려는 의원입법안들이 적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그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하는 일반 국민의 여론 내지는 일반인의 법감정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정부에 의하여 발의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 전반적 맥락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발의하여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의안번호 1901143의 경우[255]와 의안번호 1917613의 경우[256]도 그러하다.

9K4W2O2Y2L8W6G3 2016. 5. 20. 최종검색);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3592, 발의연월일 2013. 2. 4.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X3H0D2W0V4V1Y5G0Y8R3G5M5L2O2 2016. 5. 20. 최종검색);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3092, 발의연월일 2012. 12. 14.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E2R1N2C1Q4T1R4O5N7R2V1N7D1Y3 2016. 5. 20. 최종검색);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574, 발의연월일 2012. 9. 5.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P2E0T9G0E5H1N4V0T2W0T6W7C5C5 2016. 5. 20. 최종검색);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111 발의연월일 2012. 8. 9.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S2A0G8R0F9P1V7S5H1V0C5Y8E4V7 2016. 5. 20. 최종검색)

254) 이른바 주폭(酒暴)에 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3092, 발의연월일 2012. 12. 14.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E2R1N2C1Q4T1R4O5N7R2V1N7D1Y3 2016. 5. 20. 최종검색)

255)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제246조 내지 제249조의 도박·복표에 관한 죄, 그리고 제

다시 의원입법안에 있어서의 처벌 강화 경향이라는 측면을 주목하여 본다면,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친고죄 규정의 삭제를 다루고 있는 의안번호 1901123[257]과 의안번호 1901056[258],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의안번호 1901590[259]과 의안번호 1901874[260], 그리고 의안번호 1901742[261]와 같이 객체의 확대와 친고죄 규정 삭제는 물론이고 유사강간죄의 신설,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들로 공히 성폭력범죄를 다룬 것들이 있으며, 대부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뇌물관련 범죄행위와 배임죄[262]

287조 내지 제296조의 2의 약취·유인·인신매매에 관한 죄의 전반적 처벌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는 국제연합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도 있었다. 정부,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143, 제출연월일 2012. 8. 13.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N2G0J8V1F3Z1H6P3L9J4K0M8F4M1 2016. 5. 31. 최종검색) 한편 이는 형법각칙 중 적지 않은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정과 함께 -총칙에 규정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세계주의를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등 상당한 범위에 대한 개정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256) 형법 제357조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제3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취득시에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민간부패방지를 위한 취지임과 동시에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국내 이행 입법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도 있었다. 정부,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613, 제출연월일 2015. 11. 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Y1H5B1A1H0S5V1B6V1O0C5P3N3B5X6 2016. 5. 31. 최종검색) 배임수증재죄의 가벌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의 개정이었다고 여겨진다.

257) 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901123, 발의연월일 2012. 8. 13.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J2Q0I8P1X3W0W9Q3A3C3G9J4D4L2 2016. 5. 27. 최종검색)

258)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056, 발의연월일 2012. 8. 6.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V2K0T8L0Z6R1S1G3H4H2F9J5S5B2 2016. 5. 10. 최종검색)

25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590, 발의연월일 20120. 9. 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M2G0E9X0T5Q1R8O0Y6R3U1K7E8J7 2016. 5. 27. 최종검색)

260) 의안번호 1901874의 경우 강간죄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함과 함께 친고죄의 폐지는 물론이고 유사성행위의 추가,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를 다루고 있다.

261)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742, 발의연월일 2012. 9. 1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P2R0N9A1H2K0P9Q5P5E0W9T3U9G8 2016. 5. 10. 최종검색)

262)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835, 발의연월일 2013. 7. 2.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O3P0E7P0M2R1Q

및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볼 수 있는 횡령과 배임행위 등 경제사범[263]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의원입법안도 적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반영한 의원입법안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2) 예외적 단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각칙상의 비범죄화 시도

다만 특히 표현의 자유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위와 달리 처벌 완화적 입법안들이 상당수 발의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당해 기본권의 보장의 목적에서 적극적인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형법상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거나, 법정형을 하향조정하거나, 또는 불처벌의 예외를 명문화하는 방식의 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908698[264]의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목적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및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서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으로 통합하면서 벌금형 역시 전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 및 모욕죄의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265], 또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안들[266]이나 -노동쟁의 행위 관련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의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개정안[267]의 경우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목적이 상당부분 반영된

5E3J6K0P4G5X9I0 2016. 5. 20. 최종검색)

263)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00, 발의연월일 2014. 3. 19.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P4Y0U3K1E9A1O7A0I7Q4I8J2O1C9 2016. 5. 20. 최종검색)

264)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698, 발의연월일 2013. 12. 20.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Q3V1N2L2H0N2H0N2Z6K0R2B7X4C1 2016. 5. 17. 최종검색)

265)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0892, 발의연월일 2012. 7. 26. 5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M2T0Q7T2F6B1Y7T4N3N2M4W8B4Y2 2016. 5. 20. 최종검색)

266)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2940, 발의연월일 2012. 12. 5.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A2P1Z2K0A5R1S8E0K1G2Z7R5A4U0 2016. 5. 20. 최종검색);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886, 발의연월일 2015. 9. 18.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F1M5G0D9L1S8Q1I3X4M8N0S8C8Y8Y4 2016. 5. 20. 최종검색)

것으로 생각된다.

나. 재산형의 실효성 확보

한편 재산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원입법안들도 다수 보여진다. 즉 벌금형의 집행유예[268]나 노역장 유치 관련 벌금액 공제의 제한[269], 징역 1년에 대응하는 벌금액의 1천만원으로의 상향조정[270], 그리고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271]의 시도 등을 통하여 재산형 제도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2. 형사소송법 분야에 있어서의 기본권 보장 강조 입장과 실체 진실 발견 강조 입장의 대립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

267) 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4758, 발의연월일 2013. 4. 30.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Q3J0L4J3C0F1X8E0A7A4X2S5T8X6 2016. 5. 20. 최종검색)

268)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7911, 발의연월일 2013. 11. 20.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J3N1H1G2F0M1P5J1M3S4G8A0U1Q0 2016. 5. 20. 최종검색);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0890, 발의연월일 2012. 7. 20.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S2B0U7F2X6G1G6H4B9M0Y0Y5J2C9 2016. 5. 20. 최종검색)

269) 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62, 발의연월일 2014. 3. 2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M4S0I3O2R5K1O0Q2Q7X4A6W6J3N4 2016. 5. 20. 최종검색); 박민식 의원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79, 발의연월일 2014. 3. 20.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U4D0U3D2Q6O1W8W3S6M0E5M8M5Y4 2016. 5. 20. 최종검색);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906, 발의연월일 2014. 3. 27.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Y4L0O3W2M7M1C7L2B9R1S4K3W5Q7 2016. 5. 20. 최종검색);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992, 발의연월일 2014. 4. 1. 5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F4L0V4K0C1N1G8Z1D3V2O0U9M7B4 2016. 5. 20. 최종검색)

270)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595, 발의연월일 2015. 11. 4.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S5T1X1C0M4T1S7P4X3T5I0W7Z8L0 2016. 5. 20. 최종검색)

271)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935, 발의연월일 2013. 7. 10.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J3Q0E7V1W0U1Q6F0M3L4W9P4X7X3 2016. 5. 20. 최종검색)

측면을 강조한 의원입법안들과 실체 진실 발견 측면을 강조한 의원입법안들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한편에서는 증거능력 요건이나 영장주의를 강화하거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입법안들이 발의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속사유를 확대하거나 현행범의 구속 사유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입법안들도 적지 않게 발의되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272], 정보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273],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에 스마트폰을 포함시키려는 개정안[274], 영장주의의 전반적 강화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275], 모든 공판에 있어서 변호인 참여를 필수적인 것으로 정하려는 개정안[276],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 개정안[277] 등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의원입법안들로 평가된다.

이에 비하여 디지털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278], 구속사유의 전반적 확대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279] 및 현행범의 구속사유를 완화하려는 개정안[280], 압수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

272)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0843, 발의연월일 2012. 7. 24. 3~5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M2Q0T7N2H4L1P0G1I8H1V7M6P1O2 2016. 5. 20. 최종검색)

273)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877, 발의연월일 2014. 12. 8. 1~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O4L1C2T0P8H1O4E5R2N2Q5A0K0Q6 2016. 5. 20. 최종검색)

274)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402, 발의연월일 2014. 4. 30.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B4N0S4Z3N0I1Q0P4Z9K4J7P3K3I1 2016. 5. 20. 최종검색)

275)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0893, 발의연월일 2012. 7. 26. 1~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H2Q0W7U2J6N1R8X0W9I5B2Y7N2U5 2016. 5. 20. 최종검색)

276)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439, 발의연월일 2014. 8. 21.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O4P0L8I2V1G1R7N1L7E4C0I0W4V8 2016. 5. 20. 최종검색)

277)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2145, 발의연월일 2012. 10. 5. 1~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Z2X1D0J0L5U1R7G1T4H2W3K1G3B3 2016. 5. 20. 최종검색)

278)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159, 발의연월일 2015. 5. 15.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Y5Q0Y5E1E5E1D8P2Y9W3I2H3V6W6 2016. 5. 20. 최종검색)

279)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0309, 발의연월일 2012. 6. 26.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D2B0H6L2Z6D1W0J1W5D5L3S7X8K9 2016. 5. 20. 최종검색)

한 개정안[281],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변호인 접견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한 개정안[282] 등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 내지는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안들로 평가된다.

제4절 발의된 형법·형사소송법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1. 통과된 의원입법안에 있어서의 성과와 한계: 적극적 입법권 행사 여부

19대 국회 회기 동안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과 관련된 의원입법안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원입법안 그대로 통과가 된 사례는 2개가 존재한다.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없고,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2개가 이에 해당된다.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명법관에 의한 사전청문절차 진행 규정을 신설하고(형사소송법 제72조의2 신설), 조문체계상 동법 제80조 요급처분에서 제72조를 삭제하는 의안번호 1909891[283]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상고장 제출시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는 직접적 근거규정을 명문화(동법 제380조 제2항 신설)하는 의안번호 1909868[284]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상고장 제출시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

280)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443, 발의연월일 2013. 12. 9.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P3O1J2Y0G9E1F7G2D7E2W4G0Y0L5 2016. 5. 20. 최종검색)

281)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878, 발의연월일 2015. 2. 2. 2~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D5S0L2G0F2G1D6E0E0Q1K3P9N3T5 2016. 5. 20. 최종검색)

282)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921, 발의연월일 2013. 12. 31.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C3F1K2F3R1G1A6Z2T3T5Z8P2R4Y2 2016. 5. 20. 최종검색)

283)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91, 발의연월일 2014. 3. 26.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G4S0N3W2X6E1C9I5M3N2G4Q1N2M3 2016. 5. 10. 최종검색)

284)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68, 발의연월일 2014. 3. 25. 3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K4C0A3N2T5W1N5X2M8D4W7M0B3K0 2016. 5. 10. 최종검색)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는 직접적 근거규정을 명문화(동법 제380조 제2항 신설)하도록 한 의안번호 1909868의 경우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285]으로 인하여 굳어진 우리 법원의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도록 촉구하여 상고인의 상고심 심사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남상고를 억제"[286]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의 결정을 반영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를 촉구해 상고심 심사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상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287]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 그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질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즉 후자에 있어서는 특정한 법률조항 자체의 삭제 또는 개정이라는 입법자의 입법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의미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그러한 의미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지 결정 그 자체가 확고부동의 것이라고만 볼 수도 없고,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도 도외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특정한 조문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입법안의 발의[288],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특정한 기한까지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입법안의 발의는 이 점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법권 행사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고

---

285) 대법원 2010. 4. 20. 선고 2010도759 전원합의체결정.

28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4. 3. 25.), 2014. 4.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K4C0A3N2T5W1N5X2M8D4W7M0B3K0 2016. 5. 10. 최종검색)

28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4. 3. 25.), 2014. 4. 4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K4C0A3N2T5W1N5X2M8D4W7M0B3K0 2016. 5. 10. 최종검색)

288) 예를 들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부분을 담은 입법안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452, 발의연월일 2015. 6. 5. 1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L5B0B6L0C5H1Y4U3D3V0G8P8C6U3) 2016. 5. 10. 최종검색) 또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부분을 담은 입법안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874, 발의연월일 2012. 9. 19.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E2M0G9N1V9C1P7S2M8J3N8A2O1H2 2016. 5. 10. 최종검색);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742, 발의연월일 2012. 9. 12. 2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P2R0N9A1H2K0P9Q5P5E0W9T3U9G8 2016. 5. 10. 최종검색)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전술한 의안번호 1909868과 같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지 결정의 취지와 부합하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하는 행위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권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평가 가능하다.

결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을 반영한 의원입법안의 통과라는 측면을 볼 때, 입법의 공백을 메우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절차 효율도 증대시키는 등 실질적 성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 혹은 의원입법을 통한 다양한 민의의 반영보다는, 판례의 반영을 통한 개별규정의 '보완'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2. 통과되지 못한 의원입법안에 있어서의 부분적 성과

반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추적 및 검토해본 절대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비록 폐기되는 등 통과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질적 성과를 발견할 수 있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차기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의원입법안들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형법

전술한 바와 같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안들 중 형법 분야를 살펴보면, 형사처벌의 엄중화를 통하여 범죄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보인다. 인권 보호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간 계속되었고, 온정주의적 처벌 등 처벌에 있어서의 불균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았다.[289]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인하여 사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된 면을 부정할 수

289) 예를 들어 응답자의 6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힌 한국갤럽,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70호", 2015년 7월 2주, 12면.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670 2016. 5. 30. 최종검색) 또한 예를 들어 응답자의 95%가 범죄자 처벌을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해야 한다거나 응답자의 77%가 음주 상태에서 행한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한국갤럽, "범죄자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Gallup Report 2012. 9. 11. 2면.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330 2016. 5. 30. 최종검색)

없었던 것이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은 처벌 강화적 의원입법안들의 다수 발의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시대변화에 대한 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처벌 강화를 반영한 의원입법안들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도 특히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안들도 적지 않았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간 긴장관계 속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전술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한 개정안들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양자에 대한 규범조화적 방향을 제시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직 입법적 성과가 현실로 달성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심화된 논의를 통하여[290] 표현의 자유 관련 구성요건들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관련된 의원입법안들 중 일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된 반면, 그렇지 못한 안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따른 화폐가치 변화를 적극 반영함은 물론이고,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의원입법안들의 발의 역시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형사소송법

전술한 바와 같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의원입법안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추구하는 법안들과 수사효율성 강화 등을 통한 실체 진실 확보를 추구하는 법안들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무죄추정이라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울러 국민을 범죄로부터 사전적·사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90) 연합뉴스 2016. 5. 20.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냐 유지보완이냐 의견 ‘팽팽’…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설문서 “폐지” 49.9%·“유지보완” 49.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096000004.HTML?input=1195m 2016. 5. 20. 최종검색)

노력이 공존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기본권의 보장과 실체진실발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증거와 수사기법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가능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비록 입법에는 당장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관련 입법을 위한 초석을 세웠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절 소 결

발의된 의원입법안들의 태양을 살펴보면, 형법·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들 중 상당수가 단순한 언어순화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목적 혹은 일반 국민이 당해 법률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중복적으로 발의된 상당수 의원입법안들이 발의된 점은, 그만큼 즉각적 입법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입법기관내 공감대 형성 과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긍정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의원입법안들이 입법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입법권의 행사라는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단순히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간접적인 반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수량적으로 보았을 때 형법·형사소송법 분야에 있어서 발의된 의원입법안 자체는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 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임기만료나 대안반영 등의 사유로 폐기되고 말았다. 발의된 의원입법안들을 살펴보면, 형법 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배임·횡령 등 전형적 화이트칼라 범죄나 뇌물관련 범죄, 성폭력범

죄, 음주자·중독자에 의한 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이 반영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결국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일반적 여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형사소송법 분야에 있어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흐름과 실체진실 발견을 강조하는 흐름이 동시에 발견되었다. 인권보장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적 반영이라는 측면이 지속적으로 주문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형사특별법 제·개정 법안 분석

김 한 균

제5장

형사특별법 제·개정 법안 분석

앞서 제4장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의원입법안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본장에서는 형사특별법 분야에서 제19대 국회의 의원입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형사특별법은 그 종류와 범위, 법안건수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수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형사특별법 분야 중에서도 제19대 국회 관련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폭력 관련 형사특별법을 택하였다. 이어 제6장에서는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을 분석한다.

제1절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법안 분석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6월 14일 제안법안(1900130호)부터 2015년 12월 18일 제안법안(1918223호)에 이르기까지 모두 54건이다. 이 중에서 원안 또는 수정가결이 3건, 대안반영폐기는 16건, 폐기 2건, 그리고 임기만료로 33건이 폐기되었다.[291]

이하에서는 관련 주요 의원입법안의 내용적 성과와 특징, 그 한계를 범죄화, 처벌강화, 감독처분강화, 그리고 형벌체계 균형조정 및 판례반영의 사안에 따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

291)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16년 5월 30일 접속)

1. 범죄화 – 가벌규정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성폭력행위의 특정 유형을 신설 범죄화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형사특별법이다.

가. 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예컨대 사회통념상 노골적인 성적 언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입법안[292]이 그것이다.

현행 형사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발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더라도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체적 접촉 여부에 집중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신설[293]하여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294]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대상(제17조)이며, 성인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인 경우 관련법상 과태료처분대상이다. 성인대상 성희롱의 성폭력 피해성이 부인될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범죄화할 대상인지에 관하여는 이론적

---

292)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0416) 발의연월일 2014년 4월30일. (이하 본 장의 분석대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출처는 모두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이다. 2016. 6. 1. 최종접속)

293) 제13조의2(언동에 의한 음란행위)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4)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0416) 발의연월일 2014년 4월30일.

정책적 입장이 여전히 나뉜다. 동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 되었지만, 여론을 수렴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 유사강간죄 처벌범위 확대

한편 특수강간죄,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 및 업무상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유사강간 처벌규정 신설하는 의원입법안도 제안된 바 있다.[295] 즉 2012년 형법개정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법상 특수강간죄,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죄에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 및 업무상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296]

동 법안의 경우 처벌규정의 신설 형식을 취하였으나, 2012년 형법개정에 따라 강간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으나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높은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유사강제성교죄로 이미 처벌수준을 높인 바, 특수강간, 친족관계 강간죄의 경우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처벌수준을 세분화한다는 점에서 관련법률과의 체계정비의 성격도 있다.

2. 처벌강화 – 구금형 및 벌금형 가중

가. 가중사유 – 관련범죄 및 재범 증가

처벌강화 관련 의원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벌강화의 근거를 관련범죄 및 재범증가에서 찾는 경우가 다수다.

---

295) 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09828) 발의연월일 2014년 3월21일.
296) 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09828) 발의연월일 2014년 3월21일.

(1) 도촬죄의 가중처벌

즉 최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상당수 제안된 바 있다.[297] 이른바 도촬죄는 최근 사회문제로서 사회적 관심사인만큼, 형사정책적으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이다. 관련범죄의 증가현상에 관하여 국민여론과 사회현안을 주시하고 입법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다만 단순히 구금형이나 벌금형의 상향조정을 거듭하는 입법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의원입법안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고려도 포함되어야 바람직한 개정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2) 상습범규정의 신설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2에 상습범 규정을 신설[298]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된 바 있다.[299] 동 법안을 살펴보자면 법안구성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이 증가경향인지 급증상황인지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자료 등 검증작업을 전제하고, 형법총칙을 비롯한 성폭력관련 형사특별법 체계상 상습범 규정의 증설 타당성과 효과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97)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8213) 발의연월일 2015년 12월17일. ;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7003) 발의연월일 2015년 9월30일.;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6892) 발의연월일 2015년 9월18일.

298) 제14조의2(상습범) 상습적으로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9)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7325) 발의연월일 2015년 10월22일.

나. 가중사유 – 중대한 피해 및 피해회복의 어려움

특히 성폭력범죄 사안의 경우 죄질의 중함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의원입법안으로 도촬범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불법 동영상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유포될 경우에는 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는 내용이 있다.[300]

3. 처벌강화 – 처벌 대상 확대 및 불처벌 대상 축소

가. 가중처벌 연령기준의 상향

제19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7조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판단력·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동법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문제가 적극 제기되었다. 또한 이는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사실상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의원입법안이 다수 제안되었다.[301]

검토해 보자면, 현행 13세 미만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간음·위계위력추행죄 가중처벌규정(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입법취지는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자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인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역시 피해자로서의 취약성과 피해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만한 현실적 타당성은

300)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8213) 발의연월일 2015년 12월17일.;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7003) 발의연월일 2015년 9월30일.

30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8200) 발의연월일 2015년 12월15일. ;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0163) 발의연월일 2014년 4월14일.

인정된다. 현행 법체계 또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두고, 다시 아동·청소년중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 거듭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두어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낮은 연령일수록 가중처벌함으로써 그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19대 국회 이전의 법개정 경과

1997년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8조의 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규정을 신설하여,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2항),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로 처벌하고 (제3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로 처벌하였다(제4항). 당시 입법취지는 “최근 전국적으로 근친간 및 미성년자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등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한층 강화”하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보호를 강화”하는데 있었다.

이어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법정형을 가중하여 현행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로 개정하였다. 당시 입법취지는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 하는데 있었다.

2000년 제정 구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는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 (제1항),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제2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제4항)로 처벌하였다. 당시 입법취지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있다.

2010년 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를 3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었다. 또한 2013년 전부개정 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제2항은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에 대해 5년 이상, 제4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였다.

1997년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13세 미만자 대상, 2000년 구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는바, 아동·청소년 및 13세 미만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입법취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빈발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아동보호강화의 필요성으로 제시될 뿐이며, 13세 미만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한 가중처벌의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살피건대 현행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죄는 연령기준을 13세 미만으로 정하여, 연소자의 건전한 성적 성장을 그 보호법익으로 인정한다. 즉 13세 미만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판단과 행사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규정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인지,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의 건전한 성적 성장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관련 의원입법안들이 제시하는 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판단력 내지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하나, 13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의 보호필요성이 동일한지, 구분할지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하다. 또한 제시된 판례분석 자료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는 49.8%로서 13세 미만 또는 16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비율이 높다하나, 16세 이상 아동청소년 피해자 비율이 37%라는 점에서 16세 이상과 구별하여

특별히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만큼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연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입법 결과, 동 유형 범죄의 발생비율이 감소했는지의 효과성 여부를 살펴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가중처벌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결론적으로 13세 미만으로 설정된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으로 단순 상향조정하거나,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연령기준에 따른 별도의 가중처벌조항을 둘지는 현행법상 특별한 보호대상의 확대문제로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므로 신중한 입법정책적 검토를 요한다.

4. 감독강화 – 처분대상 확대 및 처분요건 강화

최근 성폭력대상 형사입법은 구금형의 가중을 통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내 감독처분 역시 처분대상을 확대하거나 처분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벌적 처분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등록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을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수정심의를 거쳐 가결되었다.[302]

동 법안에 관하여 전문위원 보고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에 '연락처'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대상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변경했으나 바뀐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들의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실무적 준비를 위하여 6개월 정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는 개정 법률의 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다.[303]

---

302)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08573) 발의연월일 2013년 12월16일.

5. 형벌체계 균형 조정

가. 관련법률 규정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직무 관련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처벌에 비해 형량이 낮다.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형벌체계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의원입법안이 제안된 바 있다.[304]

나.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응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 규정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이에 현행법상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원입법안이 다수 제안된 바 있다.[305]

6. 판결례 반영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규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례를 반영하기 위한 의원입법안도 다수 제안되었다.

---

30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573호 심사보고서 (2014년 12월)

304)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8223) 발의연월일 2015년 12월18일.

305)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7325) 발의연월일 2015년 10월22일.;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6892) 발의연월일 2015년 9월18일.

가. 신상정보등록 관리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동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306]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범죄의 종류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이 제안되었다.[307]

나. 성적목적 공중장소 침입의 대상

또한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법원이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논란에 주목한 의원입법안도 있다. 즉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현행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하였다는 비판의견을 수용하여, 동 법안은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308]

다.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신상정보공개에 관하여 여성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사의 신상정보를

---

306) 헌재 2015.7.30. 선고, 2014헌마340 등 병합
30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8208) 발의연월일 2015년 12월16일.
308)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7253) 발의연월일 2015년 10월16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공개여부는 법원이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죄질이 무거운 성폭력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상공개를 의무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의 법률안도 제안된 바 있다.[309]

라. 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최근 군대 내의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고등군사법원에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의 '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형법상의 성폭력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로 보아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군형법상의 성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한 의원법안이 제안된 바 있다. 동 법안은 군형법상 성폭력범죄를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어 동법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310]

제2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안 분석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으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012년 6월 21일 제안법안(1900229호)부터 2015년 11월 3일 제안법안(1917574호)에 이르기까지 모두 63건이다. 이 중에서 대안반영폐기는 24건, 폐기 3건, 그리고 임기만료로 35건이 폐기되었다.[311]

특히 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9월 당시 잇따르던 흉악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309)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6892) 발의연월일 2015년 9월18일.
310)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4175) 발의연월일 2015년 3월 6일
311)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최종접속일 : 2016년 5월 30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2년 12월 까지 국회차원에서 성폭력 방지와 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성폭력 방지 및 처벌 등 관련 58건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였다.[312] 이러한 점에서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중 성폭력,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형사특별법안은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 평가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관련 의원입법안의 주요쟁점은 처벌범위의 확대와 처벌정도의 강화로 나뉜다. 그리고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조정하거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축소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 처벌강화 – 구금형 및 벌금형 가중

2012년 당시 '김점덕 사건', '고종석 사건' 등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들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범죄 역시 더욱 강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강한 여론이 있었다.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잘못된 성의식을 조장하고, 이른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313]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제안되었다.

가. 구금형의 가중과 벌금형의 삭제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상영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가중하였다.[314]

---

312)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최종접속일 : 2016년 5월 30일)

313)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01663) 발의연월일 2012년 9월7일. (이하 본 장의 분석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출처는 모두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이다. 2016. 6. 1. 최종접속)

31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01663) 발의연월일 2012년 9월7일.

본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상영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여, 가중처벌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그런데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할 경우 양형상 벌금형에 상당한 사안의 경우 무죄가 되거나 과도한 구금형에 처해지는 결과에 이를 우려가 있다. 양형재량의 입법적 제한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구금형의 신설

또한 종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던 것에서 구금형을 추가하는 방안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315]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정책은 강력한 대응인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아동의 성폭력피해가 불가피하고, 음란물의 소지하는 행위가 본원적으로 없다면 제작이나 배포행위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음란물의 경우 제작으로부터 소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취지라 판단된다.

2. 처벌강화 – 처벌대상확대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이 제안된 바 있다. [316]

동 법안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한 벌금형

---

315)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2년 10월)

316)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7422) 발의연월일 2015년 10월27일.

을 상향가중하였다. 이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의문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현실은 직무상 신고하지 않기 보다는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고의무가 강화될수록 아동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뢰하고 지원을 요청할 기관,시설, 단체와 그 종사자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입법 과정에서 신고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단순히 벌금형 강화의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신고의 효과성과 은밀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형사제재 수단의 투입은 오히려 역효과가 예상될 수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3. 감독강화 – 처분대상 확대 및 처분요건 강화

2012년 사회적 충격을 준 "김점덕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 현실적으로 평생직업교육시설 등의 학원 역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취업제한시설로 관리되고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 지적을 반영한 의원입법안이 제안되었다. 동 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의 대상을 성범죄자 거주지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고지의 집행도 매년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범죄자 감독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317]

가.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의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에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개정은 이미 공개되는 선고형량에 부가하여 형벌 이외에 부과되는 보호처분인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

317)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4175) 발의연월일 2015년 3월6일.

터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한 읍·면·동 주민,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장에게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고지하여 주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고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본 법상 신상정보고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318] 다만 열람의지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개되는 인터넷 공개와는 달리, 우편고지에 의한 공개효과는 범죄자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특히 성범죄자의 가족에게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개로 인한 성범죄자의 가족은 다른 일반 범죄자의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나. 신상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대상 확대

아동·청소년 거주 유무에 관계없이 고지정보를 송부하도록 하는 개정안 역시 우편고지에 의한 공개효과는 범죄자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특히 성범죄자의 가족에게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이외에 아동·청소년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 교습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원·교습소로 확대하는 개정안 내용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일반 학원, 교습소 등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다수가 계속적으로 교습을 받거나 이용하는 곳으로서 이곳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동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처벌의 배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특기할 만한 관련 의원입법안으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법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의 처벌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있다.

---

318)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2년 10월

가. 성매매 청소년의 불벌 필요성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에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다.[319]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되지만, 그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동법 제38조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하지만,

319)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6340) 발의연월일 2015년 8월 7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동법 제39조, 제40조)

나. 처벌필요성의 검토

동 의원입법안은 임기만료폐기 되었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심각한 현실을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재논의될 만한 사안이다. 성매매에 나서는 아동청소년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출 등의 사정에 처해 있고 성을 사는 상대방 성인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순수한 피해자로서 규정하고 형사제재는 아니더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마저 당연 면케 하기에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제19대 국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취지의 법제화를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적극 수행한 점을 평가받을 만하다. 단순히 형사처벌 강화의 방향이 아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내 감독관리 강화, 피해보호 기관 및 시설의 확충의 방향을 잡고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문화, 합리화가 필요한 문제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소 결

1. 성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형사특별법안의 평가

성폭력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다양하다. 따라서 규율 방식 및 제도, 해석도 다양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성폭력범죄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 성인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이다. 따라서 기존 법률과 제도는 남성 성인 관점을 벗어나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범죄 관련 법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다.[320]

320) 박미숙 외, 성폭력범죄 구성요건 정비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7-8면

그런 측면에서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행위의 특정유형을 신설 범죄화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형사특별법이다. 관련 현안중의 하나인 성인대상 성희롱 문제는 성폭력 피해성이 부인될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범죄화할 대상인지에 관하여는 이론적 정책적 입장이 여전히 나뉜다. 사회여론을 수렴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처벌강화 관련 의원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벌강화의 근거를 관련범죄 및 재범증가에서 찾는 경우가 다수다. 관련범죄의 증가현상에 관하여 국민여론과 사회현안을 주시하고 입법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다만 단순히 구금형이나 벌금형의 상향조정을 거듭하는 입법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의원입법안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고려도 포함되어야 바람직한 개정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 사안의 경우 죄질의 중함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폭력대상 형사입법은 구금형의 가중을 통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내 감독처분 역시 처분대상을 확대하거나 처분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벌적 처분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규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례를 반영하기 위한 의원입법안도 다수 제안되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안의 평가

특히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중 성폭력,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형사특별법안은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 평가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원입법안의 주요쟁점은 처벌범위의 확대와 처벌정도의 강화로 나뉜다. 그리고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조정하거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축소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형사제재 수단의 투입은 오히려 역효과가 예상될 수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성매매 아동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으로부터도 보호하는 취지의 의원입법안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수한 현실을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9대 국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취지의 법제화를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적극 수행한 점을 평가받을 만하다. 단순히 형사처벌 강화의 방향이 아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내 감독관리 강화, 피해보호 기관 및 시설의 확충의 방향을 잡고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문화, 합리화가 필요한 문제영역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개정안에 나타난 형사정책적 방향은 처벌범위의 확대와 처벌정도의 강화, 부가처분의 확대가 특징이다. 분명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철저한 방지를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입법자는 당연히 법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요청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를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다. 최대한의 보장을 위해서 형사처벌의 확대와 강화 입법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체계적 입법이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법개정과 개정안이 계속되면서, 더 체계적 입법정책이 요청된다.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단편적으로 중첩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관련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정형과 형벌수단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성폭력범죄현실에 대한 객관적 성찰과 수사 및 양형 실무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 형사입법원칙과 정책추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제6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분석

김 정 연

제6장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분석

앞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성폭력 분야 형사특별법 분야 의원입법안 분석에 이어 본 장에서는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경향을 개관한다. 이에 터잡아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개정태양과 그 주요내용을 분석한다.

제1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경향 개관

형사법 관련 법률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대체로 행정법규에 규정된 벌칙규정, 즉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에 관련한 것들이다. 실제로 형사사법 분야 19대 국회 의원입법안을 보더라도 형법, 형사소송법, 성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을 제외한 기타 형사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로서 행정법규에 규정된 벌칙 규정에 관한 법률안의 비중이 가장 크다.

〈표 6-1〉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분류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	형법·형사소송법	성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기타 형사특별법 ·행정형벌 관련 법률
발의건수(건)	165	160	511
비율(%)	20	19	61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

법규에 있어서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정벌을 과하는 경우 입법자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을 선택하여 과할 수 있고, 그 입법목적이나 입법 당시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다.[321] 따라서 행정형벌과 관련한 법률안은 입법 당시의 사정 및 실정에 따라 결정되고, 특히 사회적 이슈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모습으로 발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및 공공안전에 관한 형사입법의 경우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322]와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323] 등 일련의 재난안전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다. 전반적으로 재난사고 발생의 예방과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는 여론이 반영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규정은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무부과의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법규 관련 규정은 행정현상의 변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무부과 규정 및 처벌규정의 신설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실제로 행정법규 관련 규정에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형태의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하에서는 행정형벌과 관련한 법률안의 개정 태양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행정형벌 의원입법안들이 얻은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

321)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90 결정

322)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3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선박증축, 화물과적 등 복합적 원인과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사실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주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19135606985, 2016. 6. 1. 최종검색).

323)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정부의 초기 대응실패 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많은 사망자와 환자를 발생시키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신종 감염병으로 국가 방역체계 및 국가 감염병관리체계 방안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http://www.kfdn.co.kr/sub_read.html?uid=26521, 2016. 6. 1. 최종검색).

제2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개정 태양

1. 단순한 형식적 개정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중에서 단순한 형식적 개정의 형태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영, 타법 개정 반영, 벌금형의 상향, 언어순화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영

행정형벌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입법안의 발의가 다수 보인다.

특히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324]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법규 중에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의원입법안의 발의가 다수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발의안이 이에 해당한다.[325] 또한 장사 등에 관한

---

324) 헌법재판소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결정 등).

325)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26533, 발의연월일 2012. 11. 1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발의안도 이에 해당한다.[326]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규정 가운데 사과문 게재 명령 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327]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위헌적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의 사과문 게재 부분을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32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상태의 제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입법자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위헌적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개선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M2N1M1U1D9K1R6T0S6I5L7I3H3B1&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26)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317, 발의연월일 2014. 12. 29.(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T4O1J 1W2S4Q1D0H1B5L5A1I3V4N8&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0710, 발의연월일 2012. 7. 1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W2Z0 H7 Y1Z7 M0O9B3P0I2Y9I6R0W2&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27)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보도한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결정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처벌 조항은 형사처벌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사과문 게재 명령 외에도 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사과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과의 '권고'를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목적, 즉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 형성 등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가8결정).

328)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409, 발의연월일 2015. 8. 1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A5G0Y8E1J2Q1R6K5O2Q5U2L2F4C3&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부분 입법자의 입법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의원입법안은 입법자의 권한행사이자 의무이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영은 해당조문의 위헌적 요소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단순반영에 그치는 법률안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적극적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라 소극적 입법권의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 단순 벌금형 상향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대표적인 형사처벌 수단으로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의 경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벌금형을 보다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특히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 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는 형태의 법률안이 형사제재 관련 법률안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29], 골재채취법[330], 국민연금법[331], 내수면어업법[332], 농지법[3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334], 선박직원법[335],

---

329)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8672, 발의연월일 2013. 12. 2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M3S1T2I2Q0I1D0P1G1Z1D1X3C2I1&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30)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908355, 발의연월일 2013. 12. 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W3H1M2A0Y5R1N6F0F4F3D4L7R0S2&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31)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7847, 발의연월일 2013. 11. 1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M3H1H1F1D8H1O8V0Z6X0J6L6U9O9&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32)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776, 발의연월일 2014. 5. 2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W4L0V5K2I9Y1 P7E3Q3A2T8T8I1P5&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33) 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7187, 발의연월일 2013. 10.

여권법[336], 유선 및 도선사업법[337], 자동차관리법[3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33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340], 하수도법[341]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 만원의 비율로 단순 개정하는 형태의 발의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발의된 의원입법안들 중 벌금형 상향과 관련한 대다수의 법안들이 벌금액을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국회사무처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은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게 규정하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342]를 참조하여 개별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일반행정의무 위반범죄에 있어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기준으로 국회사무처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

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M3E1Y0D0H7Z1M6J5Q5Z2D6T5B3C0&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34)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7405, 발의연월일 2013. 10. 3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D1B3E1Q0U3Y1R1Z8B0H2S4Q1X7L7O5&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35)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368, 발의연월일 2014. 4. 3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Z4S0D4F3T0G1Q6J0A9C5C9M6U8E2&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36)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7864, 발의연월일 2013. 11. 2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Y3G1E1O1K9N1C1H3D9K4B5I3N0O5&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37)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43, 발의연월일 2015. 10. 2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Z5Z1Y0C2W8S1Y1Q3T1I3X2V2T0W6&ageFrom=20&ageTo=20, 2016. 6. 1.최종검색)

338)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373, 발의연월일 2014. 2. 1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N4N0V2Y1Y3N1R5M5Z6K3H1W3L0Y2&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39)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7827, 발의연월일 2013. 10. 3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3P1T1S1H8C1X7B2P0L2D9C3X9J4&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4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390, 발의연월일 2015. 10. 2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X5C1K0T2O6M1A6T5R7A3A6L6S9J5&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41)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145, 발의연월일 2013. 11. 2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D3F1P1C2D7N1X8F3F2O3E4K5S1W2&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4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분석자료 1',2009년 7월 28일자, 4면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존중하고 가구별 평균 소득을 감안한 징역 1년당 1천만원 또는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노임을 고려한 징역 1년당 2천만원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43]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률 제정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벌금형을 상향하도록 하는 의원입법발의안은 적절한 입법권의 행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벌금형의 일괄 상향 법률안은 양적인 입법실적 및 성과를 위한 입법으로 보여질 수 있다. 나아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벌금형의 경중과 특수성, 해당 범죄의 성향과 벌금형의 억지력,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해야 하는바, 일률적인 벌금형 상향의 보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언어순화

행정형벌 관련 행정법규 의원입법안들 중에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형식적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내구연한(耐久年限)'은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이를 순화하여 '사용가능기간'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344]

또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45] 그 외에도 장사

징 역	벌금형 범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343)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13, 81면 이하 참조

344)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746, 발의연월일 2015. 9. 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X5T0S9M0M4V1A7B4L7B4H8Z5Z5I2&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45) 정병완 의원 대표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420, 발의연월일 2014. 12. 3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S4F1F2C3R0Z1K6F3Y7H4I6K1J9F5&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용어순화 차원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3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치', '장치물품', '장치기간', '장치 장소', '장치기간경과물품', '지정장치장'을 각각 '보관', '보관물품', '보관기간', '보관 장소', '보관기간경과물품', '지정보관장'으로 개정하려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불구'라는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348]

이처럼 의원입법발의안에 비교적 단순한 언어순화적 개정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입법실적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꿈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적인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의 장애자·정신병자 및 불구 등의 용어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언어순화 의원입법발의안의 경우 형식적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의원입법의 한계로 인식될 여지가 있지만,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일반국민의 법령 이해도 고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

346)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317, 발의연월일 2014. 12. 2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T4O1J1W2S4Q1D0H1B5L5A1I3V4N8&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47)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251, 발의연월일 2015. 5. 2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P5Z0E5T2Z2J1W7J5Q3V2O1M0Y2T7&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48)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287, 발의연월일 2015. 3. 1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I5H0G3Y1U3E1U6U2E8Y0H3L2H1H6&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2. 실질적 범죄요건의 개정

가. 새로운 의무부과 및 행정형벌 규정의 신설

행정법규 관련 규정은 행정현상의 변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무부과 규정 및 처벌규정의 신설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영역이다. 실제로 행정법규 관련 규정에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형태의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예를 들어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에 해당된다.[349] 전자담배의 성분은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니코틴 함유량 및 전자담배 흡연 시 기체성분에 포함된 니코틴과 주요성분의 함유량으로 표시하도록 명시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50]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51] 인터넷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포나 화약류 등 폭발물의 사적 제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352],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이후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353]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349)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012, 발의연월일 2014. 12. 1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C4W1E2Q1O0K1D0J2C4V5A9T9A6N3&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50)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191, 발의연월일 2015. 5. 1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H5Z0F5D1D9N1A5Z4R7P5E2H5U5O6&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51)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014, 발의연월일 2014. 6. 2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I4S0P6F2Z7I1I5L3O1I0R7G4X6V2&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52)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370, 발의연월일 2013. 12. 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N3J1O2B0D6A1D4N2V1U1M4G0A7H6&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53)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560호, 발의연월일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사건 이후에 행정법규 관련 행정형벌 규정들이 신설된 경우가 많은데, 자칫 사후약방문식의 입법안으로 단편적 개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행정법규 관련 새로운 의무부과 규정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규정의 신설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라 하더라도 자칫 과잉금지원칙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행정형벌 관련 처벌완화

행정법규 관련한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의 신설은 다수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의 행정형벌규정을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안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행정형벌 관련하여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안도 처벌강화 입법안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원입법안 중에서 행정형벌 규정의 처벌완화 내지 비범죄화 의도로 볼 수 있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농어업인과 통행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통신용 전주를 농지전용허가 제외사유로 하고자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제재의 처벌완화 법률안으로 볼 수 있다.[354] 이외에도 환자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에 해당한다.[355]

폐기물 관련하여 과도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형벌 규정의 비범죄화 의도로 볼 수 있다.[356] 근로조건 명시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2015. 11. 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T5C1N1Y0U3H1P7D1A2Y3A9L2F4M9&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54)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737호, 발의연월일 2014. 9. 1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L4V0L9K1V7V1I6J5O8Z0R5G9S4E7&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55)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021, 발의연월일 2014. 6. 2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L4E0E6J2X7D1X6A5K7H4Q1W7K1N7&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56)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269, 발의연월일 2014.

제재를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357],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미교부 하는 경우 벌금 대신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358]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59] 등도 이에 해당한다.

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정벌을 과하는 경우 입법자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을 선택하여 과할 수 있고, 그 입법목적이나 입법 당시의 실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360]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을 선택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상 바람직하다. 특히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불필요하게 형사범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법률과 실태에 따라 실효적 제재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유사사항에 대한 중복적 입법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중에 상호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들을 규정한 법률안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법률안들은 대안반영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원입법안은 내용적으로는 대안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대안반영 폐기로 집계된다.[361] 행정형벌 관련하여 유사사항에 대한 중복적 의원입법

---

12. 2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X4P1Q2V0S2H1O5V4W0V2V4V3Z9W4&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57)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754, 발의연월일 2015. 9. 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F5I0N9D0B4D1I8E0G6N1P9X0X1T0&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5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094, 발의연월일 2015. 5. 1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5M0F5S1I1F1P0Z5H6R5B1M6Q9L3&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59)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604, 발의연월일 2015. 1. 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X5X0E1S0H9P1K7A4N4V0O3E6W7I7&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60)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90 결정

361) 한편으로는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은 형식적으로는 폐기되는 법률안이지만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그 내용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본래 입법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달성된 것이므로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양곡과 수입 양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사사항에 대한 중복적 의원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362] 이러한 의원입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363]에 반영되어 모두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의원입법안이 중복 발의되었다.[364] 이러한 의원입법안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365]에 반영되어 (대안

내용적으로 가결된 법률안과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대부분의 입법이 위원회 대안 가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을 법률반영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국회사무처 보도자료,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국회의 입법실적이 낮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2015년 6월 24일자).

362) 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682, 발의연월일 2014. 9. 1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U4U0M9I1V5Q1S4L2V1A5X8T8G7J7&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122, 발의연월일 2014. 7. 1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Y4F0S7A1G1E1U3G5N1K1N9H7H6H7&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091, 발의연월일 2014. 7. 7. (http://likms. 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L4Z0F7H0U7B1R5R2U6I4E7R1N4I5&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012, 발의연월일 2014. 4. 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4Q0F4O0A3V1N1C0P7R1D9T9R7J1&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978, 발의연월일 2014. 4. 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Z4R0A4U0O1Q1B5T2E1Z2K9J3C2W6&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714, 발의연월일 2014. 3. 1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Y4Q0P3S1Q3E1E6K1O4M2V8C4C9O4&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6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2939, 발의연월일 2014. 12. 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A4J1P2O0K1O1B1C2K3T0U1K1C5V3&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64)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156, 발의연월일 2014. 7. 1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G4F0J7B1F5D1W1U4F4Q1E5W4G2M9&ageFrom=20&ageTo=20, 최종검색 2016. 6. 1.)/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014, 발의연월일 2014. 6. 2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I4S0P6F2Z7I1I5L3O1I0R7G4X6V2&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65)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18087, 발의연월일

반영) 폐기 되었는데, 위 위원회 제안에는 자동차관리법 관련 다른 의원입법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66]의 경우 담배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367]의 경우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친고죄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복적인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위 의원입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유사사항에 대한 중복적인 각 의원입법안의 발의는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민의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중복적 발의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특히 동일사안에 대해 사회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안의 발의라는 점에서는 적극적인 의원입법 활동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다만 유사사항에 대한 중복적 발의현상은 국회의원들의 입법실적 쌓기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입법 발의 건수 위주의 정량평가에서 탈피하여 질적 평가가 가능한 입법 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15. 12. 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B5R1H1Q1I7S1X4U2D1K5C1J4D5O9, 2016. 6. 1. 최종검색)

366)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047, 발의연월일 2014. 10. 1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X4O1Q0O1X5T1U8Y0F0A3O1X8A6X7&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693, 발의연월일 2014. 9. 1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K4U0S9D1O5Y1W7Y4W2O5R3G7F2P4&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607. 발의연월일 2014. 3. 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B4Q0R3K0B4U0G9N5Y8O2Y3E4E9R0&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67)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259, 발의연월일 2014. 4. 2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T4A0M4Y2L1 K1L7J4P8C2V2Q3J6S2&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975, 발의연월일 2014. 4. 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Y4O0X4Z0D1V1L3S2R0M2I9C4F1P5&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21, 발의연월일 2014. 3. 2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A4L0D3A2O0C1Z7J0M5V4Y6R6C2B5&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제3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주요 내용

1. 재난안전 관련 의원입법안

재난안전 및 공공안전에 관한 형사입법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 일련의 재난안전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다. 전반적으로 재난사고 발생의 예방과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는 여론이 반영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 관련 의원입법안 중 행정법규 내지 행정형벌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일부법률개정안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선박의 구조변경에 관한 검사의무 확대 및 처벌강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368]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36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993, 발의연월일 2014. 12. 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S4U1J2W0S9 E1O6D4H5O5H4F0Y3Z7&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936, 발의연월일 2014. 12. 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R4K1W2U0S1Q1V2P3W9Q0Q2Y7N7K2&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570, 발의연월일 2014. 11. 2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E4N1K1Q2N0U1B0F3U7A0I9E4O6J8&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958, 발의연월일 2014. 10. 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M4A1A0D0F2I0Q9I2A6T5Y2E9V1H6&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750, 발의연월일 2014. 9. 19. (http://likms. 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Y4R0M9A1Q9A1T0Z5J8N2S4Y2H0L2&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007, 발의연월일 2014. 6. 2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A4H0A6L2H6O1V7A3W2N4M2A1C3W4&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368, 발의연월일 2015. 3. 1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D5V0L3H1F9A1R1R2I2X1A5K7H3I1&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554, 발의연월일 2014. 5. 1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H4F0L5K1G2U1Z5J2U4W4B9Z9L8B3&ageFrom=20&ageTo=20, 최종검색 2016. 6. 3.)/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276, 발의연월일 2014. 4. 2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G4E0M4Z2M3M1O5D5C9F3F0P8B3X3&ageFrom=20&ageTo=20, 2016. 6. 3.최종검색)

감염병 관리시설 내 시설 설치 등의 규정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종합병원 내 감염병 관리시설에 음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메르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해 출입국 관리 시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원입법발의안이 상당수 발의되었다.[369]

한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담양 펜션 화재 등의 크고 작은 사고 발생과 맞물려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처벌강화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입법안들이 발의되었다.[370]

2. 부정부패 관련 의원입법안

부정부패와 관련한 형사입법의 경우 공직부패, 민간부패, 몰수추징,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규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부패척결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행정법규와 관련한 민간부패 영역에까지 강한 부패척결 의지를 드러내는 입법안들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부패 관련 의원입법안 중 행정법규 내지 행정형벌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원입법안을

369) 경향신문 2015년 6월 23일자 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32205165&code=910402, 2016. 6. 3. 최종검색)

370)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820, 발의연월일 2015. 6. 2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H5Y0O6O2O9J1N 0E4Y0N3G8F3E1O6&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857, 발의연월일 2015. 4. 2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Z5I0I4N2S3W1F7S4H2T5M3T9T2G3&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387, 발의연월일 2015. 3. 20. (http://likms.assembly.go.kr/ bill/billDetail.do?billId=PRC_Q1Z5X0I3A2A0K1I5P3Y1W3I2W6C2R4&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815, 발의연월일 2014. 6. 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H1G4N0X6C0E9N1N5P4B0P3J0U2B1E1&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424, 발의연월일 2014. 5. 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L4 G0T5U0R1Y1Z1Q2Z4T3N3V9L8M3&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확인할 수 있다.[3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다.[372]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데 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를 반영한 발의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정부패 관련 입법안 중 각 행정법규에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규정에 관한 발의안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및 지역건축센터 등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려는 내용[37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협회 위탁업무 수행 시 벌칙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37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375] 등을 포함하고 있다.

---

371)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351, 발의연월일 2015. 10. 2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T5E1O0G2R3K1K8H1B6M5L1I5L2J7&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378, 발의연월일 2014. 12. 2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P4Q1L2T2Y9P1I8I3W1S4K7A5A0A7&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72)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379, 발의연월일 2014. 12. 2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S4Y1X2T2N9E1X8E3W3S3S0V2M1Z0&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713, 발의연월일 2014. 9. 1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V4N0J9D1I6R1S6S3A6F1H6Z0K1J0&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73)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820, 발의연월일 2015. 6. 2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H5Y0O6O2O9J1N0E4Y0N3G8F3E1O6&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74)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360, 발의연월일 2014. 11. 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G4Z1W1O0V7H1S5Y0H7C4M8G2X5A7&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7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956, 발의연월일 2015. 11. 3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Q5C1F1U1R8H2D0K3J5M5P6S3T3D6&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 식품안전·보건 관련 의원입법안

정부가 식품안전 확보를 통한 선진강국 실현을 국정과제와 그 실천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식품관련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식품안전 및 건강, 보건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안 중에서 식품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발의안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보건 관련 의원입법안 중 행정법규 내지 행정형벌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확대[376]하거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377]의 발의안을 확인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양곡과 수입 양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378]

---

376)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567, 발의연월일 2015. 1. 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B5C0W1P0T7E1J6D2G0X5C0S4O6V8&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77)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204, 발의연월일 2014. 4. 1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I1B4P0Q4U1T6K1W4Q1Y8H2K3E2Y9B7&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736, 발의연월일 2012. 9. 11. (http://likms.assembly.go.kr/bill/ billDetail.do?billId=PRC_M1C2F0S9N1Q1J1U8R1W4K5I3Y2B8I2&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78) 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682, 발의연월일 2014. 9. 1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U4U0M9I1V5Q1S4L2V1A5X8T8G7J7&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122, 발의연월일 2014. 7. 1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Y4F0S7A1G1E1U3G5N1K1N9H7H6H7&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1091, 발의연월일 2014. 7. 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L4Z0F7H0U7B1R5R2U6I4E7R1N4I5&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012, 발의연월일 2014. 4. 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4Q0F4O0A3V1N1C0P7R1D9T9R7J1&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부정·불량 식품 등의 범위를 확대하거나[379]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380]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381] 내용의 발의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원입법안들은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검출, 식품 이물사고, 식중독 사고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중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담배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382], 담배성분의 표시에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383], 전자담배의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384]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원입법안들은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보인다.

안 의안번호 1909978, 발의연월일 2014. 4. 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Z4R0A4U0O1Q1B5T2E1Z2K9J3C2W6&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714, 발의연월일 2014. 3. 1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Y4Q0P3S1Q3E1E6K1O4M2V8C4C9O4&ageFrom=20&ageTo=20, 2016. 6. 1. 최종검색)

379)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028, 발의연월일 2015. 7. 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T5V0D7A0T9D1Z0B1T7J4E2L6P1Y4&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80)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158, 발의연월일 2013. 5. 2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E3X0X5Y2Z8O1O7K0L2N5B8D7X1N9&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81)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1941, 발의연월일 2012. 9. 2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W2X0U9I2N5A0Y9Z5N9E0L6G3S6N2&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82)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4443, 발의연월일 2015. 3. 2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Q5P0X3D2Z6O1T0W5P6E3K1H6V2E7&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83) 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773, 발의연월일 2015. 2. 2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K5D0F1V2G2Y1G5G0F1I3E4F8P2L5&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384)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349, 발의연월일 2014. 11. 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I4Y1U1M0S7B1O3M2E6B0D0Z2V0W8&ageFrom=20&ageTo=20, 2016. 6. 3. 최종검색)

제4절 소 결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들의 단순 개정 태양을 살펴보면,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의원입법안은 입법자의 권한행사이자 의무이행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단순반영에 그치는 법률안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소극적 입법활동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단순 벌금형 상향 의원입법안은 법률 제정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벌금형을 상향하도록 하는 의원입법발의안으로 적절한 입법권의 행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벌금형의 일괄 상향 법률안은 양적인 입법실적 및 성과를 위한 입법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한편, 단순한 언어순화 의원입법 발의안의 경우 형식적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의원입법의 한계로 인식될 여지가 있지만,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일반국민의 법령 이해도 고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행정법규 관련 규정의 특성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는데, 행정현상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이고 시의적인 입법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규 내 강력한 처벌규정의 신설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자칫 과잉금지원칙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유사사항에 대한 중복적인 각 의원입법안의 발의는 동일사안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안의 발의라는 점에서는 적극적인 의원입법 활동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다만 유사사항에 대한 중복적 발의현상은 국회의원들의 입법실적 쌓기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입법 발의 건수를 위주로 한 정량평가에서 탈피하여 질적 평가가 가능한 입법 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안 중 행정형벌 관련 법률안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 일련의 재난안전 사고발생과 관련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그리고 부패척결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행정법규와 관련한 민간부패 영역에까지 강한 부패척결 의지를 드러내는 입법안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품관련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식품안전

및 건강, 보건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날로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의원입법안 중에서 식품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정벌을 과하는 경우 그 입법목적이나 입법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형벌과 관련한 법률안은 입법 당시의 사정 및 사회환경에 따라 결정되고,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형태로 발의될 수밖에 없다.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회환경의 변화 및 시대상황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제7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결론 :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성과와 개선방안

김 한 균

제7장

결론 :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성과와 개선방안

본 연구는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19대 관련 의원입법안 현황을 개관하고, 한국과 미국의 의회 입법 지원제도를 비교법제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형법 및 형사소송법, 성폭력분야 형사특별법, 행정형벌 관련 법률의 의원입법안의 경향과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장 결론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 보고, 이를 근거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의원입법을 위한 개선방안, 근본적으로 형사입법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본다.

제1절 논의의 정리: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1. 제19대 국회 형사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의 현황

첫째, 전체 법안 중 87%에 해당하는 법률안이 의원발의되어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경우도 조사기간까지 발의된 법률안의 수가 836건에 이른다.

둘째,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가결된 법률안의 비율이 전체 법률안의 가결률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셋째,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중 처벌강화를 위하여 발의된 법률안이 88%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엄벌주의 경향은 법정형 상향, 새로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의원

입법안 내용으로 실현되고 있다.

2. 의회입법 지원제도의 현황

첫째, 미국 의회조사국은 법안의 발의와 심사 및 표결에 이르기까지 입법 관련 전단계에 있어서 의원 개인과 의회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미국 의회조사국은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적시성의 유지를 위하여 보고서 등 발간물의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 의회조사국의 초선 의원과 의원 보좌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 프로그램은 정보 전달을 주도적으로 행한다는 측면에서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모델로서 참고할 만하다.

넷째, 미국 연방의회조사국과 달리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미국 연방의회조사국이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때, 입법평가의 수행 역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연구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지원 서비스가 법률안 제출전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연방의회조사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 의원입법지원 범위와 내용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3. 형법 및 형사소송법관련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첫째, 형법·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들 중 상당수가 단순한 언어순화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목적 혹은 일반 국민이 당해 법률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상당수 유사 내용의 중복적 의원입법안들이 발의된 점은 즉각적 입법대응이 필요한 영역에서 입법기관내 공감대 형성 과정이 존재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단순히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간접적인 반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형법 관련해서는 배임·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나 뇌물관련 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자·중독자에 의한 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이 반영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여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형사소송법 분야에 있어서는 인권보장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적 반영이라는 측면이 요청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성폭력분야 형사특별법관련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행위의 특정유형을 신설 범죄화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형사특별법이다.

둘째, 성인대상 성희롱의 범죄화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처벌강화의 근거를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및 재범증가에서 찾는 의원입법안은 관련범죄의 증가현상에 관하여 국민여론과 사회현안을 주시하고 입법적으로 반영하려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최근 성폭력대상 형사입법은 구금형의 가중을 통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내 감독처분 역시 처분대상을 확대하거나 처분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벌적 처분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단순히 구금형이나 벌금형의 상향조정을 거듭하는 입법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조정하거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축소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형사제재 수단의 투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만 한다.

여섯째, 특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관련법은 최근 수년간 단편적인 법개정과 개정안이 계속되면서, 보다 체계적 입법정책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에 일련의 개정결과 산재해 있는 관련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정형과 형벌수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5.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첫째,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회환경의 변화 및 시대상황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단순 벌금형 상향 의원입법안은 법률 제정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벌금형을 상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권 행사라 할 수 있다.

셋째, 언어순화 의원입법발의안의 경우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일반국민의 법령 이해도 고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행정법규상 강력한 처벌규정의 신설은 과잉금지원칙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단순반영에 그치는 법률안이 다수여서, 입법활동의 소극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유사사안에 관한 중복적 발의현상은 국회의원들의 입법실적 쌓기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입법 발의 건수 위주의 정량평가에서 탈피하여 질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 마련이 바람직하다.

제2절 효과적·전문적 의원입법을 위한 개선방안

1. 형사입법 규범적 원칙의 구체적 정립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제·개정 내용은 형사제재, 형사절차, 행형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체법적으로는 단순용어변경부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요건의

개정이 내용일 것이며, 형사제재에 있어서는 구금형기의 변경, 벌금액수의 변경, 공무원 의제규정의 조정에 따른 변경, 구금형의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개정이 내용일 것이다. 절차법적으로는 공소시효, 압수수색 절차, 친고죄 규정과 특히 피해자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내용일 것이다. 행형법적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 일부집행유예, 형의 실효, 교정행정 관련 내용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정책적 의미를 성찰해 본다면, 형사제재의 신설이나 법정형 상향가중, 벌금형의 구금형으로의 대체, 법관의 감경재량 축소 경향은 당해 범죄사안에 관한 사회적 평가의 엄중화와 범죄방지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형사제재 중에서 비범죄화, 법정형의 하향감경, 구금형 이외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의 추가, 법관의 양형재량 확대 경향은 당해 행위사안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와 인권증진을 향한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것이다.

형사입법, 특히 의원입법에 관한 형사입법정책적 평가는 통합적 관점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엄벌주의 경향은 인권침해 위험이 확대되고 형사사법자원의 부담이 커지며, 오히려 형벌효과의 저하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현안으로서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학대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엄벌의사가 형사입법적으로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신종범죄의 등장이나 기본법이 적절히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관하여는 기본법-특별법 체계의 정합성에 앞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개별 특별법 입법도 마땅히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거나 대안을 찾거나 또는 유보할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지점은 마땅히 국회다.

그렇다면 의원입법을 포함한 형사입법 내용을 정당하게 근거지우는 원칙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규범원칙은 일반적 입법원리에 따라 정립·제시해야 하며, 또한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단순반영을 넘어 형사입법에 있어서 헌법적 제한원리인 책임원칙, 비례성원칙의 구체적 내용이 정립될 유용한 기회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삼아 당해 법안의 개정에 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연구와

실무의 기여, 국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면서, 그 성과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형법 고유의 제한원리인 법익보호원칙이나, 형벌의 최후수단성 내지 최소투입성은 엄벌주의 경향, 과잉형벌의 우려, 행정형벌 확대여부에 관하여 현실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하고 예측곤란한 변화양상 속에 형법과 형사특별법 체계정비 작업은 전통적으로 법무부가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 정비의 방향과 내용에 관하여 사회 각 분야 국민의 의견과 성찰이 반영될 통로가 더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다름아닌 국회의원의 적극적 입법활동으로서 실현될 수 있다.

2. 입법절차상 개선방안

본 연구는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내용적 측면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원입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한계는 입법안 작성과 제안과 심의, 그리고 최종적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 입법기술과 절차상의 한계가 반영된 부분도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입법절차와 기술적 측면과 함께 의원입법 성과평가지표의 구성 문제를 또한 전문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나, 본 연구는 주로 결과적 측면인 법안내용에 한정해 논의한 입법정책연구로서의 한계가 있다.

다만 제19대 국회의 임기종료와 제20대 국회개원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제19대 국회의 입법활동을 회고하면서 현재 논의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절차적 개선방안, 의원입법 실적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동향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향후 본격적 입법정책 연구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가. 입법지원과 연구기반의 제도적 정립

앞서 제기한 바, 형사입법의 근거 및 제한 원칙이 국회 입법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의 전문성 보완, 연구와 자료 지원, 평가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모범례에 따라 법안의 발의와 심사 및 표결에 이르기까지 입법 관련 전단계에 있어서 개별 의원과

국회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국 연방의회조사국의 모범례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안 평가와 정책대안 조사·연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연간 100-200건에 달하는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 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입법연구회의 전문적 연구기능과 협업하는 제도적 기반구축도 검토필요성이 있다.

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내실화

2016년 6월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복수의 소관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를 복수로 둘 수 있게 되었다. 통과율이 높은 정부입법안 심사를 면밀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국회의 입법권을 내실화하게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미 제15대 국회에서 1988년에 각 상임위마다 법안 및 예결산, 청원에 대한 심사 기능을 모두 갖춘 상설소위를 3개씩 신설하는 국회 규칙을 제정한 바 있지만[385] 제19대 국회까지도 사문화 상태였던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의 복수화, 상설화를 포함하여 상임위 내실화 방안으로는 상임위원회 배정에서의 전문화 보장과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 활성화가 제시된다. 특히 1998년 '상설 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설소위 직무에 대해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와 기타 관련 직무를 행한다'고 법안 및 예산안 심사 권한을 명시하고, 상설소위원장의 임기를 상임위원장 임기와 같은 2년으로 규정했다.[386] 제20대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형사사법 분야 입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될 것이다.[387]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처벌과 성폭력피해자 보호관련 법개정을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상설 소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85) 국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104호, 1998년 8월 29일
386) 조선일보 2016년 6월 3일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3/2016060300710.html?sukbo 2016년 6월 4일 접속)
387) 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 2016년 6월 7일 접속

다. 형사입법평가 제도화

제19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가결률이 총 1만7,822건 중 7,429건(대안 반영 폐기 포함)이 처리되면서 42%를 기록했다. 17대 국회(56.8%), 18대 국회(53.5%)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반면 19대 국회 발의 건수는 17대(7489건), 18대(1만3913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법안 가결률이 높다고 입법 성과가 좋은 국회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법안 가결률에 의한, 즉 양적인 국회의원 입법 성적 평가는 무리다. 이른바 '실적 채우기용'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388]

의원들이 법안 가결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용어 변경 등 단순 개정 입법과 대안 반영을 염두에 둔 유사법안 제출이다. 단어만 바꾸는 기술적인 개정 작업이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법정형 정비 법안도 의원들이 선호한다.[389]

법정형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형사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입법이 실적쌓기가 되어서 아니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법안 발의단계부터 입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고 보완가능한 방향으로 지원하는 형사입법평가 제도 내지 입법영향 평가제도[390]의 도입·운영이 필요할 것이다.[391]

---

388) 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 2016년 6월 7일 접속

389)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 2016년 6월 7일 접속

390)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2, 2002, 55-80면; 박영도.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방안, 공법연구 38, 2009, 215-236면 ; 김수용,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 검토, 공법연구 39, 2011, 175-206 면.

391) 조선일보 2016년 6월 1일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 05/31/2016053102339.html 2016년 6월 7일 접속)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대현 외 6인 공저, “CRS 미국의회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2009년 1월.

김대현, “미국의회조사처(CRS)의 조직과 운영-국회입법조사처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보 창간호, 대한민국국회, 2008

김수용,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 검토”, 공법연구 39, 2011, 175-206면.

김형성, “입법지원기구의 비교법적 검토-국회입법조사처와 CRS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09년 2월.

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범죄통계, 2012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13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분석자료 Ⅰ”, 2009년 7월 28일자

박미숙·김은경·김성돈, 성폭력범죄 구성요건 정비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2, 2002

박영도,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방안”, 공법연구 38, 2009

안국찬,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정책평가 기능의 활성화 방안”,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6년 6월.

이승현,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와 정보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년 1월.

이인석·임정엽, “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

이종선, “의회도서관의 입법지원기능: 한국과 미국, 그 유사점과 차이점”, 국회도서관보 Vol. 321, 2006년 1월/2월.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임종훈·원시연·박정용, “일본·미국·캐나다 출장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09. 12. 13.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9139&cmsCd=CM0012 2016. 6. 7. 최종검색)

전진영, “세계의 의회조사기구 Ⅰ: 미국의 의회조사처”, 조사와 정보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년 1월.

정극원,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방안”, 공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년 2월.

최영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년 6월.

탁희성·김대근·김유근·김성돈,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한국갤럽, “범죄자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Gallup Report 2012. 9. 11.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330)

_____,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70호”, 2015년 7월 2주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670)

함성득·임동욱, “미국의 입법지원 전문화 경험과 현안-미의회조사국(CRS)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형사입법연구회,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홍종호·윤춘식·이호연·고은영, “201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3년 12월.

2. 외국문헌

Charles Doyle, “Mail and Wire Fraud: A Brief Overview of Federal Criminal Law”,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7. 21. (https://www.fas.org/sgp/crs/misc/R41930.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5", January 2016, (https://www.loc.gov/crsinfo/about/crs15_annrpt.pdf)

Ida A. Brudnick,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d the American Legislative Proces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4. 12. (https://fas.org/sgp/crs/misc/RL33471.pdf)

John Rollins/Liana Sun Wyler, "Terrorism and Transnational Crime: Foreign Policy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6. 11. (http://www.fas.org/sgp/crs/terror/R41004.pdf)

John Rollins/Liana Sun Wyler/Seth Rose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ransnational Crime: Security Threats, U.S. Policy, and Consideration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1. 5. (http://www.fas.org/sgp/crs/terror/R41004-2010.pdf)

田中英夫, 英美法辞典, 東京大學出版会, 2000年.

3. 신문기사

김청환, "미, 청문회 연중수시로 개최...국정 마비된 적 없어", 한국일보 2016. 5. 24. (http://www.hankookilbo.com/v/e933428dda1042eb9f28d788e67e24f1)

김태훈·정선형, "뒤죽박죽 성범죄 특별법...판사도 헷갈리는 죄명", 세계일보 2016. 4. 25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599.html?OutUrl=naver)

연합뉴스 2016. 5. 20.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냐 유지보완이냐 의견 '팽팽...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설문서 "폐지" 49.9%·"유지보완" 49.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096000004.HTML?input=1195m)

식약일보 2016년 6월 1일자 기사 (http://www.kfdn.co.kr/sub_read.html?uid=26521)

경향신문 2015년 6월 23일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html? artid=201506232205165&code=910402)

조선일보 2016년 6월 1일자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1/2016053102339.html)

조선일보 2014년 4월 14일자 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19135606985)

4. 기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573호 심사보고서(2014년 12월)

국회사무처, 제33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2015. 7. 2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B5W0V3C2U5D1Q6N0D9W2S5G4I5Y6)

_____, 제33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5호, 2015. 7. 2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X5V0L7B2Z4D1Q3S0M0S3Z0A3O1N5)

_____,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호, 2015. 11. 2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Q3K0Y5G1J5Y1Y4P0A9A2B8M0Z3Z9)

_____,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2015. 12. 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S5F1O1A2P7T2V0U2I5L1Z3Y8K2Z0색)

_____,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호, 2015. 11. 10. 9~10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K5Z0T7Y1M4A1A7Q5L0J5V1S1R9D9)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2년 10월)

임중호,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5.), 2014. 4.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O3E1O2Q0D5B1O7C0V4O3U4H7W2L7)

_____,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4. 3. 25.), 2014. 4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K4C0A3N2T5W1N5X2M8D4W7M0B3K0)

국회입법조사처(http://www.nars.go.kr/)

미연방법전 검색(http://law.justia.com/codes/us/2013/)

미연방의회(https://www.congress.gov/bill/)

미연방의회도서관(https://www.loc.gov/crsinfo/)

Stephen Young, "Guide to CRS Reports on the Web", 2006. 9. 17. Law and Technology Resources for Legal Professionals (http://www.llrx.com/features/crsreports.htm)

Abstract

Critical Review of Criminal Justice Bills 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Kim, Han-kyun·Lim, Jung-ho·Kim, Jeong-yeon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legislative work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2012-2016), focused on the criminal justice bills. By studying the accomplishment and limits of such legislations, it is expected to clarify principles for systematic legislation and to propose measures for effective law-making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The research begins with introduction on the necessity of reviewing criminal justice bills, which are ever more increasing during the 19th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Those bills reflect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of criminal justice policy.

Chapter 2 analyses statistical data on the criminal justice bill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men, which show the general idea on the legislative work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Chapter 3 compares the support systems on legislation both in Korea and the US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apter 4 analyses those amendment bills of the Criminal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This is followed by chapter 5, which deals with bills of special criminal laws, especially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Violence. Chapter 6 also deals

with those bills of special criminal laws, mainly providing criminal sanctions on the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By conclusion, the research defines the accomplishment and limits of the legislative work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on the matters of criminal justice. Those bills have made efforts to adopt social changes and demands of citizens for criminal justice policies, but on the other hands have made ineffective and unprofessional bills.

This research proposes some legislative principles of criminal justic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supportive system for the legislature to perform more effective and professional works.

[부록]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분석자료

※ 19대 국회 형사법 관련 의원입법안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을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의원 발의 법률안 이외에 대안반영 법률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장 제안 법률안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1	2015-12-15	1918202	형법	남인순의원 등 12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개정(제305조 제2항 신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적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강화	미처리(계류)	40대 남성이 15세 여중생을 간음하고 이 여중생이 임신을 하게 된 사건에서 2014년 11월, 대법원은 여중생이 13세 이상이며 연인관계로 인정 무죄 판결을 내림	
2	2015-12-09	1918116	형법(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개정(제43조 제2항 단서 신설, 당연자격정지의 예외를 단서에 신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2)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의 요건 개정(제62조 제1항) 3) 간통죄 규정 삭제(제241조 삭제), 존속중상해죄 개정(제258조 제3항, 법정형 정비) 4) 특수상해죄 신설(제258조의2 신설), 신설한 특수상해죄에 대한 상습범과 자격정지 병과규정을 추가(제264조 및 제256조) 5) 특수강요죄 및 특수공갈죄 신설(제324조 제2항 및 제350조의2 신설)	원안가결		2015-12-09
3	2015-11-20	1917848	형법	안홍준의원 등 10인	판매를 목적으로 미술품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미술품임을 알고도 판매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미술품위조·판매죄 신설(제	미처리(계류)	위조 미술품이 대규모로 유통되는 사건이 계속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240조의2 및 제240조의3 신설), 현행법상 미술품 위조 및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사기, 명예훼손, 사서명(私署名)위조·행사죄 등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미술품의 위조·판매 근절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발생	
4	2015-11-04	1917595	형법	류성걸의원 등 13인	벌금형 개정(제105조 등),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이나 금고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5	2015-09-22	1916917	형법	이상민의원 등 10인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및 특수공갈죄 신설(제258조의2, 제324조 제2항 및 제350조의2 신설), 헌법재판소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등 규정에 대해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하였는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본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가중한 조항이 있어 위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유형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형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일괄 삭제 시 처벌의 공백 우려가 있기 때문에「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 규정에 대한 정비와 동시에, 일부 폭력범죄에 대해「형법」에 편입시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려는 것임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2014.4.24. 선고2011헌바2, 헌법재판소2014.11.27. 선고2014헌바224, 헌법재판소2015.2.26. 선고2014헌가14,2014헌가19,2014헌가23(병합)	2015-12-09
6	2015-09-18	1916886	형법	함진규의원 등 10인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제126조 제2항 신설),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사실공표가 허용되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	미처리(계류)		
7	2015-09-09	1916794	형법	민병두의원 등 22인	존속폭행죄 개정(제260조 제3항), 우리나라 정서상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을 폐지하여 실효성을 강화	미처리(계류)	노인학대사건 급증	
8	2015-08-28	1916632	형법	정갑윤의원 등 11인	배임죄에 대해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명백한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로 고의성 내지 목적범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제355조 제2항 개정), 기업인의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진취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배임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			
9	2015-08-25	1916552	형법	노영민의원 등 10인	수리방해죄 개정(제184조), '결궤하거나'를 알기 쉬운 표현인 '무너뜨리거나'로 변경	미처리(계류)		
10	2015-07-14	1916069	형법	이상민의원 등 10인	1) 벌금 개정(제45조, 일수벌금죄를 전면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 부과) 2) 선고유예의 요건 개정(제59조, 고령 또는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사유로 벌금납입 곤란 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때 선고유예 선고 가능) 3) 집행유예의 요건 개정(제62조 제1항,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4) 벌금과 과료 및 노역장유치 개정(제69조 및 제70조, 벌금 완납이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노역장 유치 제도를 폐지)	대안반영폐기		2015-12-09
11	2015-06-16	1915606	형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개정(제7조),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을 내리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입법개정 시한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 받은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헌법재판소2015.5.28. 선고2013헌바129	
12	2015-06-08	1915498	형법	홍종학의원 등 42인	1) 집행유예의 요건 개정(제62조 제1항,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2)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입 근거 조항 및 법원과 검사에게 상기 제도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제69조의2, 제69조의3 신설)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더 무거운 범죄로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보다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벌금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반영폐기		2015-12-09
13	2015-06-05	1915452	형법	김관영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형법」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삭제하여 위헌성을 제거(제241조 삭제)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2015.2.26. 선고2009헌바17등	2015-12-09
14	2015-05-06	1915025	형법	윤명희의원 등 10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개정(제305조), 위계·위력없이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 성추행한 경우에 형사 처벌되도록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	미처리(계류)	최근 대법원은 15세 여중생과 간음한 남성에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의 범위를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확대함		대하여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여중생이 13세 이상의 나이이므로 무죄선고함	
15	2015-03-13	1914286	형법	조정식의원 등 13인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불구'를 '신체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제11조, 제258조)	미처리(계류)		
16	2015-03-06	1914186	형법	안효대의원 등 30인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제284조의 2 신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여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미처리(계류)	2013년 겨울 대안학교 시절 자신을 지도한 진학지도 교사를 짝사랑해 수년에 걸쳐 스토킹을 일삼던 옛 제자가 스승의 결혼 소식에 격분하여 스승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17	2015-03-04	1914157	형법	신경민의원 등 10인	명예훼손죄 개정(제309조의 2 신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있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피해자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표현 및 언론보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최근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이 기관의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18	2015-02-27	1914088	형법	이채익의원 등 10인	강도강간죄와 해상강도강간죄 개정(제339조 및 제340조 제3항), 강도강간죄와 해상강도강간의 구성요건에 유사강간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강간을 통한 강도강간과 해상강도강간의 경우는 해당 범죄와 유사강간의 경합범으로만 처벌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법적 흠결이 있어 이들 범죄의 구성요건에 유사강간죄를 포함시켜 유사강간을 통한 상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2012년 개정 「형법」에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음.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군형법」에서도 대다수 강간죄와 결합된 범죄나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범죄에 유사강간죄를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짐	
19	2015-02-10	1913956	형법	백재현의원 등 11인	보험사기 신설(제347조의 3 신설 및 제352조), 보험사기자에 대하여 일반 사기보다 강화하여 처벌하는 조항 및 그 예비행위 중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자해·보험목적물 손괴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및 보험사기 미수 처벌 규정을 신설	미처리(계류)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고, 살인·방화 등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	
20	2015-01-16	1913701	형법	정미경의원 등 34인	방위사업비리 중 뇌물죄, 횡령·배임죄, 사문서 위조·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이적제로 처벌하도록 함(제99조 제2항 신설)	미처리(계류)	2006년 방위사업청을 신설이후에도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1	2014-12-08	1912911	형법(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 심신장애자 개정(제10조,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순화) 2)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의 통산 개정(제57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산입) 3) 판결의 공시 개정(제58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의 동의가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	원안가결		2014-12-09
22	2014-11-27	1912707	형법	조정식의원 등 11인	형법 법문상 '부녀'를 '여성'으로 변경(제269조 등), 양성평등 도모와 법문 표현의 통일성 확보	미처리(계류)		
23	2014-11-13	1912476	형법	박민식의원 등 10인	정당방위 개정(제21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신설), 부당한 침해의 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되, 그 방위행위의 수단과 침해의 중대성 사이에 비례성을 요구하도록 하고, 야간 주거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강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등 일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추정하여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함	미처리(계류)		
24	2014-09-22	1911784	형법	박홍근의원 등 10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제347조의3 신설), 자녀의 안전에 대한 염려나 우려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여 그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여 일반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미처리(계류)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증가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25	2014-09-19	1911748	형법	최동익의원 등 10인	친족상도례 개정(제328조 제4항 신설), 친족관계에 있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 친족이라도 처벌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26	2014-06-30	1911042	형법	진선미의원 등 15인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개정(제43조 제3항 신설),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수형된 자 외에는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 2014.1.28. 선고 2012헌마409, 510, 2013헌마167(병합)	2015-12-09
27	2014-05-08	1910524	형법	김기준의원 등 33인	일수벌금제를 도입,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이 가능,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벌금을 내거나 사회봉사를 실행하기 곤란한 자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2-09
28	2014-04-28	1910351	형법 (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선고하는 벌금형에 따라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여 고액 벌금형을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제70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신설)	원안가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	2014-04-29
29	2014-04-14	1910170	형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심신장애인 개정(제10조), '장애자'라는 그릇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	대안반영폐기		2014-12-09
30	2014-04-03	1910014	형법	윤영석의원 등 10인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개정(제155조 제1항, 징역기간 및 벌금 상향조정)	미처리(계류)		
31	2014-04-01	1909992	형법	서기호의원 등 10인	벌금과 과료 개정(제69조 제2~3항), 유치일수의 공제 개정(제71조), 일당환형유치금액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100만원(최근 재판실무상 최저한도인 10만원의 10배)으로 제한하고, 최장 유치일수 3년을 초과하여 남는 벌금액이 있을 경우의 별도 납부의무, 충당 규정을 마련	대안반영폐기	재벌의 노역장유치 일일 벌금액 5억 판결(황제노역)	2014-04-29
32	2014-03-27	1909907	형법	김재원의원 등 11인	벌금과 과료 개정(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에 따라 공제 받는 벌금 금액은 1일 300만원 이하로 하되,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인 경우 공제 후 벌금 잔액을 면제할 수 있다.	대안반영폐기	재벌의 노역장유치 일일 벌금액 5억 판결(황제노역)	2014-04-29
33	2014-03-27	1909906	형법	권성동의원	노역장 유치 개정(제70조 제2항 신설), 선고하는 벌금액이 5억원 이상 50	대안반영폐기	재벌의 노역장유치 일일	2014-04-2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등 11인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벌금액 5억 판결(황제노역)	
34	2014-03-26	1909879	형법	박민식의원 등 12인	노역장 유치 개정(제70조, 선고하는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일 환형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않도록 유치기간을 산정)	대안반영폐기	재벌의 노역장유치 일일 벌금액 5억 판결(황제노역)	2014-04-29
35	2014-03-25	1909862	형법	이상규의원 등 10인	벌금과 과료 개정(제69조 제2~3항, 1일 노역장유치에 공제하는 벌금 산정액은 벌금 최소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재벌의 노역장유치 일일 벌금액 5억 판결(황제노역)	2014-04-29
36	2014-03-21	1909834	형법	심재권의원 등 10인	위계 등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개정(제137조, 위계를 위계 또는 위력)	미처리(계류)		
37	2014-03-19	1909800	형법	박인숙의원 등 10인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제329조·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제350조·제355조·제356조 및 제357조)	미처리(계류)		
38	2014-03-11	1909676	형법	박범계의원 등 10인	판결의 공시 개정(제58조 제2~3항),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의무적으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되,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4-12-09
39	2014-03-07	1909658	형법	김재윤의원 등 10인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개정(제43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및 일정 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5-12-09
40	2014-03-05	1909619	형법	이만우의원 등 10인	간첩 개정(제98조 제3~5항), 일반이적 개정(제99조),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	미처리(계류)		
41	2014-02-03	1909209	형법	함진규의원 등 10인	간통 개정(제241조, 배우자가 부추기거나 용서한 경우 고소불가)	미처리(계류)		
42	2013-12-20	1908698	형법	유승희의원 등 32인	명예훼손 개정(제307조 제1항 삭제, 제2항 징역을 벌금으로), 사자의 명예훼손 개정(제308조, 징역 또는 벌금을 벌금으로 개정)	미처리(계류)		
43	2013-12-04	1908278	형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시효의 정지 개정(제79조 제2항,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대안반영폐기		2014-04-2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44	2013-11-20	1907911	형법	박민수의원 등 10인	죄형법정주의 명문화(제1조의2 신설),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폭발물 사용, 통화 위조, 위조통화의 취득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도록 함(제6조의2), 벌금의 형에 대하여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제1항)	대안반영폐기		2015-12-09
45	2013-09-23	1906925	형법	손인춘의원 등 10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신설(제118조의2)	미처리(계류)	욱일승천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문제	
46	2013-09-03	1906664	형법	김영환의원 등 14인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개정(제42조 제1~2항), 법률상의 감경 개정(제55조 제1항 제1~2호), 가석방의 요건 개정(제72조 제1항)	미처리(계류)		
47	2013-08-16	1906404	형법	김영록의원 등 11인	일수벌금제 도입(6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의 분납, 연납	대안반영폐기		2015-12-09
48	2013-07-10	1905935	형법	박완주의원 등 12인	일수벌금 신설(제45조의2)	대안반영폐기		2015-12-09
49	2013-07-02	1905835	형법	이춘석의원 등 10인	수뢰, 사전수뢰 개정(제129조 제1~2항), 제삼자뇌물제공 개정(제130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개정(제131조 제3항), 알선수회 개정(132조), 뇌물공여 등 개정(제133조 제1항), 횡령, 배임 개정(제355조 제1항)	미처리(계류)		
50	2013-06-26	1905635	형법	김상민의원 등 15인	심신장애자 개정(제10조 제3항)	미처리(계류)		
51	2013-06-20	1905550	형법	안효대의원 등 50인	혐오 신설(제311조의2),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개정(제312조 제1항)	미처리(계류)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지역·인종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52	2013-06-07	1905361	형법	함진규의원 등 10인	강간 개정(제297조), 유사강간 개정(제297조의2), 강제추행 개정(제298조)	미처리(계류)		
53	2013-04-30	1904758	형법	전순옥의원 등 13인	업무방해 개정(제314조 제1항).	미처리(계류)	현재 법원은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어 근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많음.	
54	2013-04-15	1904517	형법	김학용의원 등 12인	보험사기 신설(제347조의3), 미수범 개정(제352조), 예비, 음모 신설(제352조의2)	미처리(계류)		
55	2013-04-04	1904388	형법	박영선의원 등 11인	불법사찰 신설(제123조의2)	미처리(계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56	2013-03-18	1904103	형법	홍익표의원 등 12인	간첩 개정(제98조 제1항 제2항)	미처리(계류)	2006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시 국가정보 유출 의혹이 폭로되었음에도, 위증혐의만 적용된 백성학씨의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	
57	2013-02-22	1903832	형법	정희수의원 등 11인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	미처리(계류)		
58	2013-02-21	1903809	형법	임내현의원 등 11인	피의사실공표 개정(제126조 제2항 신설)	미처리(계류)		
59	2013-02-05	1903607	형법	박인숙의원 등 10인	공무집행방해 개정(제136조 제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개정(제137조)	미처리(계류)		
60	2013-02-04	1903593	형법	이만우의원 등 10인	형의 종류 개정(제41조 제4호 제5호 제8호 삭제), 자격정지 삭제(제44조), 과료 삭제(제47조) 등	미처리(계류)		
61	2013-02-04	1903592	형법	박인숙의원 등 11인	심신장애 개정(제10조) 완전명정행위 신설(제10조의2)	미처리(계류)		
62	2012-12-31	1903199	형법	문정림의원 등 10인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함	미처리(계류)		
63	2012-12-27	1903140	형법	김관영의원 등 11인	불공정한 입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매·입찰 방해죄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64	2012-12-14	1903092	형법	이노근의원 등 11인	심신장애자의 경우에서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자의로 범행에 이른 자를 명백히 제외	미처리(계류)		
65	2012-12-10	1903073	형법	인재근의원 등 59인	종래 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행한 가혹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고문행위범죄를 명시적으로 신설	미처리(계류)		
66	2012-12-07	1903008	형법	강기윤의원 등 10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조정	미처리(계류)		
67	2012-12-05	1902940	형법	박범계의원 등 10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더라도 범죄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인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미처리(계류)		
68	2012-12-05	1902938	형법	강기윤의원 등 10인	선거범죄에 관한 사전조사 및 고발권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자 또한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로 규정함	미처리(계류)		
69	2012-11-22	1902751	형법 (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 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4)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원안가결		2012-11-22
70	2012-11-15	1902607	형법	김제남의원 등 11인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도 노역장유치가 가능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3-06-27
71	2012-10-05	1902146	형법	민홍철의원 등 11인	1) 형무소를 교도소로 변경 2) 행정처분의 재량권이 법률에 의한 재판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라는 요건을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로 강화함	미처리(계류)		
72	2012-09-21	1901913	형법	최민희의원 등 11인	제53조의 내용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작량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73	2012-09-19	1901874	형법	김상희의원	1) 간음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대안반영폐기		2012-11-2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등 12인	2) 강간죄의 간음의 개념을 확장함 3) 음행매개죄의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용어를 삭제 4)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의 용어 다음에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의 용어를 추가함 5)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의 내용에서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 부분은 2009년 11월에 위헌결정이 나서 현재 무효이며,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규정의 보호를 받는 자를 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함 6)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함			
74	2012-09-12	1901742	형법	권성동의원 등 13인	1)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3)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 4)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상향조정함 5)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대안반영폐기		2012-11-22
75	2012-09-07	1901667	형법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박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미처리(계류)		
76	2012-09-07	1901644	형법	박인숙의원 등 17인	1) 형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함 2) 거세 집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미처리(계류)		
77	2012-09-05	1901590	형법	조경태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6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호대상도 부녀만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시켜 사람으로 하며, 가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의제강간 등의 연령을 19세 미만의 사람까지 확장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78	2012-09-05	1901574	형법	서영교의원 등 16인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함	미처리(계류)		
79	2012-09-04	1901548	형법	박인숙의원 등 17인	1) 형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함 2) 거세 집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철회		2012-09-07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80	2012-08-23	1901279	형법	정희수의원 등 10인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81	2012-08-13	1901123	형법	김현숙의원 등 12인	1)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와 미수범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82	2012-08-09	190111	형법	박성호의원 등 12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배제함	미처리(계류)		
83	2012-08-06	1901056	형법	유승희의원 등 33인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친고죄 관련 조항을 폐지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84	2012-07-26	1900892	형법	박영선의원 등 13인	1) 모욕죄를 삭제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함 3)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85	2012-07-26	1900890	형법	이한성의원 등 13인	1)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 2)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함	대안반영폐기		2015-12-09
86	2012-07-09	1900594	형법	배기운의원 등 16인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4-12-09
87	2012-07-06	1900562	형법	윤호중의원 등 15인	자의적인 약물투여와 음주로 일어난 상태를 심신장애 상태로 보지 않도록 함	미처리(계류)	조두순 사건	
88	2012-07-02	1900433	형법	이춘석의원 등 10인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미처리(계류)		
89	2012-06-22	1900286	형법	박영선의원 등 11인	1)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 2)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에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3) 허위사실의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으로서 그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경우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4)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90	2016-02-16	1918559	형사소송법	이상민의원 등 10인	토지관할 개정(제4조의2 신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그 소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 바, 이러한 관할 집중의 필요성은 형사사건에도 공통	
91	2016-02-04	1918538	형사소송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재심이유 개정(제420조 제5호 단서(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제외) 신설), 현재 법원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피고인의 고의·과실로 기존 판결에서 제출되지 못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음.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라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제외하고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재심이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법원의 사실판단 오인의 증거들이 제기되고 있는 일명 '김신혜 사건·삼례 3인조 강도사건·약촌 5거리 살인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가 계속 기각되고 있음	
92	2015-12-09	1918111	형사소송법 (대안)	법제사법 위원장	1) 재산형 등의 집행 개정(제477조 제6항 신설,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 2) 심리와 결정 개정(제262조 제4항 전단,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원안가결		2015-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공소시효의 정지 등 개정(제262조의4 제1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93	2015-11-04	1917588	형사소송법	홍일표의원 등 10인	무죄판결의 공시 개정(제440조),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94	2015-08-25	1916551	형사소송법	노영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상의 용어 중 '환부'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반환'으로 개정(제104조 등)	미처리(계류)		
95	2015-07-24	1916224	형사소송법 (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 보조인 개정(제29조 제2항 신설,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제101조 제3항 삭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신설(제253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범죄로써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 3)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신설(제471조의2 신설), 4)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개정(제482조 제1항-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 제2항 삭제,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항 삭제)	원안가결		2015-07-24
96	2015-07-15	1916078	형사소송법	권은희의원 등 10인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명시적으로 규정(제459조의2 신설),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입법불비를 해소.	미처리(계류)		
97	2015-07-14	1916073	형사소송법	이상민의원 등 10인	재산형 등의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제477조 제6항~제8항 신설), 벌금 등 재산형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하여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벌금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대안반영폐기		2015-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여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를 없애고자 함.			
98	2015-07-08	1916011	형사소송법	노영민의원 등 10인	일본식 용어인 '몰취(沒取)'를 보다 알기 쉬운 '몰수'로 개정(제103조, 제104조 및 제128조)	미처리(계류)		
99	2015-07-03	1915933	형사소송법	김민기의원 등 14인	재심청구권자 개정(제424조 제4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	미처리(계류)		
100	2015-06-03	1915425	형사소송법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가에게 비용보상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 수립과 담당자 교육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및 재판장에게 무죄판결시 비용보상제도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여(제194조의6 신설 및 제325조)	미처리(계류)		
101	2015-06-01	1915381	형사소송법	오영식의원 등 12인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조사내용의 녹음을 의무화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244조의6 및 제266조의17 신설)	미처리(계류)		
102	2015-05-22	1915242	형사소송법	서기호의원 등 11인	대법원의 환송 또는 이송 개정(제397조 제1항 단서 신설 - 대법원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397조 제2항 신설 -대법원의 파기판결이 환송 또는 이송 후 법원에 미치는 기속력의 범위가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에 한정됨을 명문화. 다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은 예외로 함)	미처리(계류)		
103	2015-05-15	1915159	형사소송법	김진태의원 등 10인	1)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외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증언 등 제3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하도록 함(제313조의2 신설) 2)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기록된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제292조의3 신설, 제312조, 제314조, 제318조의2 개정) 3)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의 경우에 제3자의 진술, 감정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제313조 개정)	미처리(계류)		
104	2015-04-27	1914870	형사소송법	전해철의원	압수물 보관과 폐기 개정(제130조 제2항, 제130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미처리(계류)	헌법재판소, 2012. 1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등 12인	폐기대상인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사유 이외의 압수물은 폐기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한편,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산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함		27.선고, 2011헌마351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사건)	
105	2015-04-15	1914729	형사소송법	박남춘의원 등 10인	비공무원의 서류 개정(제59조 개정),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	미처리(계류)		
106	2015-03-25	1914437	형사소송법	김진태의원 등 10인	1)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제101조 제3항 삭제) 2)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개정(제482조 제1항-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 제2항 삭제,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항 삭제)	대안반영폐기		2015-07-24
107	2015-03-19	1914371	형사소송법	함진규의원 등11인	시효의 정지와 효력 개정(제253조 제4항 신설), 범인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여 통일 후 처벌 근거 마련하고 인권 탄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108	2015-03-13	1914278	형사소송법	조정식의원 등 13인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개정(제33조 및 제181조 개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109	2015-03-10	1914226	형사소송법	이채익의원 등 11인	고소의 제한 개정(제224조 삭제), 불합리하게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규정 삭제하여 직계비속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미처리(계류)	울산 계모사건 등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입법례는 이제 대만을 제외하고 찾기 어려움	
110	2015-03-02	1914098	형사소송법	서영교의원 등 16인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신설(제253조의2 신설), 형법상 살인,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	대안반영폐기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	2015-07-24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111	2015-02-26	1914067	형사소송법	신의진의원 등 10인	1)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변호사선임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2) 피고인에 대한 보석 또는 구속의 취소를 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보석·구속의 취소·구속의 집행정지·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등의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제97조의2 신설), 3) 의무적으로 공소제기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변호사선임권이 있음을 알리고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제259조의2 개정), 4)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자충격진술서를 참고하여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94조의5 신설)	미처리(계류)		
112	2015-02-02	1913878	형사소송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1)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제106조 제3항 개정) 2) 법원은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존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의2 신설) 3)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제115조의2 제1항·제2항 신설) 4) 압수대상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등에 압수할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함(제115조의2 제3항 신설) 5)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하여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복제하도록 하고, 출력·복제 과정에 피의자·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115조의3 신설) 6)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훼손 및 오·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제116조 제2항 개정) 7)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해당 매체 등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20조의2 신설) 8) 수사기관의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219조 개정)			
113	2015-01-12	1913641	형사소송법	김용태의원 등 139인	국회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절차 개정(제201조의2 개정),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함.	미처리(계류)		
114	2015-01-09	1913600	형사소송법	신경민의원 등 10인	국선변호인 개정(제33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115	2014-12-19	1913142	형사소송법	홍일표의원 등 168인	1)「법원조직법」이 정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제379조의2 신설), 2) 사건심사에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필수적 국선변호사건으로 추가함(안 제386조의2 신설), 3)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제390조 제2항 개정), 4) 상고법원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함)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제390조의2 신설), 5)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제401조의2부터 제401조의4까지 및 제415조의2 신설--①상고법원은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나, 상고법원 재판(환송·이송 제외)에 헌법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 또는 특별재항고를 할 수 있음 ②특별상고장과 특별재항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상고장과 특별재항고장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를 각하함 ③상고법원 판결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선고하면 바로 확정되고, 특별상고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	미처리(계류)	상고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짐.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는 효력이 없음. 다만 상고심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116	2014-12-12	1913067	형사소송법	신경민의원 등 14인	1)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할 때와 사건을 송치하는 등 수사를 종결할 때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사건진행상황 및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제238조의2 신설), 2)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경우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238조의3 신설), 3)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제257조의2 신설), 4) 검찰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7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함(제259조 개정), 5)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도 신청에 따라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제259조의2 개정), 6) 고발인에게도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 과정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권한을 강화함.	미처리(계류)		
117	2014-12-09	1913006	형사소송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수사에 필요한 조사 개정(제199조 제2항 개정),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억제함.	미처리(계류)		
118	2014-12-08	1912913	형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장	1) 비용보상의 절차 개정(제194조의3 제2항 개정,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 2)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표현 개정(제438조 제2항 제1호·제2호 개정).	원안가결		2014-12-09
119	2014-12-08	1912877	형사소송법	임수경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개정(제106조 제1항, 제109조 및 제122조 개정),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큰 전기통신의 특성에 맞게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포괄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전통지의 예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함			
120	2014-12-02	1912768	형사소송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소장 작성 및 공소장 부본 전달 등 개정(제254조, 제266조 및 제266조의3 개정), 송달된 공소장 을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보복범죄의 우려가 높아 공소장 작성 및 공소장 부본의 전달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미처리(계류)		
121	2014-11-27	1912708	형사소송법	장윤석의원 등 12인	1)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개정(제259조의2 개정, 피해자등이 고지 받을 수 있는 사실의 범위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처분 이유를 추가하여 재판절차상 진술권 강화) 2) 고소인등에의 고지 개정(제259조 개정, 고소·고발인이 고지 받을 수 있는 사실의 범위에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강화)	미처리(계류)		
122	2014-11-27	1912701	형사소송법	조정식의원 등 11인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개정(제124조, 제141조 제3항 및 제469조 제1항 개정),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123	2014-11-20	1912583	형사소송법	이찬열의원 등 10인	재산형 등의 집행 개정(제477조에 제6항 신설), 벌과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벌과금 등의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벌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벌과금 등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고자 함	대안반영폐기		2015-12-09
124	2014-10-29	1912169	형사소송법	김제식의원 등 10인	재정신청기간 개정(제260조 제3항 개정), 현행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 재정신청 기간 내에 재정신청 이유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까지 제출해야 하며, 재정신청인의 대다수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재정신청을 한다는 점을 고려시 기간 연장 필요	미처리(계류)		
125	2014-09-11	1911650	형사소송법	박주선의원 등 16인	재심이유 개정(제420조 제8호 신설), 원심법원이 대법원의 합법적인 기존의 판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현재 하급심 재판은 물론 대법원의 각부 재판에서 합법적인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변경 절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이 다수 내려지고 있어 당사자가 억울한 케이스 발생	
126	2014-09-04	1911609	형사소송법	박인숙의원 등 10인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신설(제253조의2 신설), 살인죄·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	대안반영폐기		2015-07-24
127	2014-08-21	1911439	형사소송법	박인숙의원 등 10인	필요적 변호 개정(제282조 단서 삭제), 변호인 없이 판결 선고공판 개정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사건의 모든 공판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고공판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여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보장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128	2014-06-19	1910922	형사소송법	박명재의원 등 10인	고발 개정(제234조 제2항),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미처리(계류)		
129	2014-05-28	1910761	형사소송법	김재원의원 등 10인	상속재산에 대한 몰수추징과 관련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집행 개정(제478조 제2항)	미처리(계류)		
130	2014-05-19	1910649	형사소송법	서기호의원 등 11인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개정(제51조 제2항 제12호), 공판조서의 정리 등 개정(제54조 제4항), 공판조서의 증명력 개정(제56조), 재판의 전 과정 녹음 및 공판의 영상녹화 개정(제56조의2), 공판준비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 신설(제266조의17)	미처리(계류)		
131	2014-04-30	1910402	형사소송법	민현주의원 등 10인	압수 개정(제106조제3항) 현행법에 따라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미처리(계류)		
132	2014-04-14	1910169	형사소송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재심의 심판 개정(제438조 제2항), '장애자'라는 그릇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	대안반영폐기		2014-12-09
133	2014-03-26	1909891	형사소송법	우윤근의원 등 10인	수명법관 신설(제72조의2), 요금처분 개정(제80조)	원안가결		2014-09-30
134	2014-03-25	1909868	형사소송법	이춘석의원 등 10인	상고기각 결정 개정(제380조 제2항 신설),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	원안가결		2014-04-2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35	2014-02-12	1909362	형사소송법	박인숙의원 등 10인	공소시효의 기간 개정(제249조 제1항),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현행법상의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	미처리(계류)		
136	2014-02-06	1909287	형사소송법	강창일의원 등 10인	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신설(제294조의5), 피해자측 참가인 등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등 신설(제294조의6), 피해자측 참가인 등의 공판기일 출석 등 신설(제294조의7), 피해자측 참가인 등의 증인신문 신설(제294조의8), 피해자측참가인 등의 피고인신문 신설(제294조의9), 피해자측참가인 등의 의견진술 신설(제294조의10),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유지활동을 통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	미처리(계류)		
137	2013-12-31	1908921	형사소송법	김진태의원 등 19인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 제한(제34조 제2항 신설)	미처리(계류)		
138	2013-12-09	1908443	형사소송법	손인춘의원 등 10인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삭제(제214조)	미처리(계류)		
139	2013-12-09	1908430	형사소송법	이노근의원 등 14인	제척의 원인 신설(제195조의2),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신설(제195조의3), 기피신청의 관할 신설(제195조의4), 기피신청에 대한 처리 신설(제195조의5), 기피신청과 수사의 정지 신설(제195조의6), 회피의 원인 등 신설(제195조의7)	미처리(계류)		
140	2013-12-06	1908382	형사소송법	강기윤의원 등 11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신설(제36조의2)	미처리(계류)		
141	2013-12-05	1908365	형사소송법	김광진의원 등 13인	비용보상의 절차 등 개정(제194조의3 제2항)	대안반영폐기		2014-12-09
142	2013-11-29	1908222	형사소송법	주호영의원 등 13인	양형자료조사 신설(제297조의3)	미처리(계류)		
143	2013-11-26	1908066	형사소송법	전해철의원 등 16인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신설(제471조의2)	대안반영폐기		2015-07-24
144	2013-11-01	1907434	형사소송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개정(제244조 제1항)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145	2013-10-04	1907136	형사소송법	서영교의원 등 13인	제척·기피·회피 기록의 보관 개정(제24조의2)	미처리(계류)		
146	2013-09-05	1906714	형사소송법	박영선의원 등 16인	공무상비밀과 압수 개정(제111조 제1~2항)	미처리(계류)		
147	2013-08-30	1906614	형사소송법	이언주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 개정(제196조 제2항), 수사당국과 식약처 간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	미처리(계류)		
148	2013-07-15	1905973	형사소송법	김태원의원 등 10인	자유형집행의 정지 개정(제470조 제1~2항), 동전 개정(제471조 제1항 제3항)	미처리(계류)		
149	2013-06-20	1905542	형사소송법	정청래의원 등 11인	동전 개정(제471조 제1~4항)	미처리(계류)		
150	2013-06-07	1905365	형사소송법	이목희의원 등 12인	동전 개정(제471조 제1항), 형집행정지심사 등 신설(제471조의2)	대안반영폐기		2015-07-24
151	2013-05-30	1905194	형사소송법	배기운의원 등 15인	임의적 보석 개정(제96조)	미처리(계류)		
152	2013-05-01	1904771	형사소송법	박인숙의원 등 11인	공소시효의 기간 개정(제249조 제1항 제5호 개정 및 동조 동항 제6~7호 삭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미처리(계류)		
153	2013-04-26	1904679	형사소송법	서영교의원 등 12인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개정(제244조의2 제4항)	미처리(계류)		
154	2013-04-22	1904617	형사소송법	이종걸의원 등 10인	재심이유 개정(제420조), 재심청구권자 개정(제424조 제5호)	미처리(계류)		
155	2013-04-18	1904579	형사소송법	김승남의원 등 21인	재심이유 개정(제420조), 재심청구권자 개정(제424조 제5호)	미처리(계류)		
156	2013-04-18	1904575	형사소송법	김기현의원 등 11인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개정(제201조의2 제2항 3항 5항),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제214조의2 제14항)	미처리(계류)		
157	2013-03-04	1903938	형사소송법	이한성의원 등 10인	상고이유 개정(제383조 제2항)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158	2013-02-22	1903835	형사소송법	정희수의원 등 11인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개정(제323조 제3항)	미처리(계류)		
159	2012-12-28	1903155	형사소송법	이원욱의원 등 13인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함과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속기록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되게 함	미처리(계류)		
160	2012-12-05	1902941	형사소송법	박범계의원 등 10인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공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함	미처리(계류)		
161	2012-11-02	1902406	형사소송법	김제남의원 등 10인	1) 재정신청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 2)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162	2012-10-05	1902145	형사소송법	서기호의원 등 13인	1)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2)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과 제101조 제3항의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 삭제 3)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제244조의5 제1항을 준용함	대안반영폐기		2015-07-24
163	2012-09-10	1901672	형사소송법	이한성의원 등 15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함	미처리(계류)		
164	2012-08-31	1901480	형사소송법	유재중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전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이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미처리(계류)		
165	2012-07-26	1900893	형사소송법	박영선의원 등 11인	1)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2)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수통의 작성근거 및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의무를 규정함			
166	2012-07-26	1900889	형사소송법	이한성의원 등 13인	3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과금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5-12-09
167	2012-07-24	1900852	형사소송법	남경필의원 등 13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심문에 자진하여 응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함	미처리(계류)		
168	2012-07-24	1900843	형사소송법	박영선의원 등 126인	1)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함 2)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서류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이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절차가 중지된 날부터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169	2012-07-18	1900740	형사소송법	박영선의원 등 10인	1)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을 검찰청 또는 법원으로 함 2)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사유 중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삭제함	미처리(계류)		
170	2012-07-02	1900435	형사소송법	이춘석의원 등 10인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공소장과는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미처리(계류)		
171	2012-06-29	1900395	형사소송법	정희수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및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범죄로서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대안반영폐기		2015-07-24
172	2012-06-26	1900309	형사소송법	이한성의원 등 13인	구속사유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때를 추가함	미처리(계류)		
173	2015-11-03	19175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은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를 추가(제34조 제2항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신설 등 관련 조항 개정)	미처리(계류)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도 학대 및 범죄와 관련한 신고의무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174	2015-10-27	19174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함(제65조 제6항 신설 및 제67조 제4항 삭제)	미처리(계류)		
175	2015-10-19	19172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제한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도 13세 미만의 제한을 철폐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제49조 제1항 제3호 개정, 제50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176	2015-10-07	191709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하여 규정하여 이전의 법적 공백을 해소(제2조제2호 마목 신설)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제56조 제1항 개정) 3)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명확히 규정함(제56조 제1항 제16호 개정)	미처리(계류)		
177	2015-08-07	19163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1)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 제6호 개정 및 제7호 삭제),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어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	미처리(계류)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에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함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 2)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개정) 3)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제39조 및 제40조 삭제). 4)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제46조 개정)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178	2015-03-18	19143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제56조 제1항 단서 개정), 2012년 개정으로 의료기관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간호조무사 등에 대해서도 확대의 필요성	미처리(계류)		
179	2015-03-09	19142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제20조 제2항 개정),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180	2014-12-30	19134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1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우편 외에 전자메일 송부에 동의한 자에게는 전자메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성명·나이·주소 등을 고지하는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실히 전달하고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제51조 개정)	미처리(계류)		
181	2014-12-03	191278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1) 가정방문학습교사를 채용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하도록 함(제56조 제1항 제18호 신설)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만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하려는 자 등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56조 제2항, 제3항, 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취업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함에 따라 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 등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회신서를 받는데 이에 따른 기관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시 최소 연 1회 이상의 점검·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함(제57조 제1항 개정)	미처리(계류)		
182	2014-12-01	191276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의원 등 11인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임(제56조 제1항 개정),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법」에 따른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취업제한 대상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미처리(계류)	교육부의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240명 중 47.9%인 115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가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등 성범죄 전과자로부터 아동·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183	2014-09-01	191156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제56조제2항), 영화 '도가니'에서처럼 학교·학원의 장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강행규정으로 개선할 필요	미처리(계류)		
184	2014-07-10	19111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2인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제49조 제1항 제3호의2 및 제50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제한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폭행·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한 행위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죄질이 다를 바 없는바, 연령 기준 및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성폭력범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미처리(계류)		
185	2014-06-17	191088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9인	가해자의 범죄사실 통지 등 신설(제36조의2), 제2조(가해자의 업무종사 일시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부터 적용	미처리(계류)	아동보육시설 원장이 소속 원생을 성폭행, 성추행	
186	2014-05-13	19105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등록정보의 공개 개정(제49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기간을 공개기간의 계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개기간을 합리적으로 계산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187	2014-05-08	1910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	재범률 조사 신설(제21조의2)	미처리(계류)		
188	2014-04-22	19102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개정(제56조 제1항 제2호),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개정(제57조 재1항 제1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게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는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함	미처리(계류)		
189	2014-04-18	19102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개정(제34조 제2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개정(제56조 제1항),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개정(제57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함	미처리(계류)	대학교내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범죄 문제	
190	2014-02-10	19093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개정(제17조 제3~5항), 랜덤채팅 등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	미처리(계류)		
191	2013-11-21	19079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의원 등 11인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개정(제44조 제6항 신설, 보호자의 재범예방 교육의무), 과태료 개정(제67조 제5항 신설, 예방교육 불이행자)	미처리(계류)	미성년간 성폭행	
192	2013-11-20	19079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개정(제56조 제1~2항)	미처리(계류)		
193	2013-09-06	19067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김상희의원 등 12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개정(제17호 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개정(제34조 제2항 제15호)	미처리(계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증가	
194	2013-09-03	19066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4인	형법 상 감경 및 가석방 규정에 관한 특례 개정(제19조 제2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195	2013-08-23	19065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10인	심신미약상태로 인한 형 감경 차단;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개정(제19조)	미처리(계류)		
196	2013-06-14	190549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5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개정(제13조 제2항)	미처리(계류)		
197	2013-05-23	190508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정의 개정(제2조 제2호 마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개정(제6조 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개정(제7조 제1~2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개정(제56조 제1~2항),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개정(제58조 제3항), 권한의 위임 개정(제60조 제3항), 과태료 개정(제67조 제5항)	미처리(계류)		
198	2013-05-01	19047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5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개정(제7조 제1~2항)	미처리(계류)		
199	2013-04-29	19047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2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개정(제17호 제3항), 포상금의 지급 신설(제34조의2)	미처리(계류)		
200	2013-03-21	190419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김태원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개정(제56조 제1~4항), 범죄경력자 점검·확인 개정(제57조 제1항)	폐기		2013-07-0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	2013-02-26	19038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함(제2조 제5호 개정),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의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포함시킴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미처리(계류)		
202	2013-02-01	19035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정의 개정(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음란행위 등 신설(제11조의2)	미처리(계류)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청소년의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청소년과 자신의 나체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을 찍은 사진사가 적발되었으나, 해당 사진과 동영상은 청소년 몰래 피고인이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의 주체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란물 제작 혐의에 무죄가 선고	
203	2012-12-28	19031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강은희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자문서'를 명시하여 규정함	폐기		2013-07-0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4	2012-12-07	19030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 10인	'국토대장정' 등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따른 '허가 대상 청소년활동' 역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미처리(계류)		
205	2012-11-30	190287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 10인	학교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역시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206	2012-11-27	1902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정의 중 "만 19세가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미처리(계류)		
207	2012-11-22	19027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여성 대상성폭력 대책특별 위원장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5)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 6)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원안가결		2012-11-22
208	2012-11-15	19026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대성의원 등 10인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함 2)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거나 교육·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직업훈련·고용·생활상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함			
209	2012-11-15	19025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	1) 피해자의 성 이력/윤리/가치관/성향 등 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성에 관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210	2012-11-14	19025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11	2012-11-14	19025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40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종사자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미처리(계류)		
212	2012-11-12	19025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의원 등 10인	1)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함 2) 성범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개설 신고·신청 시에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13	2012-11-05	19024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판정의기준과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함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와소지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14	2012-10-30	19023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3인	누구든지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되, 아동·청소년이 관계되는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의 만남인 경우에는 대가의 제공 조건이 표현상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에 포함시킴	폐기		2012-11-2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215	2012-10-02	19021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함. 2)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제출기한 단축 등 등록 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함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를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법정형에 징역형을 신설 4)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지위 부여	미처리(계류)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216	2012-09-28	190209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강간의 경우 현재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상향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17	2012-09-27	19020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1) 피해아동/청소년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추가함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가중처벌의 대상을 종전의 "13세 미만의 여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이 법에 규정함 3)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 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원인자 및 작량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함 5) 13세 미만 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 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반의사불벌죄 폐지	미처리(계류)		
218	2012-09-25	19019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유사성교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219	2012-09-21	19019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2인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20	2012-09-20	19018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2)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21	2012-09-18	19018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국가의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기관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요청을 의무화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22	2012-09-14	19018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3인	1) 신상정보의 제출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기한을 대폭 단축함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3)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23	2012-09-13	19017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3인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을 상향 2)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죄의 법정형을 상향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을 추가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24	2012-09-12	19017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3인	1)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체육시설로 확대함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을 하는 사업	대안반영폐기		2012-11-2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장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 3) 사설경비업체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 4) 청소년활동기획업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			
225	2012-09-10	19017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26	2012-09-10	190169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6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27	2012-09-07	19016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법률상 이원화되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일원화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28	2012-09-07	19016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상영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3) 종래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ISP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삭제 등 조치 미이행죄'를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시킴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29	2012-09-06	19016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21인	고지정보 우편송부 이후 출생신고·입양신고·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어린이집의 원장/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송부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30	2012-09-04	190156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27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31	2012-08-31	19014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민현주의원 등 10인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자의 형사책임을 상향 2)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 등의 형사책임을 상향	대안반영폐기		2012-11-2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는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재하도록 함 4)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는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32	2012-08-22	19012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3인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에 보호관찰대상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추가 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에 인접 읍·면·동의 주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의 장에게도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함 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고지명령의 집행을 매년 1회 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33	2012-08-14	19011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성의원 등 11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기상황에 대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기상황 대처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폐기		2012-11-29
234	2012-08-06	19010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21인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 2) 신상정보 관리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35	2012-06-22	19002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8인	공소시효 배제 범죄에 남성 아동·청소년도 포함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36	2012-06-21	19002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9인	법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하는 경우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37	2015-11-03	19175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유승희의원 등 10인	1)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영리 목적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제36조 제1항·제2항 개정) 2)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제38조 제1항제1호 신설)			
238	2015-11-02	19175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여성가족 위원장	1)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제5조 제5항 개정). 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내용에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제5조의2 제1항 개정). 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4항 신설). 4)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법률지원, 수사지원을 추가함(제18조 제1항 개정) 5)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검사 등의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함(제32조 제1항 개정). 6) 과태료 부과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함(제38조 제2항 개정).	원안가결		2015-11-12
239	2015-10-27	1917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보호기관 등의 종사자가 그들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제36조 제3항 신설).	미처리(계류)		
240	2015-09-25	191696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3조 제1항 개정).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241	2015-07-10	191604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23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특히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 학생들의 집단적 유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학에 성폭력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수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함(제10조 제2항 신설),	미처리(계류)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	
242	2015-03-26	191445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함.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제33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삭제)	폐기		2016-02-16
243	2015-03-17	191433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인가의 취소나 업무의 폐지 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와 같은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제21조 제2항·제3항 및 제23조 제2항 신설)	수정가결		2016-02-04
244	2015-02-04	191390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2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최소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통합지원센터에 수사지원을 위한 경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제12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신설,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 성폭력피해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에서 치료, 수사지원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	대안반영폐기		2015-11-1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수사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폭력피해자가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2,3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45	2015-01-09	19136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여성가족 위원장	1)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함(제1조 개정) 2)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제5조 제3항 신설) 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고,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함(제12조 제3항 제4호 및 제16조 제1항 제4호 신설) 4)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제19조 제1항 제2호 삭제) 5)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22조 제4호 신설) 6)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원안가결		2015-01-12
246	2014-11-12	191243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6인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슬기롭게 성폭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5조 제4항 및 제5조의2 제1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5-11-12
247	2014-09-29	191190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교원, 공공단체 직원 등이 성 관련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 외에 성범죄 재발방지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제5조 제4항 신설)	미처리(계류)		
248	2014-09-17	19117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둠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여성근로자 등의 성폭력피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제12조 제3항	대안반영폐기	2013년에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	2015-01-1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제4호 및 제16조 제1항 제4호 신설)		한 여성 이주노동자 중 10.7%가 성폭행·성희롱 피해를 당한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에 대한 성폭력피해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실정임.	
249	2014-03-26	190988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의원 등 14인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고도 운영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2조제4호 신설 및 제27조)	대안반영폐기		2015-01-12
250	2014-02-05	19092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개정(제5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미처리(계류)		
251	2013-12-26	190878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희의원 등 10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개정(제19조 제1항 제2호 삭제)	대안반영폐기		2015-01-12
252	2013-12-26	19087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성폭력예방교육 신설(제5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등	원안가결		2013-12-26
253	2013-12-03	19082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목적 개정(제1조, 국민인권증진 기여 추가)	대안반영폐기		2015-01-12
254	2013-11-21	1907949	성폭력방지 및	민현주의원	성폭력 예방교육 개정(제5조 제2~5항)	대안반영폐기		2015-01-1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인				
255	2013-09-25	190697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개정(제19조 제1항 제1호 피성년후견인)	대안반영폐기		2013-12-26
256	2013-08-02	190625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성폭력 예방교육 개정(제5조 제2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3-12-26
257	2013-07-19	190606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성폭력 예방교육 개정(제5조 제4~6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3-12-26
258	2013-06-17	19055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개정(제16조 제1항)	대안반영폐기		2013-12-26
259	2012-11-22	190274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아동·여성 대상성폭력 대책특별 위원장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원안가결		2012-11-22
260	2012-11-15	19026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성의원 등 10인	미성년자로서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입소기간을 20세까지로 확대함	폐기		2013-07-02
261	2012-10-25	1902280	성폭력방지 및	남인순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지속적으	대안반영폐기		2012-11-2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인	로 성 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함			
262	2012-09-28	190208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성범죄자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을 규정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63	2012-09-26	190199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성폭력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의 출석권,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피해자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64	2012-08-30	19014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30인	국가는 군인과 예비군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 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65	2012-07-30	190094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1) 유치원·보육시설·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5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2)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하여 연령대별 효과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함(제5조 제3항개정) 현행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만을 형식적으로 부여해 해당 교육이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그렇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하여 연령대별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266	2012-07-16	19006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박성호의원 등 1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유치원/보육시설/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대안반영폐기		2012-11-2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게 제출하여야 함			
267	2015-12-18	1918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등 10인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형벌체계의 균형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 발생을 강력히 억지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가 보다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0조 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268	2015-12-17	19182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3조 및 제14조 개정)	미처리(계류)		
269	2015-12-16	19182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성범죄의 종류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을 개정요구를 한 헌재의 취지를 반영함(제45조 제1항 개정)	미처리(계류)	헌법재판소2015.7.30. 선고, 2014헌마340 등 병합.	
270	2015-12-15	19182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함(제7조 개정)	미처리(계류)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높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	
271	2015-10-22	1917325	성폭력범죄의	윤후덕의원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벌금형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상습적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인	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확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21조 제3항 개정)			
272	2015-10-16	19172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개정)	미처리(계류)	최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법원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림.	
273	2015-09-30	19170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임.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14조 개정)	미처리(계류)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	
274	2015-09-18	19168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몰카범죄의 벌금을 현실화하여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죄질이 무거운 성폭력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상공개를 의무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제14조 및 제47조 제1항 개정)	미처리(계류)	몰카 범죄 급증과 사례의 다양화/ 현행법에는 일정한 성폭력 범죄는 법원에서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최근 여성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의사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신상공개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현실.	
275	2015-03-09	19142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비록 범인의 특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프로파일 정보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그 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기소함으로써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범죄자를 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제21조 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276	2015-03-06	19141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형법」상의 성폭력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로 보아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군형법」상의 성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규정에 「군형법」상 성폭력범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군형법」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확히 하고자 함(제2조 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최근 군대 내의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고등군사법원에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의 '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음	
277	2015-01-28	19138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기소 전 단계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결정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검사는 대립하는 관계가 됨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의 지정과 함께 그 변호사의 보수까지 '검사가 결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검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조력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조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를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를 받아 선정하도록 하며,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법원에서 지급하도록 함(제27조 제6항 및 제7항 개정)			
278	2014-11-11	1912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현재 전문적인 성폭력범죄 수사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는 전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전담조사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으로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속기사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속기사 지원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속기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속기사 지원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동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제26조 제4항 신설)	미처리(계류)		
279	2014-06-17	19108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8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수사과정 참여 신설(제38조의2)	미처리(계류)		
280	2014-04-30	19104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언동에 의한 음란행위 신설(제13조의2)	미처리(계류)		
281	2014-04-14	19101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개정(제7조 재1~5항),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개정(제21조 제3항), 전문가의 의견 조회 개정(제33조 제4항),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개정(제36조 제1항),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개정(제37조 제1항), 현행법상 보호대상 미성년자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보다 넓게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	미처리(계류)		
282	2014-03-21	1909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윤덕의원 등 12인	특수강간 등 개정(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개정(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개정(제6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유사간음 신설(제9조의2), 현행법상 특수강간죄,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죄에 유사강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 및 업무상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283	2013-12-16	19085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0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개정(제43조 제1항 제5호 신설)	수정가결		2014-12-09
284	2013-12-03	19082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목적 개정(제1조, 신체의 안전 보장 및 인권보호 추가)	미처리(계류)		
285	2013-12-02	19082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개정(제11조 제1항, 추행 개념 및 징역기간, 벌금 상향조정, 동조 제2항 추가)	미처리(계류)		
286	2013-09-03	19066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4인	형법 상 감경 및 가석방 규정에 관한 특례 개정(제20조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범에 대하여는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287	2013-08-30	19066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6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피해자 등의 방청 신설(제40조의2)	미처리(계류)		
288	2013-08-06	19062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개정(제14조 제1항)	미처리(계류)		
289	2013-08-06	19062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홍문종의원 등 10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개정(제7조 제1~3항), 강간 등 상해치상 개정(제8조 제1항 제3항), 강간 등 살인 치사 개정(제9조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항)			
290	2013-07-22	19060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특수강도강간 등 개정(제2조 제3항 신설; 특수강도 후 강간을 당한 경우와 동일하게 강간 후 특수강도를 당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	미처리(계류)		
291	2013-07-18	19060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개정, 가중 처벌 규정 신설(제10조 제3항 신설)	미처리(계류)		
292	2013-06-07	19053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3인	피해자의 성적사생활 등 보호 신설(제24조의2), 벌칙개정(제50조 제2항 제3호)	미처리(계류)		
293	2013-06-04	19053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개정(제21조 제4항)	미처리(계류)		
294	2013-03-21	19041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개정(제6조 제3항 제6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개정(제7조 제3항)	미처리(계류)		
295	2013-02-19	19037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진술조력인 양성 등 개정(재35조 제1항),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개정(제36조 제1항),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개정(제37조 제1항)	미처리(계류)		
296	2013-02-12	19036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권성동의원 등 13인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개정(제18조), 고소기간 개정(재9조 제1항 제2항),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개정(제21조 제1항 제4항, 제21조 제4항 제4호 신설) 심리의 비공개 개정(제31조 제4항), 간주규정 신설(제49조의2)	수정가결		2013-03-05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297	2012-12-14	19030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술/약물에 취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장애자, 농아자 감경을 제한	미처리(계류)		
298	2012-11-23	19027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또는 법원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299	2012-11-22	19027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장	1)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함 2)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3)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 4) 친고죄 조항을 삭제 5)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6)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	원안가결		2012-11-22
300	2012-11-19	19026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재량에 따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그 시간을 확대하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301	2012-11-15	19025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	1) 피해자의 성 이력/윤리/가치관/성향 등 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성에 관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302	2012-11-08	19025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1)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 2)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03	2012-10-09	19021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04	2012-10-02	1902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1) 아청법 규율대상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수사·재판 절차 관련 조항을 본 법에 통합 2)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해·치사에 대한 가중처벌 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재판 확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환경,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의 상세한 자료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판결전조사를 실시함 4)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도 형법상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 5)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법령 개정	미처리(계류)		
305	2012-09-28	19020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중 강간등 상해·치상의 죄와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06	2012-09-28	19020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1)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폐기		2012-11-29
307	2012-09-12	1901744	성폭력범죄의	김희정의원	1) 신상정보의 제출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	대안반영폐기		2012-11-2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인	고,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기한을 단축함 2)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			
308	2012-09-10	19017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성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09	2012-09-07	19016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적용배제 대상을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 2) 신상정보 공개내용에 성범죄자의 차량 종류 및 등록번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보호관찰 대상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3) 미성년자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10	2012-09-06	19016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8인	고지정보 우편송부 이후 출생신고·입양신고·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어린이집의 원장/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송부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11	2012-09-06	19015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12	2012-09-04	19015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21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	폐기		2012-11-29
313	2012-08-31	19014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7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려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314	2012-08-22	19012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2인	공개 대상 신상정보에 보호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명시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15	2012-08-13	1901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2인	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2)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16	2012-08-06	19010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21인	1)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 2) 신상정보 등록/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17	2012-07-30	19009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나체사진 등의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18	2012-07-26	19008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0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19	2012-06-14	19001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1)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재판 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증인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2)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라 하더라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을 하지 못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320	2015-06-08	191546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0인	성매매를 의심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컨텐츠의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등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제33조 제1항 개정).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	미처리(계류)	2014년 여성가족부가 분류한 '성매매 조장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채팅 앱)'은 182개로 특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3초 이상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바일 채팅 앱 등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대한 경고문구를 게시할 필요가 있음		히 채팅 앱을 통하여 '조건만남'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태임	
321	2015-03-17	191433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를 폐지·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업무의 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와 같은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제28조 제2항·제3항 및 제31조 제3항 신설)	수정가결		2016-02-04
322	2015-01-14	191368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30조 삭제 및 제36조 제4호 개정).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323	2014-02-27	190953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 위원장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하여 발생가능 한 성매매 사전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성매매피	원안가결		2014-02-28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대안)		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324	2013-11-26	190807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22조, 벌금 상향조정)	대안반영폐기		2014-02-28
325	2013-09-16	190685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성매매 피해자들의 주거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 개정(제3조 제1항 제3호)	대안반영폐기		2014-02-28
326	2013-09-12	19068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10인	현행법을 전면개정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수'로, '성을 파는 행위'를 피해자 개념의 '성매수 대상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변경하여 정의하고, 정부 내에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여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예방·방지와 성매수 대상자의 보호·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거대책, 생계 지원, 일자리 제공 등 지원범위와 내용의 확대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려는 것	대안반영폐기		2014-02-28
327	2013-08-02	190625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성매매 예방교육 개정(제4조 제2항)	대안반영폐기		2014-02-28
328	2013-07-19	190606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4인	국가 등의 책임 개정(제3조 제1항 제3호 신설), 지원시설의 종류 개정(제5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3항), 지원시설의 설치 개정(제6조 제1항 단서 신설), 보수교육의 실시(제11조의3 제1항)	대안반영폐기		2014-02-28
329	2013-06-17	19055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지원시설의 종류 및 지원기간 개정(제5조 제1~3항)	대안반영폐기		2014-02-28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330	2013-06-05	190534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지원시설의 종류 개정(제5조 제1항 제1~2호)	대안반영폐기		2014-02-28
331	2013-04-29	190470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7인	성매매 예방교육 개정(제4조 제1~3항), 상담소의 업무 등 개정(제11조 제6호 신설),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개정(제11조의2 제2항제9호)	대안반영폐기		2014-02-28
332	2013-04-19	190459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 기관의 특별교육 등 신설(제4조의2)	대안반영폐기		2014-02-28
333	2014-07-22	191123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1) 성매매 산업의 확산과 성매매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성매매 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제2조 제1항 제4호 개정)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의 범죄를 지은 사람이 성매매알선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성매매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매매산업 확산과 성매매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함(제26조 후단 신설)	미처리(계류)		
334	2013-09-12	190680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명칭변경(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수, 성매수 알선 등 범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면개정함(제1조), 성매매를 성매수로 전환하여 정의함으로써 성매수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매수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처벌에서 제외(제2조) 등	미처리(계류)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고 권고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구하고 있음	
335	2013-05-31	190524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의 개정(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에 대한 특례 개정(제11조 제1항 및 제3~5항)	미처리(계류)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336	2013-05-16	190499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정의 개정(제2조 제1항 제5호 신설), 벌칙 개정(제19조 제1항 제4호 신설)	미처리(계류)	별장성접대,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검찰 성접대 등	
337	2013-05-13	190494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19조 1제항 제4호)	미처리(계류)	고위직공무원의성접대 동영상	
338	2013-04-29	19047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5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를 포함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처벌의 형량을 높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의 성을 사거나 그 성매매를 권유·유인한 사람을 처벌하고자 함(제18조의2 및 제21조 제1항 개정)	미처리(계류)		
339	2013-03-08	1904011	성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1인	정의 개정(재2조 제1항 제5호 신설), 금지행위 개정(제4조 제5호 신설), 성매매에 관한 정보의 삭제 등 신설(제17조의2), 벌칙 개정(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340	2014-12-29	191336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 가운데 하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의 법률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률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제2조 제1항 제6호 개정)	원안가결		2015-12-09
341	2014-05-21	191070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음주 약물로 인한 상습범죄의 가중처벌 신설(제3조의2)	미처리(계류)		
342	2013-12-06	190838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소년에 대한 형 삭제(제4조)	미처리(계류)		
343	2013-06-21	190556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소년에 대한 형 삭제(제4조)	미처리(계류)		
344	2013-04-29	190470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누범의 형 개정(제3조)	원안가결	헌재 2008. 12. 26. 선고 2007헌가10·16(단순위헌)	2013-12-19
345	2012-06-20	19002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우의원 등 10인	동법상 특정강력범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함	미처리(계류)		
346	2015-01-30	191387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4 신설). 국민의 해외여행 및 체류가 늘어남에 해외에서 죄를 범하는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경우도 증가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록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47	2012-10-31	190235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1인	현행 형기 3년 초과의 경우 10년, 형기 3년 이하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징역·금고형의 당연실효기간을 형기 5년 초과의 경우 10년, 형기 3년 초과 5년 이하의 경우 7년, 형기 1년 초과 3년 이하의 경우 4년, 형기 1년 이하의 경우 2년으로 세분화하여 단축하고, 현행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의 당연실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	미처리(계류)		
348	2012-08-01	190098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중 개명허가 신청사건 및 가족관계등록기록정정허가 신청사건의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349	2015-12-30	19183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1) 범칙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가능하도록 함(제9조 개정)	원안가결		2015-12-31
350	2015-11-02	191752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종학의원 등 11인	경범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액이 현 정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이는 경범죄 처벌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함, 한편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순히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경범죄 위반행위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차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최근 1년 내에 죄를 처음 범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이러한 경범죄들 중 어느 하나의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습 경범죄 위반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자 함(제5조 제2항 신설)	미처리(계류)		
351	2015-04-07	191463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전자납부시스템 통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8조 제4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2-31
352	2015-02-17	191402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8조 제4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2-31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353	2015-01-27	191381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8조 제2항, 제3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2-31
354	2014-09-11	191165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가능하도록 함(제9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31
355	2014-03-31	190995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2인	임산부 역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속하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켜 임산부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제3조 제1항 제6호 개정)	미처리(계류)		
356	2013-11-26	1908078	경범죄 처벌법 폐지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경범죄 처벌법」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국민의 자유는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음. 본 법안을 폐지하여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과 국민의 자유 침해를 예방하여야 함	미처리(계류)		
357	2013-11-21	19079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1인	경범죄의 종류 개정(제3조 제1항 제39조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무전취식으로 변경, 동조 제3항 무임승차 신설)	미처리(계류)	무임승차자의 부가운임료 부과 거부	
358	2013-11-07	19076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 등 11인	경범죄의 종류 개정(제3조 제1항 제20조 음주소란 등 삭제, 동조 제2항 제5호 음주소란 등 신설)	미처리(계류)		
359	2013-05-14	190497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5인	경범죄의 종류 개정(제3조 제2항 제4호)	미처리(계류)	인터넷 상의 암표거래	
360	2013-02-04	190359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3인	경범죄의 종류 개정(제3조 제2항)	미처리(계류)		
361	2012-09-07	190166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박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미처리(계류)		
362	2012-09-05	190158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	원안가결		2013-04-29
363	2014-12-08	19129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1)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제2조 제3호 마목 개정) 2)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	원안가결		2014-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대안)		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함(제4조 제2항 제8호 신설) 3)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 등의 소송절차에 참석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외에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2 제5항 및 제6항 신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5조제2항 신설)			
364	2014-11-17	19125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대운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내지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도 임시로 경찰관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8조 개정)	미처리(계류)		
365	2014-07-11	19111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와 가정문제의 예방, 가족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가정폭력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제4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4-12-09
366	2014-05-28	191075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개정(제5조), 긴급보호조치 신설(제5조의2), 가정폭력 보호지원담당관 신설(제5조의3), 고소에 관한 특례 개정(제6조), 수사기간의 특례 개정(제7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개정(제8조),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의 수사와 처리 개정(제9조) 등	미처리(계류)		
367	2014-03-21	1909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도 유사강간죄를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제2조 제3호 마목 개정)	대안반영폐기	「형법」이 개정되어 유사강간죄가 신설된 후 2013. 6. 19. 부터 시행되고 있음	2014-12-09
368	2013-07-15	190597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피해자보호명령 등 개정(제55조의2 제5항~6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4-12-09
369	2013-04-08	190443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남인순의원 등 13인	"가정보호사건"을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 변경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70	2013-02-06	19036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명령 개정(재55조의2 제5호 제6호 신설	미처리(계류)		
371	2013-01-03	190323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 각 호 개정(제9조제1항), 형벌에 대한 부가적 처분 신설(제3장의2; 제55조의10부터 제55조의14))	미처리(계류)		
372	2012-12-03	19028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3인	검찰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미처리(계류)		
373	2012-11-07	19024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7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시설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하고, 법무부장관의 이들 위탁감호시설의 지정과 감독, 비용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미처리(계류)		
374	2012-09-06	19016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24인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관찰, 교육,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고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수명령 제도를 신설함	미처리(계류)		
375	2012-09-04	190156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함	원안가결		2013-12-31
376	2012-08-27	19013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은희의원 등 11인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종료된 직후의 현행범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하고, 주취상태로 인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유치장에 24시간 이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4-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377	2016-02-02	19185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여성가족 위원장	1)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였으나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강박의 방법으로 인하여 제58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 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54조 제3항 신설)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은 3천만원으로 하고,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은 2천만원으로 각각 조정함(제58조 및 제59조 개정)	원안가결		2016-02-04
378	2015-07-10	191605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은 3천만원,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은 2천만원으로 각각 조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제58조 및 제59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6-02-04
379	2015-05-06	191506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여성가족 위원장	1) 매체물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8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도 등급 구분을 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등 사전등급 분류를 하는 매체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내용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적임 2)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중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규정함(제61조 제1항 개정)	원안가결		2015-05-29
380	2014-12-05	191284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지난 2014년 5월 28일 이 법 개정으로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벌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벌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제58조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05-2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381	2014-12-03	191278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청소년 보호법과 개별 매체물 관련법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제8조 제1항 단서 삭제),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8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도 등급 구분을 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따라 내용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적임	대안반영폐기		2015-05-29
382	2014-08-21	191144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청소년들이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 및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마 및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조 제5호 가목 10)·11) 개정)	미처리(계류)		
383	2014-07-07	191108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의원 등 11인	현재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중이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아 이를 폐지하고, 청소년에게 낙인효과를 야기하는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문제를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려는 것임(제26조·제59조 제5호 삭제 및 제27조 개정)	미처리(계류)		
384	2014-02-27	190953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여성가족 위원장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하되, 경마나 경정·경륜이 개최되지 아니하는 날은 제외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제2조 제5호가목 10) 및 11) 신설) 2)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8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7호의2 및 제59조 제7호의2 신설)	원안가결		2014-02-28
385	2014-02-21	190947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구매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물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강화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제28조 제9항 및 제59조 제7호의2 신설)			
386	2013-12-02	190825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을 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제32조의2 및 제64조제3항 신설)	미처리(계류)		
387	2013-11-26	190808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제58조의2 신설 및 제60조 삭제)	미처리(계류)		
388	2013-10-02	19071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제63조제2항 신설)	미처리(계류)		
389	2013-08-19	19064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6인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8조 제4항·제45조 제1항제7호의2 및 제59조 제7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경찰청에 따르면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급증	
390	2013-05-08	190487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조 제5호 가목 10) 및 11)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4-02-28
391	2013-03-05	190395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6인	1) 청소년연예인을 관리하는 자가 음란한 내용의 공연, 특정 신체부위를 성적인 목적으로 지나치게 노출·강조하는 공연을 청소년연예인에게 요구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할 수 없도록 함(제30조의2제1항 신설) 2)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가 청소년연예인이 음란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매체물을 제작·발행·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0조의2 제2항 신설) 3)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소년연예인의 선정적인 공연을 하는 내용을 담은 매체물에 출연하는 청소년연예인의 의사에 반하는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에게 제작·발행·송신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2제3항 신설) 4) 청소년연예인에게 음란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강조하는 내용의 공연을 요구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매체물의 제작·발행·송신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59조 제10호 신설)			
392	2013-02-04	190358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0인	게임산업 규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게임 이용자의 규제위반 동기를 낮추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셧다운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26조 제4항 신설)	미처리(계류)		
393	2012-11-27	190282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청소년의 정의 중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제2조제1호 개정).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성년과 미성년(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394	2012-09-27	190204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언론매체 역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등을 게재하는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조 제2호 사목 및 아목 개정)	미처리(계류)		
395	2012-09-25	1901942	청소년 보호법	이원욱의원	옥외광고물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폐기		2013-04-14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등 13인	이 마련함과 아울러, 나이 및 본인 확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한 후 이를 배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당 범죄 및 해당 범죄와 불법성이 유사한 범죄들의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하고 교사범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유해환경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58조제1호, 제58조제1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 등)			
396	2012-09-10	19016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나이 및 본인 확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한 후 이를 배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해당범죄 및 해당범죄와 불법성이 유사한 범죄들의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환경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제16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호 개정)	철회		2012-09-12
397	2012-06-22	190026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의원 등 10인	1) 청소년의 보호의무자는 환각물질의 흡입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환각물질의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에서 환각물질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판별검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함(제29조의2 제1항 신설) 2)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을 준용함(제29조의2 제2항 신설) 청소년의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하여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서처럼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부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정가결		2014-05-02
398	2015-09-18	191688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소년 형사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 및 방과 후 재판 실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제58조 제3항 및 제58조의2 신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부정적 영향을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최소화하고, 인격 개선 가능성이 높은 소년의 특수성을 심리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소년 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구속력 및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399	2015-08-21	191652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허가 신청 주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권한 행사 여부가 불분명해 열람·등사권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등사 권한의 주체로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권리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0조의 개정)	미처리(계류)		
400	2015-03-20	191438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의원 등 12인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의2 제1항 개정). 현행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처리(계류)		
401	2015-02-24	191404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취소, 변경은 판사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고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소년의 권리보호 및 최소한의 방어수단 구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을 내린 경우 소년 또는 보호자가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항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제18조 및 제43조 개정)	미처리(계류)		
402	2015-01-29	1913844	소년법	부좌현의원	현행법은 관할 소년부에서 범죄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만 진술거부권 고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인	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소년,촉법소년, 우범소년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0조 개정).			
403	2015-01-13	191366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20인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형벌인 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할 것임. 그러나 형벌인 구금은 미결구금일수가 통산되는 것과는 달리,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 결과 송치기간이 감형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상의 형벌인 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판결에 따른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되지 않아 집행과정상 결국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년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는 구금으로 보아 그 기간을 통산하고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구금과 유사한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통산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도 소년원 송치 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더욱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3조 제8항, 제45조 제3항 및 제47조 제2항 개정).	수정가결		2015-11-12
404	2014-07-14	191113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2인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과는 이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별도로 사건 처리에 관한 피해자 통지제도가 없어 피해자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소년부가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 기일·장소, 심리 결과 등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제30조의3 신설).	미처리(계류)		
405	2013-12-06	190838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개정(제59조, 징역기간 상향조정), 가석방 개정(제65조제1~2호, 징역기간 상향조정)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406	2013-11-25	190800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의원 등 13인	임시위탁영장 신설(제8조의2,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 구속 시 소년의 분리수용 개정(제55조 제1항 삭제)	미처리(계류)		
407	2013-11-22	190800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의원 등 17인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개정(제4조 제1항 제2호(보호소년 연령을 14세를 12세로 하향), 심리 기일의 지정 개정(제21조 제1항 단서삭제)	미처리(계류)		
408	2013-11-01	190744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보도 금지 개정(제68조 제2항,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원안가결		2013-12-19
409	2013-06-21	190556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개정(제59조), 부정기형 개정(제60조 제1항)	미처리(계류)		
410	2014-09-18	1911745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주취·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가 곤란하므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1) 치료명령의 적용대상을 주취·정신장애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제2조의3 신설)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제37조제5항 신설) 3) 검사는 주취·정신장애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가 치료에 대한 동의를 하고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4)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 동기, 심리 상태 및 병력 등 피의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3 신설) 5)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에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4, 제44조의5 신설) 6) 치료명령은 의사의 진단과 약물 투약 등 조치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 통원치료를 내용으로 보호관찰	수정가결		2015-11-1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관이 집행하도록 함(제44조의8 신설) 7) 법원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10 신설) 8)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되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11 신설)			
411	2014-04-14	1910167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치료감호대상자 개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장애자'라는 그릇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	원안가결		2014-12-09
412	2013-12-18	1908628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법제사법 위원장	기부금품의 접수 신설(제50조의2), 벌칙 개정(제52조 제8항,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원안가결		2013-12-19
413	2013-12-04	1908330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52조 제5항, 거짓신고 벌금 상향조정 등)	미처리(계류)		
414	2013-11-29	190819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치료감호대상자 개정(제2조 제1항 제4호, 치료감호대상자에 공감능력결여자 추가)	미처리(계류)	묻지마범죄 빈번발생	
415	2013-11-01	190745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52조 제8호,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대안반영폐기		2013-12-19
416	2013-06-27	1905703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법제사법 위원장	1)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유사강간죄, 해상강도강간죄 및 강도강간 미수죄를 추가함(제2조의2 개정)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3) 법무부장관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제16조의2 개정) 4)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씩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여부에 관하여 결정함(제21조의2 및 제37조 제3항 제1호	원안가결		2013-06-27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개정) 5)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록'이 부과된 피보호관찰자는 등록한 정신보건센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함(제34조제2항 개정) 6)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제36조의2 개정) 7)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외래치료를 실시할 수 있음(제36조의3 개정) 8)보호관찰 중인 가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종료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가종료자의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함(제36조의4 개정)			
417	2012-11-27	1902822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418	2012-11-19	190266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419	2012-10-04	1902127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1)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범죄자를 '감호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치유될 때까지' 치료감호를 실시함 2)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피치료감호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에 앞서 형벌을 우선 집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형벌을 먼저 집행하도록 판결을 선고함 3)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록'이 부과된 피보호관찰자는 등록한 정신보건센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함	대안반영폐기		2013-06-27
420	2012-09-11	190172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10인	치료감호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기가 종료되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호를 집행함	대안반영폐기		2013-06-27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421	2015-12-30	19183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보행자 사고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노인 및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져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와 같이 운전자 특례적용의 예외 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함(제3조 제2항 제12호 신설)	미처리(계류)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 등 보행자 안전도는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이 중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린이 보행사고에 비해 감소되지 않는 추세	
422	2015-04-16	191475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미처리(계류)		
423	2015-03-13	191428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불구'라는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제4조 제1항 개정)	미처리(계류)		
424	2013-12-06	1908399	선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안	윤명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의하면, 육상 교통사고에서는 도주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이행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찰의 기소를 금지하고 있지만 선박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작은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해자의 구호의지를 고취시키려고 하려는 것임.	미처리(계류)	최근 5년간 해상뺑소니의 검거율은 61.6%로, 육상 도주차량 범죄의 검거율 89.6%에 비해 낮고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425	2013-08-20	190645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조 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426	2013-03-28	19043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 등 10인	처벌의 특례 개정(제3조 제2항 제12호)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427	2013-03-25	190424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 구조·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또는 경찰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신호 또는 안전표지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관련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철회		2015-05-06
428	2013-02-27	190388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소방차, 구급차 등의 특례 신설(제3조의2)	미처리(계류)		
429	2012-07-09	190059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에 이 경우 처벌규정 보완함	미처리(계류)	부평 학교 운동장 교통사고	
430	2012-07-09	190058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1인	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미처리(계류)		
431	2015-12-29	19183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주화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화훼손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별표 제33호 개정)	미처리(계류)		
432	2015-09-09	191679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정보기관, 검찰, 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차단, 예방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범죄 목록(제2조 제1호 관련 별표)에 국가안보 위해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별표 개정)	미처리(계류)		
433	2014-05-28	191076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김재원의원 등 10인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등 개정(제3조), 범죄수익등의 수수(제4조), 몰수의 요건 등 개정(제9조), 추징 개정(제10조), 현행 범죄수익 등의 은	수정가결	유병언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어려움.	2014-11-07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닉·가장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죄질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므로 그 형량을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이에 맞추어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에서 3년, 범죄수익 수수의 범죄의 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434	2014-01-07	19090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별표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제3호·제4호의 죄.	미처리(계류)	연예인 불법스포츠베팅	
435	2013-11-07	190763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등 개정(제3조 제4항 신설, 명의대여자 처벌)	미처리(계류)		
436	2013-09-06	190673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범죄수익등의 수수 및 운반 등 개정(제4조 제2항 신설), 별표 제19호, 19호의2~3신설(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미처리(계류)		
437	2013-09-04	190669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중대한 범죄는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생긴 수익과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조 제2호 나목)	미처리(계류)		
438	2013-06-20	190555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7인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명단 공개 신설(제10조의2)	미처리(계류)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미납	
439	2013-06-04	19053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6인	별표 중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의 죄	미처리(계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이용자의 계좌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전자금융거래가 종종 발생	
440	2013-05-30	190518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6인	시효에 관한 특례 신설(제14조)	대안반영폐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시효 임박	2013-06-27
441	2013-04-29	19047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법제사법 위원장	1)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13조 신설) 2) 중대범죄 추가(별표 제1호 하목·별표 제24호 개정, 별표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형법」에 따른 배임수증재(背任收贈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행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여 해당 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원안가결		2013-04-30
442	2012-12-31	190318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이 법의 범죄수익에 포함시켜 몰수의 대상으로 함	대안반영폐기		2013-04-30
443	2012-11-15	190260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1인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범인에게는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3-06-27
444	2012-10-25	190227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이낙연의원 등 12인	가짜석유 제조 등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마련함	대안반영폐기		2013-04-30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5	2016-02-29	19185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신위원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 규정을 도입함(제32조 제2항·제3항 신설 및 제75조의2 신설)	원안가결		2016-03-02
446	2015-11-17	19177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11인	수사 및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본인에 관한 열람 등 요구가 있을 시, 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밀행성'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의무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수사, 재판, 조사를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제30조 제2항 제2호 단서 신설)	미처리(계류)		
447	2015-11-02	19175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 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제32조 제2항·제3항 및 제75조의2 신설 등), 정보통신망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재를 차별하여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하나의 사업자가 두 법률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균형을 맞추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상 1) '징벌적 손해배상', 2)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 규정, 3)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관련자에 대한 검사 권한 등에 대한 규정	2016-03-02
448	2015-10-29	19174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1) 정당한 사유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제70조의2 신설) 2)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제71조 제8의2호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6-03-0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449	2015-10-14	19171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매개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함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을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면책요건을 규정함(제44조의8 제1항 신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면책 요건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제44조의8 제2항 신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면책 요건과 관련하여 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제44조의8 제3항 신설)	미처리(계류)	정보통신망 이용자들 사이에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매개자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450	2015-10-08	1917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3인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법 적용의 혼란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제25조 등 개정) 2)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제만으로는 재산적 피해 보전 어려움 및 피해방지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제32조의3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6-03-02
451	2015-08-31	19166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의원 등 13인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접근권한으로 이용자의 기기, 정보, 기능에 접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1조 1호, 제76조 1항 1호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6-03-02
452	2015-08-24	19165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공고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단서, 제70조 제3항 개정)	미처리(계류)		
453	2015-07-10	1916055	정보통신망	황주홍의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미처리(계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인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및 제74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등)		스(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타인사칭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	
454	2015-04-09	19146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이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제74조 제8호 신설 등)	미처리(계류)	SNS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당사자의 인간관계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455	2015-04-02	19145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 등 10인	결혼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한 가정과 혼인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2 신설). 지금까지는 소위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에 대하여 시정요구권을 근거로 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왔음. 이는 현행법에서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통한 접속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나, 최근의 헌재 결정에 따라 간통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므로 같은 사유로 이러한 접속차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	미처리(계류)	최근의 헌재 결정에 따라 간통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므로 소위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에 대하여 이러한 접속차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	
456	2015-03-26	19144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음란한 내용'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명예훼손·공포심 조장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민사소송 또는 분쟁조정절차로 갈등을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이에 현행법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및 시정요구의 사유 중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명예훼손·공포심 조장 등의 사유는 삭제하고 당사자간 절차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제44조의7 및 제74조 개정).			
457	2015-03-11	19142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제44조의7 제1항 제9호 신설).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통한 접속차단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혼자의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하여 범죄의 하나인 간통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해왔으나 최근의 헌재 결정으로 기존과 같은 제한이 불가능.	미처리(계류)	최근의 헌재 결정에 따라 간통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므로 소위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에 대하여 이러한 접속차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	
458	2015-02-27	19140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민, 형사상의 소 제기를 이유로 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제44조의6 및 제73조 개정). 현행법은 사인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으려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사주하여 편법으로 수사정보를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음.	미처리(계류)		
459	2014-12-29	19133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 등의 규제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제2조의2 신설).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물 등의 불법정보는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상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만 불법정보 유통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있음.			
460	2014-07-15	19111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제74조 제1항 제6호 삭제, 제74조의2 신설).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본법에서의 처벌수준이 낮아 이러한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유사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수정가결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가 발생	2015-03-03
461	2014-05-02	19104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벌칙 개정(제70조 제1항, 제73조, 제74조, 처벌 상향조정),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 영리성 광고정보 전송조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 등, 본인확인제 제한	원안가결	헌재 단순위헌	2014-05-02
462	2014-05-01	19104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개정(제44조의7 제8호의2 신설), 벌칙 개정(제71조 제8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허위보도, 허위사실 유포	
463	2014-04-08	19101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0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개정(제44조의7),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개정(제6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에 있어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의무조항으로 규정 및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한	미처리(계류)		
464	2014-04-07	1910078	정보통신망	김태원의원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개정(제50조의8 제2~3항 신설,	미처리(계류)	인터넷사설불법스포츠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인	정보삭제 및 검색제한), 벌칙개정(제74조)		베팅	
465	2014-03-12	1909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보전송역무 제공 등의 제한 개정(제50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전화 단말기 침해 금지 신설(제50조의9), 벌칙 개정(제71조 제12호), 스미싱 등 통신이용범죄에 대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대상으로서의 불법 광고 및 통신이용범죄를 확대	미처리(계류)		
466	2014-02-13	1909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개정(제45조의3), 벌칙 개정(제73조 제9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대안반영폐기		2014-05-02
467	2014-02-05	19092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73조, 발신번호를 변작한 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대안반영폐기		2014-09-30
468	2014-02-03	1909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개정(제27조의3),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신설(제3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개정(제64조의3)	대안반영폐기	카드사 정보유출	2014-05-02
469	2013-10-30	19073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70조 제1항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	대안반영폐기		2014-05-0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470	2013-09-06	19067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정의 개정(제2조 제1항 제13호 신설; 인기검색어 관련 정의 추가), 정보검색결과의 조작 금지 등 신설(제50조의9), 벌칙 개정(제74조 제1항 제8호 신설), 과태료 개정(제76조 제1항 제11호 신설)	미처리(계류)	인기검색어조작대행업 체성행	
471	2013-07-23	19061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등 10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개정(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신설, 동조 제2항), 벌칙 개정(제70조 제3~4항 신설, 동조 제5항 개정)	미처리(계류)	사회적 이슈가 된 '리틀 싸이' 의 경우에서와 같이 인터넷상의 악성댓글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	
472	2013-06-26	19056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1인	개인정보의 파기 개정(제29조 제1항), 벌칙 개정(제73조 제1호의2 신설), 과태료 개정(재76조 제1항 제4호)	대안반영폐기	중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30대를 무작위로 구입해 간단한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구·재생한 결과 기업과 개인의 기밀정보가 복구·재생되어 논란	2014-05-02
473	2013-05-13	19049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개정(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2 신설), 벌칙 개정(제73조 제4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헌재 단순위헌/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사건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	
474	2012-11-14	19025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김희정의원 등 10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장애를 주는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 장애를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75	2012-10-08	1902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4-05-02
476	2012-09-10	19016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한 자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미처리(계류)		
477	2012-08-24	19012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해킹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함	미처리(계류)		
478	2012-08-17	19011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등 17인	소액결제 깡을 알선·중개·권유하거나 또는 이를 위해 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원안가결		2014-12-29
479	2012-07-04	19004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유출시의 피해자 보호	미처리(계류)	개인정보 유출사고	
480	2012-06-22	1900265	정보통신망	박영선의원	1)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인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 2)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허위사실의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인 또는 공직자로서 그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경우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481	2015-12-31	19183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 위원장	1)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버섯을 추가함(제3조 제6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9조제1항 제6호·제7호 및 제61조 제1항 제3호 개정) 2) 대마의 취급 승인의 범위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확대함(제3조 제7호 개정)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하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색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함(제16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7조 제2항 신설)	원안가결		2015-12-31
482	2015-04-30	19149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 위원장	1)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을 면제하도록 함(제10조·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1조 삭제,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개정) 2) 병원·약국의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및 제약회사 등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제11조 개정)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제13조 제2항 신설)	원안가결		2015-04-30
483	2015-02-09	19139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등 14인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제17조 각 호 신설)	미처리(계류)	최근 비만치료제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484	2014-03-28	19099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1)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을 면제하도록 함(제10조·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1조 삭제, 제32조 제2항 및 제35조 개정) 2) 병원·약국의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및 제약회사 등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제11조 개정)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제13조 제2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04-30
485	2014-02-27	19095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 위원장	1)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예고하는 기간 중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2 및 제47조). 2) 마약류의 수출입허가사항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추가하도록 함(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허목 신설).	원안가결		2014-02-28
486	2013-12-06	190837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제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제3조 제12호 및 제64조 제1호의2 신설). 현행법상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의 행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처리(계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 등을 합성하여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경우가 증가	
487	2013-08-23	19065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김용익의원 등 10인	1)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에 예고하는 기간을 거쳐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제5	대안반영폐기		2014-02-28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조의2 및 제47조 개정) 2) 마약류의 수출입허가사항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추가하도록 함(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허목 신설)			
488	2013-07-02	19058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6인	마약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에 관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불법·과다처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제32조의2 신설, 제44조 제1항 제1호 거목, 제63조 제1항 제8호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04-30
489	2013-06-26	190567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용어 정의 및 관련 조항 정비(제11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 개정). 2)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허가제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 신설 및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제44조 제1항 개정), 마약류 취급 승인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마약류취급자와 그 의미가 혼재되어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비하고, 2011년 시행된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허가제에 대하여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신설함. 또한 법률에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던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맞추어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원안가결	법률에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던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2013-06-27
490	2013-05-21	19050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10인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함(제17조제2항 신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제조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투약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그 품목별 권장기준에 따른 포장단위로 제조하여 공급하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491	2013-02-15	19037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 등 13인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44조 제1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2013-06-27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가93)	
492	2013-02-15	19037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0인	마약류 중 대마의 제조사범·매매사범 간의 법정형을 마약범죄별로 적정한 처벌을 정함으로써 양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마약관리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임(제60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61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현행법에서 대마의 흡연을 위한 매수행위가 대마 흡연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가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반면에 대마를 절취하여 흡연한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통상 수익을 목적으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확산시키는 매도사범과 대마흡연을 위한 매수사범 간에 법정형이 동일하는 등 부당한 양형기준의 불균형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미처리(계류)		
493	2012-12-31	190317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용어 정의 및 관련 조항 정비(제11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개정),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마약류취급자와 혼재되어 해석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재정비하고,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제4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취급승인받은 자로 정의하고 관련 항목에 마약류취급승인자를 명기하여 그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반영폐기		2013-06-27
494	2015-11-18	191779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공사에 사용하거나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2조의2 및 제97조제5호 신설)	미처리(계류)	저가의 수입산 건설자재·부재가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	
495	2015-09-04	19167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가능기간'으로 바꿈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제28조 제2	미처리(계류)	일본식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항 개정)			
496	2015-06-29	19158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3인	1) 건설업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5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함(제95조 개정) 2) 건설관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자를 임원 또는 직원까지 명확히 함(제38조의2 개정) 3)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봄(제90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6-01-08
497	2015-03-19	191437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소규모의 건축 또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제41조 제1항 단서 개정)	대안반영폐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의 증축·개축 등의 건설공사까지도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만 하는 불합리 개선	2016-01-08
498	2015-02-16	19140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수급인이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수급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하려는 것임(제38조의3 및 제97조의2(3억원 이하의 벌금)신설, 제98조제2항 본문 개정)	대안반영폐기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2016-01-08
499	2015-02-04	19139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등 11인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임(제42조 개정)	미처리(계류)	저가의 수입산 건설자재·부재가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	
500	2014-12-10	19130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2인	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당초 하도급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고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계약서 등을 발급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제97조(벌칙) 개정) 2)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 및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3 신설, 제96조(벌칙) 개정)	대안반영폐기	하도급자의권익을보호하고공정한건설하도급거래질서를확립	2015-07-24
501	2014-04-29	191036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장	1)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원안가결		2014-04-2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대안)		개선·보완하고자 함(제96조 개정) 2)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제97조 개정, 벌금형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병과)			
502	2014-02-13	190937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10인	벌칙 개정(제95조, 징역기간 하향), 벌칙개정(제97조, 벌금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대안반영폐기		2014-04-29
503	2013-10-31	19074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95조 벌금형, 징역형 하향, 제97조 벌금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대안반영폐기		2014-04-29
504	2013-04-23	19046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개정(제22조 제3항 신설, 동조 제5항), 과태료 개정(제99조 제2~3항), 시정명령 개정(제81조 제3~4호), 영업정지 개정(제82조 제8호)	미처리(계류)		
505	2013-12-20	190867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62~64조, 벌금상향조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원안가결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2014-02-28
506	2013-11-27	19081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62~64조, 벌금상향조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철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2013-12-19
507	2013-05-06	190484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태료 개정(제66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동조 제1항 제6호의2 신설, 동조 제1항 제7~10호, 동조 제1항 제16호. 제66조 제2항 제3~5호 및 제11호 제13호 삭제, 동조 제2항 제7호 8호 제15호 개정, 동조 제3항)	원안가결		2013-05-07
508	2016-01-08	191844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제24조의2 신설)	원안가결		2016-01-08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는 한편, 관리 기준 위반시 벌칙을 부과함(제48조의3 및 제110조제9호의3 신설)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와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함(제105조 개정) 4) 건축관계자 벌칙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 신설(제 107조부터 제111조까지 개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도를 위반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500만원 ~ 1억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하고, 일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자를 추가함			
509	2015-12-23	191825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제77조의10 위반시 벌칙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제108조, 제110조 개정)	원안가결		2015-12-28
510	2015-09-30	19170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건축협정의 효력(제77조의10), 결합건축 기간 및 효력(제77조의16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벌칙에 포함(제108조, 제110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위함	2015-12-28
511	2015-06-29	19158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1)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제105조 개정),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및 지역건축센터 등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함 2) 건축관계자 벌칙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 신설(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개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도를 위반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1천만 ~ 1억원 이하의 벌금"을 "1억 ~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하고, 일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자를 신설하거나 삭제함	대안반영폐기	2015년 6월 29일은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임.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8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 담양 펜션	2016-01-08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화재(4명 사망) 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512	2015-05-22	191525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1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건축사의 범위에 건축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임(제25조 제1항 개정)	미처리(계류)		
513	2015-04-23	19148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외벽 마감재료로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제52조 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공공안전	
514	2015-03-30	19144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제52조 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공공안전	
515	2015-03-20	19143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부속구조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지 아니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0조 제9호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공공안전 2014년10월에발생한 판교환기구추락사고	2016-01-08
516	2015-02-02	191387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3인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제52조 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앞으로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 안전 사고 예방	
517	2014-12-08	19129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제106조 제1항 개정) 2)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공사시공자·감리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110조 제11호 신설)	원안가결	공공안전	2014-12-09
518	2014-09-15	19116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의원 등 12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전문가가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미처리(계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리관련 규정이 없어 최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5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근 건축물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발	
519	2014-07-04	19110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등 15인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이전·대수선하거나 철거하려는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8조 제3항 신설, 제111조 제4호 개정)	미처리(계류)	지난 5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건축물의 붕괴로 인해 도시가스배관이 파손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	
520	2014-06-09	19108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1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제106조 제1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4년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건축물 붕괴 사고	2014-12-09
521	2014-05-01	19104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25인	무단 용도변경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제107조의2 신설)	미처리(계류)	경주의 한 리조트시설 체육관에서 지붕이 붕괴되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체육관은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음	
522	2014-04-29	191037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제111조 개정) 2)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제111조	원안가결		2014-04-2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개정) 3) 제111조 벌금 상향 조정(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23	2014-03-21	19098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현행법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제48조 제2항 개정)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미처리(계류)		
524	2014-02-05	19092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4인	공장, 창고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붕을 내화구조화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50조 제1항 개정)	미처리(계류)		
525	2013-12-10	19084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1)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함)을 명시함(제52조 제1항 개정) 2) 건축물에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제52조의2 제1항 신설) 3)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건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복합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제52조의2 제2항 신설) 4)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110조 제11호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4-12-09
526	2013-08-14	190637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실내건축을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구조·재료 등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및 제111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4-04-29
527	2013-07-23	19061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41조에 따른 공사시공자의 의무행위 대상 범위를 기존의 굴착에서 굴착·절토·매립·성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확대시키고, 허가권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대안반영폐기		2014-04-2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토지 붕괴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제41조 개정)			
528	2013-06-14	190549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개정(제49조 제1항), 벌칙 개정(제110조 제9호의2)	미처리(계류)		
529	2015-03-06	191418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충전하려면 미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인지 여부 및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3조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530	2014-12-26	19132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산업통상 자원위원장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품질기준에 맞게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2)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제18조의3 신설) 3)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원안가결		2014-12-29
531	2014-04-03	19100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40조 제8~9호 신설),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대안반영폐기		2014-12-29
532	2013-09-23	190693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1인	무자격자의 용기수리 등의 행위를 방지 처벌하는 규정마련을 위해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개정(제5조 제3항 신설), 벌칙 개정(제42조 제1호), 과태료 개정(제43조제2~4항)	대안반영폐기		2013-12-26
533	2013-06-10	190540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폭발방지장치 미부착 제조자에 대한 벌칙 신설(제40조의2)	미처리(계류)		
534	2013-06-05	1905343	고압가스	이명수의원	안전장치 미부착 제조자에 대한 벌칙 신설(제40조의2)	철회		2013-06-10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인				
535	2015-12-09	1918093	골재채취법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미신고 골재 선별·세척·파쇄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제49조 개정)	원안가결		2015-12-09
536	2015-10-13	191715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골재선별·세척 등의 미신고로써 사업영위를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을 미허가로서 사업영위를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 수준으로 상향함(제49조제7호 및 제50조제5호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09
537	2014-12-08	1912919	골재채취법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처벌의 실효성 및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함(제49조 및 제50조 개정)	원안가결		2014-12-09
538	2014-11-07	191236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10인	위탁 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 수행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제47조의3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2-09
539	2013-12-05	190835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49~50조, 벌금상향조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대안반영폐기		2014-12-09
540	2014-12-29	1913319	국민연금법일부 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 위원장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12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원안가결		2014-12-29
541	2013-11-18	19078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128조 제1~2항, 벌금 상향조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대안반영폐기		2014-12-29
542	2015-01-09	191358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농림축산 식품해양수 산위원장	제25조제2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25조제2항 개정)	원안가결		2015-01-12
543	2014-05-29	191077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5조제2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01-1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544	2012-07-23	190079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어법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수정가결		2013-02-26
545	2015-06-26	1915807	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의 대상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포함시켜 농어민들이 말산업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32조 제1항 제10호 신설)	미처리(계류)	정부가 말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말산업 육성에 가장 필요한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음	
546	2014-09-17	1911737	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따라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이내의 범위에서 전주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공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대상에서 제외함(제34조 제1항 제6호 신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게 되면 5년(농업진흥지역) 내지 3년(농업진흥지역 밖)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농업진흥지역) 내지 해당 토지가액의 50/100의 벌금에 부과됨. 이는 농어업인과 통행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임.	미처리(계류)		
547	2013-10-07	190718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58~59조)-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원안가결		2014-09-30
548	2016-02-02	1918509	담배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 위원장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 상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한 바, 특수용 담배를 용도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액체형태의 담배의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5조의2 제1항, 제27조의2제1항3호의2 신설 및 제28조제1항제3호 삭제)	원안가결		2016-02-04
549	2015-12-16	191820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제11조의7 신설, 제27조 개정)	미처리(계류)		
550	2015-05-19	1915191	담배사업법	박맹우의원	1)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의 경우에는 경고문구에 해당 제품은	대안반영폐기		2016-02-04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인	전자담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을 표시하도록 함(제25조 제1항 후단 신설) 2)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은 1밀리리터당 니코틴 함유량 및 전자담배 흡연시 기체 성분에 포함된 니코틴과 주요성분의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도록 함(제25조의2 제2항 신설) 3) 전자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			
551	2015-03-26	19144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니코틴 함량이 2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제12조 제3항 제5호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포장지 및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되, 광고에 표시할 경우 경고그림은 제외하도록 함(제25조 제1항) 3)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은 담배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함(제25조 제2항 신설) 4) 니코틴 함량이 초과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의2 제4호 신설)	대안반영폐기	현재 담배갑에 표시하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문구로는 효과가 미흡	2016-02-04
552	2015-02-27	19140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식의원 등 15인	1)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제11조의7 신설) 2)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 제1항 제3호 신설)	미처리(계류)		
553	2015-01-22	191377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 등 10인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제25조의2 제1항 개정)	미처리(계류)		
554	2014-12-04	191281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용 담배인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용 담배로 용도를 변경하여 대량 판매	대안반영폐기		2016-02-04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되었고, 이 수출용 담배가 국내에 대규모 불법 유통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 상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또한 특수용 담배가 다른 용도에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법정형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11조의4 제6호,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의2 신설 및 제28조 제1항 제3호 삭제)			
555	2014-11-07	19123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전자담배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는 한편, 전자담배의 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 제3호 신설 및 제25조의2 제1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6-02-04
556	2014-10-15	191204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조의6 및 제27조의2 제1항 제8호 신설)	미처리(계류)		
557	2014-09-15	191169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1) 담배의 한 개비의 생산국별(원산지) 연초 구성비율을 표시하도록 함(제25조의2 제1항 개정) 2)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 제1항 제3호 개정)	미처리(계류)		
558	2014-03-04	19096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1)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연초의 잎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담배갑의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24조의2 제1항·제2항, 제27조 및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의2 신설). 2)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제5항 및 제27조의3 제1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559	2013-12-26	1908764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문구 등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제25조의5 및 제27조의2 제7호 신설)	원안가결		2013-12-26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2)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발화성담배의 도입 및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제2조 제2호, 제11조의4 제4호,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5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7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560	2013-10-17	19073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1인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3-12-26
561	2012-09-21	190191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 등 10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3-12-26
562	2014-12-09	191294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제48조 제4항 및 제8항 신설)	원안가결		2014-12-09
563	2014-07-04	191107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 등 가스사용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의 장애를 입혀 가스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제48조 제3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입법적 공백	2014-12-09
564	2013-12-30	19088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 개정) 2)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와 모회사로 한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 개정) 3)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원안가결		2013-12-31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제9호의3 신설, 제10조의2)			
565	2013-11-04	190750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48조 제5항, 징역기간 및 벌금 상향조정)	미처리(계류)		
566	2013-02-04	190360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등 13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신설(제17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과태료 신설(제54조 제5호의2)	대안반영폐기		2013-07-02
567	2013-10-31	190740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53조, 벌금상향조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원안가결		2014-12-09
568	2012-08-30	19014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569	2012-08-14	19011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함	미처리(계류)		
570	2012-08-07	190108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 등 12인	국가도시공원재단 임직원의 과실에 따른 형법상의 벌칙은 공무원에 준함	대안반영폐기		2016-03-03
571	2012-08-02	19010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 등 14인	국가도시공원재단 임직원의 과실에 따른 형법상의 벌칙은 공무원에 준함	철회		2012-08-07
572	2014-12-26	19132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9조 제1항 개정).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9조 제1항 제3호 신설)	원안가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 공공안전	2014-12-29
573	2014-03-18	190978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행위의 금지 개정(제39조 제1항), 벌칙 개정(제45~46조),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안반영폐기		2014-12-2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처함			
574	2013-11-04	19075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44조 제1~4호 삭제-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상 벌금), 벌칙 신설(제44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상 벌금)	대안반영폐기		2013-12-26
575	2014-12-09	191299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무선통신 중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벌칙 신설(제29조의2 신설, 제86조 제1의2호 신설)	미처리(계류)	공공안전(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발생시에 구호요청 등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 목적)	
576	2014-12-09	1912936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장	1)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 개정) 2)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우수사업장"의 용어를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제20조, 제21조, 제46조, 제75조, 제80조 개정) 3)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등의 결함을 발견한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제74조 개정) 4)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화물 고박 불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함(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9조 개정).	원안가결	공공안전(세월호 사고 대책)	2014-12-09
577	2014-11-20	1912570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1)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는 행위,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승인을 얻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82조의2 신설) 2)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행위,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대안반영폐기	공공안전(세월호 사고)	2014-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제84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신설)			
578	2014-10-02	191195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2인	여객선의 여객 정원수와 화물적재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개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구명정·구명동의 등의 비치 및 유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5조, 제26조의2 및 제84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공공안전(세월호 사고)	2014-12-09
579	2014-09-19	1911750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1) 선박시설의 개조시에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선박의 구조 배치 등의 변경이나 선박시설의 개조시에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상의 복원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조가 가능하도록 함(제15조 제2항 개정)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용 물건을 제조·정비한 자, 선박검사원, 선체의 두께를 측정한 자 및 승인, 검정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제83조 개정) 3) 화물 고박 불량,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89조 개정)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우수사업장"의 용어를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제20조, 제21조, 제46조, 제75조, 제80조 및 제83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공공안전(세월호 사고)	2014-12-09
580	2014-06-26	191100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84조 제1항,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등이 과승 혹은 과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징역기간 및 벌금 상향조정)	대안반영폐기	세월호 사건	2014-12-09
581	2014-04-25	191031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2인	벌칙 신설(제83조의2), 선박관련 검사에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승무원의 배치, 안전물품의 비치, 선박항해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에 따른 벌칙 규정을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4-12-09
582	2015-03-19	1914368	선박직원법일부 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함(제26조의3 개정)	미처리(계류)	세월호사고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583	2014-05-12	1910554	선박직원법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정할 때 선박의 크기 이외에도 여객정원을 주요하게 고려토록 하여 선박직원의 여객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장 등의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연안여객선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 능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제11조 제1항 개정)	미처리(계류)	세월호사고	
584	2014-04-30	191041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27조, 벌금상향조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원안가결		2015-03-03
585	2015-01-07	191356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및 한약제제, 화장품 및 화장품 사용원료까지 확대 정의함(제2조 제3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값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증가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	
586	2014-04-16	191020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제조하여 판매·처방하거나 판매 또는 조제·제조하여 판매·처방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 신설(제6조 제3항 신설)	미처리(계류)		
587	2014-01-20	190910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상습범 개정(제16조의2,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	미처리(계류)		
588	2013-12-06	190840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과징금 개정(제11조의2, 2년간 2회 이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의 10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등)	수정가결		2014-05-02
589	2013-12-04	19083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14~15조 징역 하향조정)	미처리(계류)		
590	2012-09-11	1901736	농수산물의	조경태의원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인	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591	2013-12-30	19088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시·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이에 대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누설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28조의2 신설) 2)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함(제46조 제2항 개정) 3)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48조의2 및 제50조 개정)	원안가결		2013-12-31
592	2013-11-04	19075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46조 제2항, 징역기간 및 벌금 상향조정), 벌칙 신설(제48조의2, 위반행위자 신설), 벌칙 개정(제50조, 위반행위자 삭제), 양벌규정 개정(제51조)	대안반영폐기		2013-12-31
593	2014-12-09	1912939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제20조의4 제2항 신설) 2)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2조 제3호·제4호 신설 및 제34조 제4호 삭제)	원안가결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	2014-12-09
594	2014-09-15	191168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 등 11인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내산 양곡이라 하더라도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0조의4 신설 등)	대안반영폐기		2014-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595	2014-07-11	191112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3인	1) 양곡가공업자, 수입업자, 매매업자 등은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 쌀의 재포장을 금지하며 다만 현미형태로 수입된 쌀은 제외함(제20조의4 신설) 2)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2조 제3호 신설)	미처리(계류)		
596	2014-07-07	191109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쌀과 현미 등 양곡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고 혼합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해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0조의4 및 제32조 제4호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4-12-09
597	2014-04-03	19100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국내 양곡수급 안정과 쌀 생산기반 보호 및 거짓 허위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혼합미곡의 관리와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제20조의4 및 제34조 제4호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4-12-09
598	2014-04-01	19099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운룡의원 등 11인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양곡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내에서 생산된 양곡과 수입 양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곡관리법」상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함(제20조의4 및 제32조 제4호 신설 등)	대안반영폐기		2014-12-09
599	2014-03-13	19097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4인	양곡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혼합된 양곡의 원산지, 생산연도, 혼합비율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 용기 등의 전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0조의4 신설)	미처리(계류)		
600	2013-11-22	190796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31조 제1항, 징역 기간 상향조정)	미처리(계류)		
601	2013-11-19	190786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24~25조, 벌금상향조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수정가결		2013-12-26
602	2013-10-22	190733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개정(제12조 제3항 제3~4호 신설)	미처리(계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603	2012-06-25	190029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죄의 경우 실형을 받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국외에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폐기	동남아직역 성매매 관광객 1위 한국(형정원 보고서)	2013-05-07
604	2015-12-09	191812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1) 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 설치 금지(제5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2)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제17조의3 신설)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원안가결	공공안전	2015-12-09
605	2015-05-21	19152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승객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이라는 보다 분명한 문구로 개정해 각각의 금지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제5조 제1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09
606	2015-01-15	191369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지하철역 등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의 내부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대안반영폐기		2015-12-09
607	2014-04-09	191012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신설(제3조의3), 포상금 신설(제10조의4), 과태료 개정(제20조 제1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2-09
608	2013-12-31	190893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벌칙 신설(제17조의2, 금지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처벌), 벌칙 개정(제18조 제1항 제3호)	대안반영폐기		2015-12-09
609	2013-06-26	190564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학재의원 등 10인	어린이·청소년보호구역 신설(제4조의4),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단속 및 조치사항 보고 신설(제10조의4), 포상금 신설(제10조의5), 벌칙 신설(제	대안반영폐기		2015-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17조의2)			
610	2015-12-09	19181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안전행정 위원장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40조 제4호 신설)	원안가결		2015-12-09
611	2015-10-28	191743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6개월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제41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09
612	2014-12-29	191332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안전행정 위원장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39조 개정)	원안가결	공공안전(세월호사건)	2015-01-12
613	2014-04-23	191027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유선사업자 등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하며, 또한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4조 제2항, 제39조 신설).	대안반영폐기	공공안전(세월호사건)	2015-01-12
614	2013-11-06	190758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39조, 벌금 상향조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원안가결		2014-09-30
615	2015-12-23	19182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1) 온라인 경매를 포함하여 자동차경매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제2조 제14호, 제60조 제1항, 제79조 제15호의2 신설) 2) 최고속도제한장치 훼손 목적의 프로그램 개발·유포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의 벌칙을 강화(제78조의2, 제79조 제5호의2, 제80조 제4호)	원안가결		2015-12-28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616	2015-12-09	191808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벌금형을 징역 1년 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함 (제78조, 제78조의 2, 제79조, 제80조, 제81조)	원안가결		2015-12-09
617	2015-11-09	19176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1) 인터넷 경매를 고려하여 자동차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제2조 등 개정) 2)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제78조의2 등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28
618	2015-10-26	19173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6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가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제10조 제2항 개정).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불법적으로 탈부착하는 사례(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가 발생하고 있음	미처리(계류)		
619	2015-10-22	19173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가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따라 정부로부터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1조 제1항, 제31조의3 신설, 제52조 개정)	미처리(계류)		
620	2015-09-10	19168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리콜 등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규정 신설 등(제78조 개정 등)	대안반영폐기		2015-12-09
621	2015-08-18	1916478	자동차관리법	민병두의원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 활성화 및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반영폐기		2015-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등 12인	자동차제작자 등이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무상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의2 제3항 신설)			
622	2015-07-07	19160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1)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 마련(제34조 제2항 신설, 제57조 제2항 개정 및 제66조 제2항 신설 및 제3항 개정, 제80조 제5의2호 신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57조의2 신설 및 제79조 제15호 개정) 3)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제85조 제4항 및 제88조 제2항 개정)	원안가결		2015-07-24
623	2015-04-29	19149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43조 제7항 신설, 제43조의2 제3항, 제45조의3 제1항 제8호의2, 제81조 제22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일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부실검사를 시행	
624	2015-03-24	19144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4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만을 표시·광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 생산 자동차의 내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제33조의2 제3항 및 제80조 제3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무분별한 자동차광고	
625	2014-12-12	19130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 규제를 완화하하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시 처벌 규정 신설(제34조 제2항 신설, 제57조 제2항, 제66조 제2항 및 제80조 제5호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07-24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626	2014-12-08	19128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1)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불법 고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제82조 제1호의2 신설) 2) 정기검사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45조의3 제1항 제8호 신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벌칙을 부과함(제79조 제17호에서 제19호 신설)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제78조 제2호)	원안가결		2014-12-09
627	2014-11-21	19126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 등 13인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및 벌칙을 삭제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제18조 및 제84조 개정) 관련 공무원이 언제든지 모바일 단말기 등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입된 자동차등록사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자동차등록증 소지 등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	대안반영폐기		2015-07-24
628	2014-11-12	19124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금지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제53조 제5항 및 안 제79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07-24
629	2014-08-27	19114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전손 처리 자동차에 대한 수리검사 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제43조의3 및 제82조 5호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전손 처리 자동차가 수리되어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일반 국민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음	2015-07-24
630	2014-07-15	19111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1인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제79조 제5호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미비	2015-12-09
631	2014-07-11	19111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제79조 등 개정)	미처리(계류)		
632	2014-06-27	19110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0인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	대안반영폐기		2015-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을 보호 하려는 것임(제81조 제8호의2 신설)			
633	2014-06-19	19109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 등 14인	불법명의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자 함(제77조의4, 제80조 제2의2호, 제81조 제7의2호, 제82조 제2의2호 및 제84조 제3항 제9호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07-24
634	2014-04-16	19102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78조의2, 제79조),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자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도 또는 매매 알선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미처리(계류)		
635	2014-03-14	19097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자동차등록번호판 개정(제10조 제9항 신설), 과태료 개정(제84조 제3항 제1호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4-12-09
636	2014-02-13	190937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제81조, 벌금 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대안반영폐기		2015-12-09
637	2013-11-08	19076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78조 제2호 자동차 번호등록판 위변조행위 처벌)	대안반영폐기		2014-12-09
638	2013-10-10	19072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이재의원 등 10인	자동차 관리 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개정(제58조 제4항 삭제), 사업의 취소·정지 등 개정(제66조 제1항 제13호 다목), 통칙 개정(제85조 제1항)동일·유사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 삭제	대안반영폐기		2014-12-09
639	2013-05-14	190496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등 18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개정(제57조 제2항), 사업의 취소·정지 개정(제66조 제1항 제13호), 벌칙개정(제79조 제13호의2)-처벌강화	미처리(계류)		
640	2013-02-01	19035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10인	과태료 개정(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미처리(계류)		
641	2012-11-21	19027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해양 위원장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원안가결		2012-11-22
642	2012-07-06	19005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 등 10인	1)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사고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2-11-2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2) 양벌규정 신설			
643	2015-05-06	191504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이 형법 위반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제39조의10 개정)	원안가결		2015-05-29
644	2014-05-09	191054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형벌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6-03-03
645	2013-10-31	190741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벌칙개정(제46조 제1~2항)-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원안가결		2014-12-09
646	2013-04-18	190457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1인	금지행위 개정(제27조 제1항 제3호의2) 낙서제거 비용의 부담 신설(제31조의2), 포상금의 지급 신설(31조의3), 벌칙개정(제8조 제3호의2신설)	미처리(계류)		
647	2014-12-29	19133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 위원장	1) 용어순화 차원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변경함 2)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개정)	원안가결		2014-12-29
648	2013-11-18	19078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39~40조, 벌금 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대안반영폐기		2014-12-29
649	2012-07-17	19007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양벌규정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4-12-29
650	2015-12-23	19182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이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한 조항 정비, 벌칙 관련 규정 삭제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제79조제1호 개정)			
651	2015-10-28	19174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벌칙을 강화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재난관련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규정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맞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맞추고자 함(제78조의3·제79조 및 제80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09
652	2013-11-06	19075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79조, 벌금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벌칙 신설(제79조의2, 재난관리정보의 누설 등), 벌칙 개정(제80조 제2호 삭제)	미처리(계류)		
653	2015-11-30	1917956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9조)	원안가결		2015-11-30
654	2015-11-02	1917546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을 안테나로, 케이블반송설비를 케이블전송설비 등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용어의 한글화를 촉진함(제18조의2 제3항제2호 등)	원안가결		2015-11-12
655	2015-07-02	191592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주파수심위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89조제1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1-30
656	2014-12-30	191342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공중선, 반송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용어의 한글화를 촉진하고자 함	대안반영폐기		2015-11-12
657	2014-05-02	191048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사이의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금고형 규정을 삭제하며,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정형 조항의 상한을 입법 당시의 기준에 맞추어 15년 이하로 조정함(제80조 제1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 개정) 2) 징역형에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개정함(제82조 제1항·제2항, 제83조 제1항·제3항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 개정)	원안가결		2014-05-02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658	2013-10-30	190736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30조 제1항 제3항, 제81조 제1항, 제82조 제1~2항, 제83조 제1항 제3항, 제84조, 제85조, 제86조, 징역기간 및 벌금 상향조정)	대안반영폐기		2014-05-02
659	2013-02-28	19039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등 15인	방송수신의 보호 개정(제36조 제2항 신설), 과태료 개정(재92조 제3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660	2015-04-16	191474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차량 운전실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제39조의3 등).	수정가결		2015-12-28
661	2014-12-30	19134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4인	철도운영자에게 열차운행 시 안전에 필요한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차 1인 승무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조 및 제39조의3 개정)	미처리(계류)		
662	2014-11-28	19127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2인	1) 고의·중과실 사고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78조 제2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2) 고의·중과실 및 기본안전수칙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행위자 외에도 철도운영기관 등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제80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07-06
663	2014-05-22	19107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규정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제35조 신설 및 제78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4-12-09
664	2014-05-13	191058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신설(제24조), 과태료 개정(제81조 제1항 제3호의2)	대안반영폐기		2014-12-09
665	2012-11-21	1902720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원안가결		2012-11-22
666	2012-07-17	190072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	열차 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	대안반영폐기		2012-11-22
667	2015-10-26	191739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을 고려하여 현행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개정).	미처리(계류)		
668	2015-10-01	191701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조정식의원 등 10인	초소형카메라의 범죄 및 불법적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판매 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자에 대해	미처리(계류)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사생활 침해와 공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안		서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 물건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제6조 및 제12조 개정).		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669	2015-06-24	191574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안	안전행정위원장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총포의 보관해제시 허가관청은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원안가결		2015-07-06
670	2015-04-17	191478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거나 총포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 현행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총포류의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제72조 제1호 개정)	미처리(계류)		
671	2015-04-08	191464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안	조원진의원 등 12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도 허가관청에 보관하여야 하고, 총포를 반환받을 때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제14조의2 및 제71조 제1호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07-06
672	2015-04-07	191463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의 실탄 및 공포탄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47조 제2항 전단).	대안반영폐기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무려 8명이나 죽는 총기 사고가 발생	2015-07-06
673	2014-12-08	191287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1) 제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제1조 등 개정) 2) 총포의 제조업자에게 식별표지 표식의 의무를 부여(제69조 신설) 3) 국내에서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제6조의2 신설) 4)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사제(私製)폭발물의 제조방법 또는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는 행위 금지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5)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조·판매·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까지 가중 처벌함(제70조 제2항)	원안가결		2014-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6) 법률의 한글화 등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의 개정			
674	2014-05-02	191043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안	송영근의원 등 10인	제조업의 허가 개정(제4조 제4항 신설), 위해예방규정 개정(제38조 제2항), 벌칙 개정(제73조 제1호),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 목적으로 허가 없이 제조한 화약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675	2013-12-06	190837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금지와 그에 대한 처벌 신설(제8조의2, 제73조 제1호의2)	대안반영폐기		2014-12-09
676	2013-05-24	190511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의 개정(제2조 제3항 제3호 가목),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개정(제12조 제2항),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개정(제13조 제2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개정(제32조 제4항),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제46조 제2항),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신설(제46조의2), 청문 개정(제46조의3 제2~3호), 과태료 개정(제74조 제1항 제2호)	대안반영폐기		2015-07-06
677	2013-01-09	190326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식별표지와 중개에 관한 내용 신설(제2조 제7항 및 제8항), 중개업의 허가 등 신설(제8조의2), 식별표지 미제작자 또는 훼손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제7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대안반영폐기		2014-12-09
678	2015-12-08	191805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환의원 등 15인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등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인증, 인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직원에 대한 뇌물죄 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어 인증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제74조의2 개정)	미처리(계류)		
679	2013-11-27	190814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75조, 벌금 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원안가결		2014-02-28
680	2013-10-31	19074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93~96조, 벌금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원안가결		2014-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681	2013-11-26	190807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1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682	2013-03-15	190409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5인	지도·감독 등 개정(제16조 제2항), 벌칙개정(제22조 제1항)	미처리(계류)		
683	2012-06-26	19003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수정가결		2012-11-22
684	2015-05-22	1915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장치', '장치물품', '장치기간', '장치장소', '장치기간경과물품', '지정장치장'을 각각 '보관', '보관물품', '보관기간', '보관 장소', '보관기간경과물품', '지정보관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제19조 제1항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등 개정).	미처리(계류)		
685	2014-01-01	19089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 수입물품 신고를 한 이후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수입물품 가격 등을 허위로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도록 함(제270조의2 및 제276조 제2항 제4호의2 개정)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를 추가함(제327조의2 제4항 제5호 및 제327조의3 제3항 제5호 개정)	원안가결		2014-01-01
686	2013-11-07	19076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개정(제275조의3 제2항 신설)	미처리(계류)	차명계좌이용 경제범죄	
687	2012-12-06	19029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죽은 태아를 포함한 시체를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688	2016-03-02	1918645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정무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제50조 제1항, 제58조 제4항 및 제70조 제1항 개정)	원안가결		2016-03-03
689	2015-06-18	1915640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1)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모든 신용카드가맹점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제19조 제6항, 제24조의2 제3항 개정) 2) 부당한 보상금등의 유형을 구체화함(제19조 제6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해소	2016-03-03
690	2014-12-26	1913246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정무위원장	1)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금품의 제공·수수를 금지함(제18조의3 및 제19조 제7항 개정) 2)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등 대한 벌칙규정 마련(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원안가결		2014-12-29
691	2014-06-27	1911024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덕수의원 등 28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등 대한 벌칙규정 마련(제27조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4-12-29
692	2014-06-16	1910880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 등 10인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등록한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하게 하려는 것임(제2조 제5호의3, 제11조의2, 제19조 제5항, 제53조 제1항, 제70조 제3항 제2호의2 및 제72조 제1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4-12-29
693	2014-04-18	1910248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신용카드업자 등이 신용카드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장애, 성별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 제4항 제6호,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미처리(계류)		
694	2014-02-10	1909344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5인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개정(제18조의3), 벌칙 개정(제70조),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사이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안반영폐기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2014-12-2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	
695	2012-09-10	1901705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이재의원 등 23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처벌된 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대안반영폐기		2015-07-06
696	2012-07-03	1900460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2인	부당하게 카드수수료율을 차별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미처리(계류)		
697	2016-02-02	191851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기획재정 위원장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행위 중 위반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함(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원안가결	대다수의 외환 미신고사범은 외환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어 범법자가 양산	2016-02-04
698	2014-10-16	191204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벌칙 규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그 이하 금액의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32조 제1항 제4호 신설)	대안반영폐기	대다수의 외환 미신고사범은 외환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어 범법자가 양산	2016-02-04
699	2013-07-26	190614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것임(제26조의2 신설)	미처리(계류)	현행 형벌규정으로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을 억제하기에는 미미한 수준	
700	2012-10-16	190221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종학의원 등 12인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701	2014-04-21	1910259	저작권법일부 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저작권법」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개정하려는 것임(제140조 개정)	미처리(계류)	저작권 관련 형사 고소·고발을 폭증시키고, 선의의 범법자들을 양산	
702	2014-04-01	190997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고소 개정(제140조 제1호),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하고자 하는 것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703	2014-03-20	19098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벌칙 개정(136조 제1항 제1호,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함), 고소 개정(제140조 제1호, 대규모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비친고죄를 적용)	미처리(계류)		
704	2015-03-12	191426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용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것임(제6조 제3항 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원안가결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양도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2016-01-08
705	2014-06-11	19108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경우도 금지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제6조)	수정가결	대포통장의 근절	2014-12-29
706	2014-07-15	191116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제49조 제1항 개정)	원안가결		2014-09-30
707	2014-02-19	19094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25인	벌칙 개정(제49조 처벌강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대안반영폐기		2014-09-30
708	2015-01-09	191360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0조 제2항 제3호 삭제 및 제22조 제1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과태료 처분으로 목적달성이 충분	2015-12-31
709	2013-12-02	190824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체형관리업을 정의하여 현행법 상 공중위생영업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체형관리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여 체중 및 몸매 관리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제2조 제8호 및 제4조 제7항 신설)	미처리(계류)		
710	2012-12-06	1902954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공중위생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대안반영폐기	과태료 처분으로 목적달성이 충분	2015-12-31
711	2015-12-31	1918412	식품위생법	보건복지	1)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	원안가결		2015-12-31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제12조의2 개정) 2)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75조 제1항 및 제97조 개정)			
712	2015-08-21	19165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식의원 등12인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1항 및 제97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31
713	2015-07-09	19160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현행 제목 중 "위해식품등"을 "부정·불량 식품등"으로 변경하고 부정·불량 식품등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거나 재조정함(제4조 개정)	미처리(계류)		
714	2015-01-09	191360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제42조 제1항 삭제, 제4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2-31
715	2014-11-20	191258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1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가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들 영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제75조 제1항 제5호, 제76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3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716	2014-11-18	191255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식의원 등 11인	식품접객영업자 중 그 영업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게 함으로써 키즈카페가 건전한 분위기에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식사와 음료 등을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제44조 제3항 신설 및 제98조 제1호 개정)	미처리(계류)	키즈카페가 부모들이 동반한 어린이들을 맡기고 음주를 즐기는 카페로 변질	
717	2014-05-19	191067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부녀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남성 및 여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유지를 통하여 국민보건위생을 증진하려는 것임(제2조 제16호 신설)	미처리(계류)	남성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718	2014-02-27	19095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 원장	1)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제94조 제1항 개정) 2)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맞게 조정함(제98조 개정)	원안가결		2014-02-28
719	2014-02-03	19091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3인	벌칙 개정(제98조, 포상금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	미처리(계류)		
720	2013-11-25	19080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94조 제1항, 벌금 하향조정 등)	대안반영폐기		2014-02-28
721	2013-11-18	19078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98조, 벌금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대안반영폐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2014-02-28
722	2013-06-26	19056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 위원장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신설(제7조의3), 소비자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 개정(제16조 제1~2항),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 개정(제26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개정(제35조 제4항),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제49조 제1~2항 및 제5항 제8항), 허가취소 등 개정(제75조 제1항 제15호의2),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개정(제83조 제1항 제3호), 수수료 개정(제92조 제1항), 벌칙 개정(제93조 제4항 신설)	원안가결		2013-06-27
723	2013-05-28	190515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개정(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8항), 허가취소 등 개정(제75조 제1항 제15호의2), 벌칙개정(제97조 제1호)	대안반영폐기	중국산 분유 멜라민검출, 유럽 말고기 사태 등	2013-06-27
724	2013-05-27	1905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1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개정(제83조 제1항 제3호), 벌칙 개정(제93조 제4항 신설 및 제94조 제1항 제2호의 2, 제2항, 제3항, 제97조 제1호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3-06-27
725	2013-05-10	19049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 개정(제19조의2 제1항), 식품등의 재검사 개정(제23조 제2~3항 개정 및 제4항 삭제), 과태료 개정(제101조 제2항 제1의 2~5)	미처리(계류)	검사분석의 오류(식용주제품의 벤조피렌 검사를 잘못하여 실제 검출량보다 1/10적게 검출된 것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으로 처리하여 부적합제품 7만여 병을 유통)	
726	2013-04-12	19045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정의 개정(제2조 제1호의2~3), 부정식품·불량식품의 판매 등 금지 신설(제4조의2),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개정(제82조의 1항),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개정(제83조 제1항 제2호), 벌칙 개정(제94조 제1호, 제95조 제1호, 제97조 제1~2호)	미처리(계류)		
727	2013-04-08	19044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5인	벌칙개정(제95조 제1호, 제97조 제1호)	대안반영폐기		2013-06-27
728	2013-03-28	190430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14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개정(제4조 제8호 신설),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개정(제83조 제1항 제1호)	미처리(계류)		
729	2013-02-21	190380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특별보호대상식품의 품질인증 등 신설(제7조의3), 특별보호대상식품의 안전성조사 등 신설(제7조의4), 표시기준 개정(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신설), 녹색식품인증 및 표시 등 시설(제10조의2), 품질관리 및 보고 개정(제42조 제3항), 위해식품등의 회수 개정(제45조 제1항), 폐기처분 등 개정(제72조 제1항), 위해식품등의 공표 개정(제73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등 개정(제75조 제1항 제1호), 품목 제조정지 등 개정(재76호 제1항 제1호의2),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정(제77조 제1항), 집단급식소 개정(제88조 제2항 제2호, 제88조 제3항), 수수료 개정(제92조 제1항), 벌칙 개정(제97조 제1호, 제97조 제1호의2 신설)	미처리(계류)		
730	2013-02-19	190378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97조 제1호-벌칙조항추가)	대안반영폐기		2013-06-27
731	2013-02-05	19036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허위표시 등의 금지 개정(재13조 제2항), 과태료 개정(제101조 제1항 개정 및 제101조 제1항 제3호 신설)	미처리(계류)		
732	2013-01-21	190335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1인	위반사실 공표 개정(제84조), 벌칙개정(제9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징역,벌금형 하한 추가)	미처리(계류)	식품의 멜라민 검출, 이물 및 식중독 사고	
733	2012-12-28	19031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3인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대안반영폐기		2013-12-31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734	2012-09-25	19019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2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대안반영폐기	식품의 멜라민 검출, 이물 및 식중독 사고	2013-06-27
735	2015-12-09	19181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의 명확화(제30조 개정) 2) 리베이트 제공·수수 범위의 명확화(제47조제2항, 제3항 개정)	원안가결		2015-12-09
736	2015-10-23	19173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사·한약사의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함(제47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	2015-12-09
737	2015-06-22	19157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0인	사후통보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제4항 개정)	미처리(계류)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에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목적	
738	2015-03-03	19141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를 개선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재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 마련 등(제31조의3 삭제, 제50조의2 신설, 제95조 개정) 2) 판매금지제도의 도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5에 따른 판매금지를 신청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마련 (제50조의5 및 제50조의6 신설, 제95조 개정) 3) 합의 보고 의무 부과 근거 마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마련(제69조의3 신설, 제95조 개정)	원안가결		2015-03-03
739	2015-02-03	191389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제36조 제1항 단서)	미처리(계류)		
740	2015-01-09	19136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대안반영폐기	명확성원칙	2015-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47조 개정)			
741	2014-12-29	19133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경제적 이익 및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제94조의2 개정)	미처리(계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필요성	
742	2014-12-29	191329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 확대(제31조 제3항 개정) 2) 의약품 등 수입업을 신고하도록 함(제42조 제1항 개정) 3) 벌칙규정 개정(제95조 등 개정), 벌칙 대상 추가 및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원안가결		2014-12-29
743	2014-12-15	19130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김용익의원 등 10인	1) 제94조, 제95조의 벌칙 대상 추가 2) 제도 악용이나 남용 행위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처벌(제89조의3 및 제94조 제1항 제8호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03-03
744	2014-09-30	19119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제87조의2 및 제94조 제1항제13호 신설)	미처리(계류)		
745	2014-06-27	19110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조제기록부 개정(제30조 제1항), 벌칙 개정(제94조 제1항 제6호 삭제, 제96조 제8호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2-09
746	2014-02-27	19095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93조 제1항 제11호, 제95조 제1항 제6호의2 삭제), 임상시험성적서 등의 조작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	대안반영폐기		2015-12-09
747	2013-11-18	19078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93조 제1항, 94조 제1항, 제94조의2, 제95조 제1항, 벌금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대안반영폐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2014-12-29
748	2013-02-21	1903806	약사법	안홍준의원	특별보호대상 의약품 등의 품질인증 신설)제55조의2), 의약품 용기 등의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등 11인	기재사항 개정(제56조 제3항), 외부포장 기재사항 개정(제57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65조 제3항), 벌칙 개정(제94조 제1항 제8호의2, 제96조 제4호)			
749	2013-02-15	19037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과태료 개정(제98조 제1항 제3호의2)	미처리(계류)		
750	2012-12-26	19031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4-02-28
751	2012-11-01	19023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미처리(계류)		
752	2015-10-23	19173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10인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리베이트 범위에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09
753	2015-10-14	19172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 등 10인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하여는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 등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제56조 제4항 제2호 신설)	미처리(계류)		
754	2015-09-03	19167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더욱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임(제19조 개정)	미처리(계류)		
755	2015-08-18	19164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5인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 제8항 개정)	미처리(계류)		
756	2015-05-11	19151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제22조 제4항 신설)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757	2015-01-07	19135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2인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 개정)	미처리(계류)		
758	2014-12-29	19133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제23조의2(부당한경제적이익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제88조의2 개정)	미처리(계류)	불법 리베이트 관행 개선필요	
759	2014-12-01	19127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려는 것임(제27조 제5항 신설)	미처리(계류)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심지어 수술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음	
760	2014-11-17	19124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도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제23조의2 제3항·제4항 신설)	미처리(계류)		
761	2014-09-16	19117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그 행위자인 의사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91조 개정)	미처리(계류)	리베이트 차단을 위하여 약사와 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과 달리 '양벌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762	2014-05-09	19105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 제2항 제4호 개정)	미처리(계류)		
763	2014-04-30	19104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외에도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미처리(계류)	성형광고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제56조 제5항 신설)			
764	2014-03-10	19096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장소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56조 제2항 제10호 단서)	미처리(계류)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필요	
765	2014-01-29	19091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로서 그 비교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금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제56조 제2항 제11호 신설)	미처리(계류)		
766	2014-01-03	190899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11인	제77조 제2항 단서 부분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제77조 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767	2013-12-04	19082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개정(제12조 제2항 신설, 의료인에 대한 협박 폭행 등에 대한 처벌)	미처리(계류)		
768	2013-11-18	19078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87조 제2항 삭제), 벌칙 개정(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벌금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미처리(계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769	2013-05-23	19050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개설 허가 취소 등 개정(제64조 제1항 제9호 신설), 벌칙 개정(제87조 제1항 신설)	미처리(계류)	의사의 불필요한 시술강요, 보험급여의 부당청구 등	
770	2013-01-25	19034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1인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연령제한 신설(제27조의3), 벌칙 개정(제88조의3)	미처리(계류)		
771	2012-12-26	19031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하도록 함			
772	2012-12-17	19030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6인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773	2012-11-01	19023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1)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양벌규정에 포함	미처리(계류)		
774	2012-09-28	19020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775	2012-09-14	19018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미처리(계류)		
776	2012-09-11	1901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777	2012-09-03	19014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3인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미처리(계류)		
778	2012-08-14	19011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살인, 사체의 은닉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미처리(계류)		
779	2015-12-30	191836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2)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 제4항 및 제89조 제6호의2 신설 등)	원안가결		2015-12-31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780	2015-11-03	191756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3인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하여 "임의 설정"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정의와 금지행위,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제2조 제22호 및 제23호, 제46조 제4항, 제89조 제6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대안반영폐기	폭스바겐 사태	2015-12-31
781	2014-12-26	191326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1)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89조 개정) 2)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 부과 체계를 정비함(제90조의2 및 제91조 개정)	원안가결		2014-12-29
782	2014-10-24	19121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 등 11인	자동차제작자에게 분기마다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내용 및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여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53조 제2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1-12
783	2014-02-24	190949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도지사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제89조 제5호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4-12-29
784	2013-12-20	19086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제90조의2를 삭제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2의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대안반영폐기		2014-12-29
785	2013-11-27	19081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의원 등 10인	제90조의2를 삭제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철회		2013-12-1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786	2013-11-04	190748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89조 제4호 및 제13호 삭제), 벌칙 개정(제90조 제12호 신설), 벌칙개정(제90조의2 제3호 신설)	철회		2013-11-27
787	2014-02-28	190954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벌칙 개정(제28~29조), 벌금상향조정	원안가결		2014-02-28
788	2013-11-04	190747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28~30조, 벌금 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대안반영폐기		2014-02-28
789	2015-11-11	191768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13인	폐기물 수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삭제함(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삭제, 제65조 및 제66조 개정).	미처리(계류)	폐기물 수출입제도를 일원화	
790	2014-12-26	19132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제66조 제5호 삭제 등)	원안가결		2014-12-29
791	2013-12-26	190877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벌칙규정 중 징역형의 형량에 맞추어 벌금형의 기준을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도록 함(제63조부터 제66조 개정).	원안가결		2013-12-26
792	2013-11-27	1908138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63~66조, 벌금 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대안반영폐기		2013-12-26
793	2012-08-24	1901307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5인	사용 후 폐산·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점포는 그 사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794	2014-05-29	19107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129조 제2항, 벌금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795	2013-01-09	190327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	선박에 과다급유 및 해양에 기름을 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제127조 제2호의2)	미처리(계류)		
796	2015-12-23	1918259	도로법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벌칙 적용 시 운행제한단속원을 공무원으로 의제(제109조 개정)	원안가결		2015-12-28
797	2015-10-16	191723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단속 업무의 특성상 과적단속원들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제109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28
798	2015-07-07	1916000	도로법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국토교통 위원장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장비 설치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제78조 제3항 및 제115조 제5호 개정)	원안가결		2015-07-24
799	2014-10-29	191219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2인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제원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무인 계측 장치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과적단속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제77조 제6항·제7항 신설, 제115조 제1항 제3호의2 및 제2항 신설, 제117조 제4항·제5항 신설)	미처리(계류)	지속적인 과적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의 측정요구 무시, 검문소 회피 등의 위법행위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800	2014-10-02	191197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1) 4.5톤 이상 화물차는 단속장비가 설치된 차로에서 도로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 적재량을 측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제78조 제1항, 제78조 제3항 및 제114조 제9호 신설) 2) 적재량 측정 방해 시 벌칙을 강화하고, 단속장비 설치 차로에서의 운행제한속도 위반 시에도 벌칙을 부과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114조 제9호 신설, 제117조 제1항 제3호) 3) 제77조제3항에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화주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제114조 제8호 신설)	미처리(계류)	과적차량 등 공공안전	
801	2013-11-06	19076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96조~제98조, 벌금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폐기		2014-12-23
802	2013-10-31	190740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벌칙 신설(제96조의2), 벌칙 개정(제97조 제14호 삭제)	폐기		2014-12-23
803	2015-11-02	1917528	근로기준법	이인영의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	미처리(계류)	직장에서의 따돌림 문제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등 14인	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제15조의2 신설)			
804	2015-10-15	1917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	1)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폐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함(제43조 개정) 2)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벌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으로 상향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함(제113조 및 제114조 개정)	미처리(계류)	최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	
805	2015-09-23	19169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13인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제22조의2 신설 및 제114조 개정)	미처리(계류)	기본급과 제 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용인하고, 실근로시간에 대한 측정 제도가 미비하여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를 조장하는 면이 있음	
806	2015-09-16	19168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 등 159인	근로시간 단축 1)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함.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제2조 제1항 제8호, 제53조 제3항, 부칙 개정) 2) 현행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에 하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에 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도록 가산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제56조 개정)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807	2015-09-04	19167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0인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 제114조 및 제116조 개정)	미처리(계류)	불필요한 형사범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 고려	
808	2015-08-04	19163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6인	1)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음(제17조 개정) 2) 부칙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규정을 삭제함(제16조 삭제)	미처리(계류)		
809	2015-05-11	19150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미교부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성할 뿐이며, 해당 위반사례로 실제 처벌되는 건수도 많지 않아 벌금 부과 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줄여 근로감독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제114조 및 제116조 개정)	미처리(계류)	세월호사고	
810	2015-04-24	19148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제60조, 제74조, 제110조, 제114조 및 제116조 개정)	미처리(계류)		
811	2015-04-02	19145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제73조의2 신설, 제110조 및 제114조 개정)	미처리(계류)		
812	2014-11-07	19123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1)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제50조제1항) 2)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명시함(제56조)	미처리(계류)		
813	2014-10-06	19119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1)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제50조제1항 개정) 2)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명시함(제56조 개정)	철회		2014-11-07
814	2014-10-02	19119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제37조 제2항 및 제43조의4 개정) 2)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및 휴일근로 가산 삭제(제2조 제1항 제8호, 제53조 제3항 및 제56조 개정)			
815	2014-09-15	19116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26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5조 제2항, 제3항 신설)	미처리(계류)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816	2014-09-12	19116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5조 제2항, 제3항 신설)	미처리(계류)	일부 사용자는 공휴일과 최근에 시행된 대체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817	2014-09-03	19115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3인	사용자에게 산전·산후의 여성이 임신한 기간과 출산 또는 유산·사산 후 18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끝나는 경우 출산 후 90일 또는 120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제23조, 제74조의2 신설)	미처리(계류)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를 고용의 불안정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필요성	
818	2014-06-25	19109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5인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제69조의2 및 제110조 제1호 개정)	미처리(계류)	연소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로 인하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	
819	2014-05-01	1910432	근로기준법	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	미처리(계류)	세월호사고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등 21인	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제62조의2·제62조의3·제62조의4 신설 및 제109조 제1항·제116조 제1항 제2호 개정)			
820	2014-04-28	19103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강제근로를 하게 한 자를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강제근로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을 엄중히 하고 그 위계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제106조의2 신설)	미처리(계류)	최근 일부 지역의 염전 노동자에 대한 감금, 폭행 등을 통한 강제근로 및 임금착취 사례	
821	2014-04-24	19102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제76조의2 신설)	미처리(계류)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음	
822	2014-04-23	19102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제62조의2 신설, 제109조 제1항 및 제116조 제2호 개정)	미처리(계류)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발생	
823	2014-04-14	19101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12인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하려면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따른 실제 임금수령액과 근로조건의 적용예를 근로자에게 공시한 후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공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및 신고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제94조 개정)	미처리(계류)	근로자는 임금체계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과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채 의견을 내거나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음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824	2014-04-11	19101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제100조의2 신설 및 제107조 개정)	미처리(계류)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음	
825	2014-03-06	19096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	1)「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직업교육훈련생들도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69조 개정) 2)「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직업교육훈련생들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함(제70조제2항 개정)	미처리(계류)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근로시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심각	
826	2014-01-14	19090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9인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의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제53조의2 신설, 제109조 개정 등)	미처리(계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827	2013-12-26	19087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1)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등으로 휴식시간 보장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근로주와 근로일 사이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규정함(제50조 제1항 및 제2항) 2)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 감독 아래에서 진행되는 작업준비 및 정리, 대기, 교육 훈련, 교류 단합 시간을 근로시간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사 분쟁을 줄이고 실질 휴식시간을 보장함(제50조 제3항) 3) 근로자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간을 전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부만 기록하거나 상한을 두지 못하도록 함(제56조 제1항 제2항 신설)	미처리(계류)	사회적으로 만연한 장시간, 야간근로를 근절하고 휴식시간을 확보하여 노동자들의 직업병 발병과 돌연사를 줄일 필요성	
828	2013-11-25	19080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태아검진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제74조의2 및 제114조 개정)	미처리(계류)	최근 임신 중 과로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829	2013-11-13	1907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110조 제1호,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의무 위반)	미처리(계류)		
830	2013-09-30	19070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신설(제10조의2), 벌칙 개정(제109조 제1항), 과태료 개정(제116조 제1항 제1호)	미처리(계류)		
831	2012-12-27	1903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규의원 등 10인	1)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부활시키되, 원직복직 후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함 2)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금형 조항 삭제 3)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조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삭제	미처리(계류)		
832	2012-11-23	1902766	근로기준법일부 개정법률안	김상민의원 등 10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근로조건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근로 감독기관 신고, 4대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함	미처리(계류)		
833	2012-11-07	19024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3인	사용자는 명예근로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당 명예근로감독관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834	2015-12-02	191799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1)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업의 원사업주(또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사업주(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제43조 제3항 신설, 제91조 개정) 2) 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내용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 및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함(제43조 제4항, 제91조 개정)	미처리(계류)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	
835	2013-06-04	19053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1) 노사합의로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등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허용함(제24조 제5항 개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5항에서 타임오프 한도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미처리(계류)	제도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 노조에 비해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이 더 심각하게 제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함(제81조 제1호 및 제4호 개정)		약 받고 있음	
836	2013-02-12	190368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등 45인	1) 직장폐쇄의 요건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해 온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긴박한 경우 및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제46조 제1항 개정) 2)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을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제4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제46조 제5항 신설)	미처리(계류)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	
837	2013-01-28	19034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1인	1)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 파업을 개시한 이후로 한정함(제46조 제1항 개정) 2)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함(제46조 제3항 신설) 3)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제46조 제4항 신설) 4)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제46조 제5항 신설)	미처리(계류)	직장폐쇄의 요건과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	
838	2013-01-25	19034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10인	1)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그 개념을 별도로 정의함(제2조 제6호 및 제7호 개정) 2) 직장폐쇄의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제46조 제1항 개정) 3)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을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제4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4)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제46조 제5항 신설)	미처리(계류)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839	2012-11-19	190265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양벌규정 개정-헌법재판소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 반영	미처리(계류)		
840	2012-07-03	19004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미처리(계류)		
841	2015-12-01	19179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화학물질 등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작업 이외에 '철거·해체'하는 작업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제29조 제5항 개정)	미처리(계류)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대한 입법의 불비를 해소	
842	2015-11-27	19179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등 10인	가설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가능 연한을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가설기자재를 사용금지 의무 등을 신설(제33조의2 신설, 제67조의2 제1호 개정)	미처리(계류)	최근 강원도 정선 아리랑문화센터 붕괴사고,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규격에 미달되는 가설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품질관리 제도개선이 시급	
843	2015-10-15	19172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누구든지 자신이 작업 중이거나 작업하였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규정함(제64조의3 신설, 제68조 제2호 개정)	미처리(계류)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 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844	2015-09-08	19167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감염병 등에 걸린 경우 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강진단이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사업장의 보건관리 대책 강화를 통한 근로자 건	미처리(계류)	메르스사태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신설)			
845	2015-05-14	19151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18인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제24조 제1항 제7호 신설)	미처리(계류)	최근 전국에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846	2014-11-26	19126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대표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등 불균형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어렵게 '작업중지권'을 이용하였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례도 나타남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자격을 갖는 근로자대표에게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과도한 합리적 근거'를 지양하고자 함(제26조 및 제68조 개정)	미처리(계류)	근로자의 권리 강화	
847	2014-11-17	19125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제29조 제8항 제3호 제4호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2-31
848	2014-08-07	19113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부의 책무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감정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포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2조 제8호, 제4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24조 제1항 제7호 신설)	미처리(계류)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849	2014-03-18	19097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등 19인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 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4조 제1항 제7호 신설)	미처리(계류)	최근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민원관련 업무 종사자가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가 심각	
850	2013-12-27	19088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사업주가 도급을 주었을 시,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도록 함(제29조 제1항 제2항의3호)	미처리(계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적인 법 책임을 명시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851	2013-11-27	19080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67조 제2호 삭제), 벌칙 개정(제67조의2 벌금 상향조정), 벌칙 신설(제67조의3)	미처리(계류)		
852	2013-11-04	19074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벌칙 개정(제67조, 징역기간 및 벌금 하향조정)	철회		2013-11-27
853	2013-09-30	19070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등 11인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정(제72조 제1항 제1호 신설, 동조 제3항 제1호 삭제)	미처리(계류)		
854	2013-07-02	19058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3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개정(제38조의4 제3항 제5항), 과태료 개정(제72조 제5항)	미처리(계류)		
855	2013-06-07	19053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개정(제18조 제1항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개정(제29조 제1항 제2항), 벌칙 개정(제66조의2, 제67조, 제68조)	미처리(계류)		
856	2013-05-08	19048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개정(제10조 제2항), 벌칙 개정(제68조 제1호신설), 과태료 개정(제72조 제3항 제1호 삭제)	미처리(계류)		
857	2013-11-04	190747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벌칙개정(제46조 제1항, 제47조, 제48조, 벌금 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원안가결		
858	2015-12-28	191828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방위원장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6조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함(제94조 개정)	원안가결		2015-12-28
859	2015-11-26	19178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방위원장	병력동원(훈련)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에 학업·직장 보장 규정과 위반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제93조의2)	수정가결	병력동원(훈련)소집자의 권익을 보호	2015-03-02
860	2015-09-08	1916778	병역법	손인춘의원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대안반영폐기		2015-12-28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일부개정법률안	등 14인	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일환으로서, 국내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동일하게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병역기피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3년 이하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4조 개정)			
861	2014-07-16	191119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1) 고용금지 및 복직 보장 위반 관련 벌칙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제93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2)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과 관련한 학업 또는 직장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4조의3, 제74조의4, 제93조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2015-11-30
862	2014-05-21	191069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취소 요건인 직장 등의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벌칙 해당 사항도 동일하게 조정함(제89조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미처리(계류)		
863	2014-04-15	191018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방위원장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기피 등에 대해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함(제88조 제1항·제3항, 제90조 제1항·제2항 및 제92조 제4항 개정)	원안가결		2014-04-16
864	2014-01-03	190898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 등 11인	자연계대학원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반 지정업체의 장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법적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84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제92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자연계대학원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고용주가 아니어서 복무관리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문제	2014-05-02
865	2013-12-04	19083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징병검사의 기피 등 개정(제87조 제3항), 입영의 기피 등 개정(제88조 제1항), 징역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대안반영폐기		2014-04-16
866	2013-11-27	19081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입영의 기피 등 개정(제88조 제1항, 제3항, 벌금상향조정), 병력동원훈련 소집의 기피 개정(제90조 제1항, 벌금상향조정), 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 위반 등 개정(제92조 제4항, 벌금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14-04-16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867	2012-11-27	19028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868	2012-10-05	19021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병역사항중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5-11-30
869	2012-09-03	190149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1인	동원훈련에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4-04-16
870	2015-11-26	191789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방위원장	1) 고등학교 이상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제10조의2 신설, 제15조 개정) 2)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과 관련하여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 위반 시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5조 제8항 개정)	원안가결		2015-11-30
871	2015-11-12	1917710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주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는 한편 주민들이 스스로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향토예비군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는 것임(제6조 제1항 후단 개정)	폐기	최근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의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	2016-03-03
872	2014-07-16	1911190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1) 고등학교 이상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10조의2 신설) 2) 복직 보장 위반 관련 벌칙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고, 학교의 장이 예비군훈련과 관련한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안반영폐기	직장 보장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하여 예비군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예비군훈련 참가를 독려하	2015-11-30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5조제8항, 제15조제9항 신설)		고자 함	
873	2014-02-20	190946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소집 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6조 제3항 단서 신설)	수정가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	2014-12-09
874	2013-12-04	1908319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벌칙 개정(제15조 제2~9항, 벌금상향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수정가결		2014-09-30
875	2015-12-30	19183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7조의8 신설)	수정가결		2015-12-31
876	2015-12-09	1918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10조 제2항 및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 신설) 2)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중 인격을 삭제함(제250조 제1항 개정) 3)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의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	원안가결	건전한정치문화가정착 목적	2015-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2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877	2015-11-30	19179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주최·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함(제86조 제8항 신설, 제255조 개정)	미처리(계류)		
878	2015-11-27	19179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제239조의3 신설)	미처리(계류)	공무원은 그 권한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청렴도와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	
879	2015-09-04	19167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지역의 무가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는 선거일 전 180일(선거일 전 18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균 발행횟수·발행부수(선거일 전 1년 6개월부터 선거일 전 180일까지의 평균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하 위반시 방송, 신문등 부정이용죄로 처벌하도록 함(제95조 제3항 신설, 제252조 개정)	미처리(계류)		
880	2015-08-17	19164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각종 행위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하고자 함(제241조, 제255조, 제266조 등 개정)	미처리(계류)		
881	2015-08-12	1916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위헌적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의 사과문 게재 부분을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로 개정하려는 것임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제8조의3 제3항 및 제256조 제2항 제2호)			
882	2015-07-23	1916189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9조 제10항 및 제256조 제3항)	원안가결		2015-07-24
883	2015-07-17	1916111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심번호를 활용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동전화사업자가 안심번호를 제공할 때 안심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제57조의8 신설 및 제256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31
884	2015-07-16	1916087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 등 22인	1)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9조의2 및 제255조 제2항 제7호 신설)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이익이나 직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230조 제7항 제3호의2 신설) 3) 제9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관계자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9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함(제252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4) 제10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하여 피조사자의 응답을 강요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 제108조 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준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함(제256조 제1항 신설) 5) 제10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사기관·단체명,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행위, 제108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야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함(제256조 제2항 제2호 개정)			
885	2015-06-18	19156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함(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09
886	2015-06-17	19156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상습적으로 특정지역,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0조 제2항, 제256조 개정)	대안반영폐기	건전한 정치활동을 촉진	2015-12-09
887	2015-06-05	19154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4인	다사전투표와 재외투표(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47조 제1항 개정)	대안반영폐기	사전투표와 재외투표에 대해서도 허위 서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	2015-12-09
888	2015-05-27	19152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재외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추가함(제242조 개정)	미처리(계류)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	
889	2015-04-17	19147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4인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8 신설 및 제255조 개정)	미처리(계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원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고자 함	
890	2015-04-15	19147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2인	1) 예비선거에서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신설(제244조 개정)	미처리(계류)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 도입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2) 예비선거의 선거운동은 예비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일까지 제57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하되 이를 위반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함(제48조의2 제6항 신설 및 제255조 개정)			
891	2015-04-02	19145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에 대하여만 투표하여야 하는 의무를 두며 이를 위반시 벌칙 규정을 마련함(제57조의8 신설 및 제256조 개정)	미처리(계류)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	
892	2015-03-10	19142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함(제108조의2 등 신설 및 개정)	대안반영폐기		2015-12-31
893	2014-12-11	19130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53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2 및 제256조 제3항 타목 신설)	미처리(계류)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	
894	2014-09-23	1911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 후단 및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후단 중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부분은, 범죄행위 자체가 아니라 막연히 범죄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을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과잉처벌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미처리(계류)		
895	2014-09-23	19118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이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함(제65조제12항 및 제250조의2 신설)	미처리(계류)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896	2014-09-22	19117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	대안반영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 후보자가 여론 조	2015-12-31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08조 제5항 제5호 신설)		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	
897	2014-06-16	19108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0인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제250조 제3항,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미처리(계류)		
898	2014-01-10	19090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1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개정(제230조 벌금상향조정),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개정(제231조 벌금상향조정),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개정(제232조 벌금상향조정)	미처리(계류)		
899	2014-01-07	19090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개정(제10조의3),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개정(제85조),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개정(제86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 개정(제244조), 부정선거운동죄 개정(제255조), 양벌규정 개정(제260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신설(제262조의2),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개정(제272조의3)	미처리(계류)		
900	2013-09-12	19068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제250조 제1~2항), 후보자 비방죄 개정(제251조)	미처리(계류)		
901	2013-07-19	19060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개정(제85조 제2항),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개정(제89조 제1~2항), 부정선거운동죄 개정(제255조 제1항 제13호)	미처리(계류)		
902	2013-05-28	1905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개정(제265조의2 제4항 신설)	미처리(계류)		
903	2013-03-19	1904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9인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개정(제245조 제1항),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개정(제256조 제2항 제4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개정(제261조 제3항 제1호)	미처리(계류)		
904	2013-03-14	19040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개정(제256조 제2항),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선거범죄 신고 금지 신설(제262조의4)	미처리(계류)		
905	2013-03-04	19039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선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신설(제280조)	미처리(계류)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906	2013-01-31	19035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등 11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개정(제261조 제1항)	대안반영폐기		2013-07-02
907	2012-12-10	19030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허위사실 홍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폐기		2016-01-09
908	2012-12-07	19030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의 열람이나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3시간 이상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909	2012-11-09	19025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38인	포상금 지급 후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	대안반영폐기		2013-07-02
910	2012-11-08	1902493	공직선거법일부 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5인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911	2012-10-26	1902307	공직선거법일부 개정법률안	고희선의원 등 10인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를 법률로 정하여 제재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미처리(계류)		
912	2012-10-26	19022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5인	예비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장·제11장의 규정(해당 규정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경우 그 벌칙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913	2012-10-15	1902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1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미처리(계류)		
914	2012-09-03	19014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효의원 등 15인	공직후보자 등록 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확대함	미처리(계류)		
915	2012-08-24	1901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당선자의 재직 및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 보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916	2012-08-21	19012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둘 이상 정당의 국민참여당내경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917	2012-07-27	19009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사항을 삭제하여 당선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등에 관하	대안반영폐기		2015-12-09

	발의일자	의안번호	제/개정법률안	발의	주 요 내 용	처리	계기가 된 사건/사고	의결일자
					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			
918	2012-07-26	19008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함	대안반영폐기		2014-04-29
919	2012-07-17	19007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3인	1) 허위경력 등 공표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2) 허위경력 등 공표 행위와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미처리(계류)	BBK 정봉주 사건	
920	2012-07-05	19005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등 20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시점을 해당 선거가 종료되기 전으로 규정하여 선거가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도록 함	미처리(계류)		
921	2012-06-22	19002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1인	1)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 2)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3)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등 비방죄를 삭제함	미처리(계류)		
922	2012-06-18	1900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5인	전과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때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함	미처리(계류)		
923	2013-11-25	19080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창당방해 등의 죄 개정(제61조 제3항 신설)	미처리(계류)		
924	2012-09-14	19018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7인	지역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미처리(계류)		

연구총서 16-AB-02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발 행 | 2016년 7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김 진 환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 페 이 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
I S B N | 979-11-87160-04-5 9336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